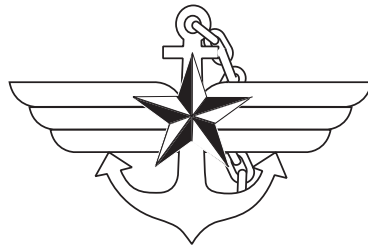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1집

(2013. 11. ~ 2015. 10.)



국 방 부



## 서 문

법치주의는 헌법상의 이념으로서 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업무담당자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해석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국방부 각 부서 및 각 군으로부터 제기된 법령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통일적이며, 합리적인 법령해석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64년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집을 발간한 이래 2014년까지 총 30집의 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그 노력의 결실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국방업무담당자들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긴요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31집은 2013. 11.부터 2015. 10. 사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회신한 국방관계 법령해석 중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법리적 논점이 대립되었던 중요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질의응답집이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하며, 국방행정업무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 2.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천 영





## 목 차

<b>제1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b> .....	<b>1</b>
1. 군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2.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자 임명 .....	5
<b>제2장 인 사</b> .....	<b>9</b>
3.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반납처리 .....	11
4.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 .....	13
5. 예비군지휘관 전보관련 근속년수 .....	17
6. 군종장교 임용제한 연령 .....	19
7.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은 자에 대한 임용가능 여부(벌금형 전과 사유) .....	21
8. 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과 복직 가능성 .....	23
9. 군장학생과 군사교육 .....	25
10. ‘군 내 임신여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	27
11. 육군 협약대학 졸업자의 해·공군 장교 임관 가능성 .....	29
12. 군무원 전직시험 면제 여부 .....	32
13. 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	34
14. 통합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본부직원의 소속 .....	36
1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인의 범위 .....	38
1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	40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범위 .....	42
18.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가능성 .....	44
19. 군인 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해석 관련 .....	47
2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지침 하달의 적법성 .....	49



# CONTENTS

21.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52
22. 재심청구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제적명령 및 진급	54
23.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 관련 감사의 주체	57
24. 국직부대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부대	59
25. 기소휴직된 단기복무장교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시 전역일자 등	62
26. 1심판결 선고 후 중징계를 받은 자의 지원전역 허가 가부	65
27. 해병대 사령부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 관련 지침의 적법성	68
28. 승진공석 추가 승인 가능여부	71
29. 복무연장기간 중 불임휴직을 한 경우 전역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72
30.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자 등이 군인인지 여부	74
31. 사법연수생이 방침보류대상인지 여부	77
32.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방부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80
33.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83
34.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상 전보 및 인사교류 규정 해석	86
35. 군무원의 정직기간 중 교육과견과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89
36.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91
37. 예비역 간부의 진급심사 시 전역예정자 선발 가부	95
38. 육군 예비역 장교 전역명령 정정	97
39. 기존 훈령과 배치되는 군무원 동일부대 지침 발령의 가능성	99
40. 신원조사 결과 회보 시 범죄경력조회 일체의 회신 가능성	101
41. 임시계급의 현역복무기간(정년)	103
42.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앱)을 통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발송	108
43. 일반계약군무원 직위지정범위 확대 가능성	110
44. 군종장교의 소속 중단 변경과 장교 신분의 보유	112
45. 고위공무원도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116



# CONTENTS

46. 일반계약군무원(1급) 직위 지정 가능성 .....	120
47.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 가능성 .....	122
48. 입대취소 또는 무효인 자의 신분 .....	124
49.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 .....	126
50.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육아휴직과 의무복무기간 .....	128
51. 부서관 군장학생의 장학금 반납 .....	131
52. 신원조회 및 보안적부 심의 결과에 따른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의 적법성 .....	134
53. 해군 법무병과장의 임기만료 후 해군 내부 전직 가능성 .....	136
54.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종료(근속기간, 정년) 관련 .....	142
55.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 직무대리 가능성 .....	145
56. 비예산 국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	147
57. 별정군무원의 상위 상당계급 재임용 가능성 .....	149
58. 가사휴직을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151
59. 육아휴직한 간호장교에 대한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활용가능성 .....	154
<b>제3장 병역 .....</b>	<b>157</b>
60. 예비역 간부 진급에 있어 퇴역 연령 기준일 .....	159
61. 퇴역여군의 역종변경 가능성 .....	161
<b>제4장 복지(보수·연금·보훈·국립묘지안장) .....</b>	<b>163</b>
62.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	165
63. 예비군훈련 중 부상 후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받은 경우 휴업보상금 지급 가부 .....	167
64. 국가패소에 따른 재처분시 소멸시효 주장 가부 .....	169
65. 재심의로 공상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	171
66.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	174



# CONTENTS

- 67. 한국전쟁 중 미군 측에 귀순하였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자의  
    참전유공자예우법령 적용 여부..... 176
- 68. 복지기금을 통한 해군마트의 포인트 제도 운영의 타당성 ..... 178
- 69.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182
- 70.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 184
- 71. 전문자격(면허)을 보유한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 가능여부 ..... 187
- 72. 예비군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의 각 지급기관 ..... 189
- 73. 군인 연금 급여종류 변경 신청 ..... 192
- 7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판단기준 ..... 194
- 75.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 197
- 7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유급의 현장연수” 관련 ..... 200
- 77.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 포함 여부 ..... 204
- 78.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과의 약정 관련 ..... 207

## 제 5 장 군수 및 방위산업 ..... 213

- 79. 군용표지가 없는 반합판매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 215
- 80.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기간 산정 관련 ..... 217
- 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해석 관련 ..... 219
- 82.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군용물 재산범죄 처리 ..... 221

## 제 6 장 시 설(군용지 취득·국유재산·군사시설보호) ..... 225

- 83. 국방대학교 운동장 이용..... 227
- 84.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한 자산의 “국방·군사시설” 해당여부 ..... 230
- 85. 「건축법」 상 국방·군사시설인 군관사 내  
    과외교습 등 상행위 가부 ..... 233



# CONTENTS

<b>제 7 장 재정 및 예산회계</b> .....	<b>237</b>
86. 기부금품 사용 대상자.....	239
<b>제 8 장 기 타</b> .....	<b>241</b>
87. 비영리법인인 국방인재개발원의 수익사업.....	243
88. 정문 위병소 배치 헌병이 군형법 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5
89. 특정수혈부작용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	247



# 제 1 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



# 1. 군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보건복지부는 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해석하여 편입을 요청하고 있는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군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군 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4호는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① ‘군 보건의료기관’은 별도의 법률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는 점, ②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달리 그 대상을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 한정하여 특정하고 있는 점, ③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제1호),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제2호) 등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과는 달리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 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군 보건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군인 등 외에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도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군 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끝.

질의 : 보건정책과-747 (2015. 2. 3.)

회신 : 법무담당관-2005 (2015. 3. 4.)

## 2.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자 임명

### 【질의요지】

가. 국방정보본부장 부재 시 합참 소속 선임자를 직무대리로 임명 가능한지

나. ‘가’항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 소속 선임자와 합참 소속의 선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본부장 직무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가 여부

### 【답 변】

가. 「국방정보본부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만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으며, 합참 소속 선임자는 직무대리를 할 수 없음.

나.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국방부 소속 선임자와 합참 소속 선임자로 구분하여 직무대리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이 유】

국방정보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며,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국방정보본부령」 제1조, 제2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1)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1항)

(「국방정보본부령」 제3조 제3항).

한편, 「합동참모본부 직제」 규정에는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합참 정보본부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에는 「국방정보본부령」 제3조 명문의 규정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의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합참정보본부 참모부서장 중 선임자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할 것임.

한편, 현재 국방정보본부장은 휘하에 국방정보본부 및 합참정보본부 소속 4부 5실<sup>2)</sup>을 지휘·감독하며, 합참정보본부장 직책은 편제에 없는 직책이나, 국방정보본부령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의거 실질적으로 합참정보본부장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본부장의 직무대리자는 국방정보본부장 직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지(「직무대리규정」 제7조). 따라서,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에는 국방정보본부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사항을 분장하는 합참정보본부장의 직무도 대행한다고 볼 수 있음(합동참모본부 직제 제8조 제2항).

국방부장관이 해외 방문하는 경우 국방부차관의 직무대리 범위에 관한 2007. 9. 14. 법제팀의 해석에서도, 직무대리 하는 국방부차관이 국방부장관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2) 4부 : 국방부 소속(정보기획부, 해외정보부) / 합참 소속(북한정보부, 전략정보부)

5실 : 국방부 소속(계획운영실, 행정지원실, 감찰실, 정보표준화정책실) / 합참 소속(정보융합실)

및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법제팀-5148, 2007. 9. 14.).

직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무대리 규정」, 권한을 분리하여 직무대리를 각각 임명할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상 그 권한을 분리하여 직무대리를 각각 임명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됨. 끝.

질의 : 국방정보본부-1355 (2015. 5. 15.)

회신 : 법무담당관-5091 (2015. 6. 15.)



## 제 2 장 인 사



### 3.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반납처리

#### 【질의요지】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중 학사사관후보생 3차(입영) 전형 정밀신체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5등급(불합격) 판정을 받아 학사장교 최종선발에 불합격된 자에 대하여 장려금 반납조치를 함이 타당한지 여부

#### 【답 변】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신체등위 5등급(불합격) 판정을 받아 학사장교 최종선발에 불합격되더라도 장려금을 반납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조는 각 군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는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 사안에서는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학사사관후보생 3차(입영) 전형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등급 판정으로 불합격되어 학사장교 최종선발에서 불합격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반납하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됨.

살피건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 장려금 반납사유는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퇴학 또는 제적이 되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장교선발에 불합격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군 장학금 지급제도’와 달리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지급제도’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의 지원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장려금의 지급과 장교복무 사이에 반드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해당인원에 대하여 신체등위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학사장교 최종선발 취소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반납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인력관리과-2817 (2013. 8. 26.)

회신 : 법무담당관-8174 (2013. 10. 15.)

## 4.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

### 【질의요지】

가.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2(연가) 5항과 관련하여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의 방학을 휴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의거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의 국외여행 횟수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가.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의 방학은 해당 과정의 학사일정에 따른 휴업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휴가기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이 유】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2는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가지고 있고,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및 “전직지원기간”은 연가허가일수산식(실제복무개월 수(월)/12 X 해당 연도 연가일수)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안과 같은 국방대 학위과정의 경우 24개월간 진행되므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에 해당하고 위 규정의 산식에 따르면 국방대 학위과정에 있는 군인의 연가허가일수는 0일이 되게 됨. 그런데 동 규정 제41조 제2항이 군인의 공무외 목적의

국외여행은 휴가 중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2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기간 중인 군인은 계산상 모두 연가허가일수가 0일이 되어 결과적으로 규정상 이들이 사적국외여행을 실시할 근거가 없게 됨.

또한, 교육기관의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기간을 개인별 연가로 볼 수 있는 관련법령상 근거가 없고,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되는 점에서 유사한 교원의 경우에 비추어 방학기간은 해당 교육기관의 휴업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sup>3)</sup> 방학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휴가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사적국외여행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공무원의 연가일수에 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는 결근, 정직, 직위해제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도록 하며, 교육기간을 연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고, 그 외에 휴직의 경우만 연가일수에서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 X 해당연도 연가일수”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 규정 제23조에서 공무원의 공무외 목적의 국외여행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12개월 이상 교육과전 중인 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휴가를 얻어 사적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2 제4항의 산식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를 계산할 때에 규정된 산식과 같고, 연가보상일수 산식상의 제외기간의 예로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2 제4항과 같은 내용인 “교육과전(1개월 이상)기간”, “공로퇴직연수기간”, “30일 이상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들고 있으며,<sup>4)</sup> 따라서 군인 이외의 타

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5. 공무원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제5호 “연가보상비”

공무원이 12개월 이상 교육과견을 간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0일이지만 연가 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위의 「군인복무규율」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의 연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2가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 내용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을 위한 연가보상일수의 계산과 동일하고, 12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기간 중인 군인은 연가일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교육훈련기간 중의 방학기간은 휴가가 아니므로 규정상 사적해외여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해외여행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교육훈련 중인 자라도 연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처럼 연가일수와 연가보상일수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군인복무규율」 제41조는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시 허가권자의 승인을 규정하면서 휴가 중에 실시하도록 한 것 외에 달리 이에 대한 제한을 유보하는 규정이 없는 점, 대법원은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 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sup>5)</sup> 해당 학교의 학사일정을 따른다는 점에서 교육훈련기간 중인 군인과 유사한 교원의 경우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일(여름 및 겨울, 학년말) 중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sup>6)</sup> 다른 종류의 공무원 및 다른 국방부 소속 기관 및 부대에서 사적국외여행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과

5)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6)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5. 공무원의 국외여행, 나. 실시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원의 국외여행 등, (나) 기간,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횃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공무원휴가업무예규」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sup>7)</sup>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설사 사적국외여행의 허가권자라 하더라도 예규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그 기간 및 횃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사적국외여행의 허가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그 적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질의 : 병영정책과-331 (2014. 1. 14.)

회신 : 법무담당관-754 (2014. 1. 24.)

---

7) 「공무원휴가업무예규」 5. 공무외의 국외여행, 다. 유의사항, (1)

## 5. 예비군지휘관 전보관련 근속년수

### 【질의요지】

지역예비군중대장 정기전보는 동일부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대 통·폐합에 따라 부대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이 확대될 경우 근속년수 산정 시점을 부대 통·폐합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부대 통·폐합에 따라 부대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동일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부대 통·폐합 이전 부대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 제1호 가목은 “동일 예비군부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전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육규 520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제5항 제3호는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동일지역에 5년 이상 근무 시 타지역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기전보의 대상은 ‘동일’ 또는 ‘동일지역’에 있는 예비군부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한편, 동 훈령 제28조 제2호 가목에서는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의 창설 및 분리·통합 등으로 부대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시전보는

부대조정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사안과 같이 부대 통·폐합에 따라 부대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 당해 부대에 재보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안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이 부대 통·폐합에 따라 부대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 재보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통·폐합 전 부대로 전보된 날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예비전력과-22 (2014. 1. 3.)

회신 : 법무담당관-1244 (2014. 2. 12.)

## 6. 군종장교 임용제한 연령

### 【질의요지】

「병역법」 제58조 제1항 및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의해 선발하는 군종장교요원의 임용제한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35세인지 여부 및 군종장교요원 선발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종장교요원은 「병역법」 제58조 제3항의 군종병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제한 연령인 35세까지 임용될 수 있고, 제대군인이 군종장교요원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적용되어 35세를 초과해서 임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각 초임계급별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은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은 동조 제1항의 최고연령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병적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58조 제3항은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병역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8조의 3 제1호, 제2호에 따라 군종장교요원으로도 선발하고 있고, 군종장교요원 또한 「군인사법」 제15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에게 해당함.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는 제대군인 채용 시 복무기간에 따라 3년 이내에 응시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군인으로 임용되는 경우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의 임용최고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되고 있음.

따라서 군종장교요원은 「병역법」 제58조 제3항의 특수병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연령인 35세까지 임용될 수 있고, 임용될 군종장교요원이 제대군인인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이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군인사법」 제15조 제3항은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를 병적 편입 제한연령까지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부서는 전체장교 및 군종병과의 장교인력상황, 임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진급 및 정년문제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군인사법」, 「병역법」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연령상한의 범위 내에서 군종장교(요원)의 임용최고연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끝.

질의 : 군종정책과-62 (2014. 1. 9.)

회신 : 법무담당관-1750 (2014. 2. 27.)

## 7.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은 자에 대한 임용가능 여부(벌금형 전과 사유)

### 【질의요지】

군중장교 합격 여부 결정 시,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 적부심의회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으로 인하여 ‘부적격’ 결과를 받은 자를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및 「군사보안업무규정」 제73조 제3항에 의해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위원회에서 이로 인하여 “부”로 통지 받은 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하여 장교임용의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여 장교임용의 임용결격사유, 즉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sup>8)</sup>

---

8) 임천영, 군인사법, 276면

위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 제10조 제1항은 장교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을, 제2항은 그 소극적 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제2항 각 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써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제1항 소정의 적극적 요건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라고 판시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sup>10)</sup>,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받은 자도 역시 장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sup>11)</sup> 하였음.

한편,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조사라 함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고 군사보안상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인·군무원 및 군 관련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군사보안 업무훈령」 제73조 제3항 및 별표6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 제10조는 보안 적부심의위원회에서 보안적부 기준에 따라 “부”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임관·임용 또는 중요 보직의 제한과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2)</sup> 끝.

질의 : 군중정책과-561 (2014. 3. 6.)

회신 : 법무담당관-2179 (2014. 3. 13.)

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14 판결

1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44 판결

11) 대법원 1998. 1. 23. 96누12641 판결

12) 국방부 법무담당관-9449(2011. 12. 6.) 군무원 임용 선발과정에서 신원조사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8. 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과 복직 가능성

### 【질의요지】

민원인('49. 2. 23.生)이 현역복무 당시(계급 대위) 대통령 긴급조치 9호('75. 5. 13.) 위반으로 실행(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받아 제적('79. 10. 11.)된 후 긴급조치 해제로 출소('79. 12. 8.)하여 원계급 회복 및 예비역에 편입('89. 4. 17.)되었고, 그 후 최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13. 7. 12.) 받았는바, 이 인원에 대한 현역 또는 군무원으로서의 복직가능성 및 기타 법적 구제방안(급여 보상 등)과 공군본부에서 제적명령을 확인 발령한 것이 군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답 변】

민원인의 현역 복직 또는 별정직 군무원으로의 임용은 제한되고, 공군본부에서의 제적명령을 확인 발령한 것은 군인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군복무 중단기간 동안의 미수령 급여 등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민원인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었는바, 유죄의 형사판결로 제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군인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연히 복직되게 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런데 민원인은 1949. 2. 23.생으로 제적명령을 발한 시점부터 현역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는 처분 당시 계급인 대위의 연령정년 43세를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차상위 계급에 대한 연령정년도 초과하였으므로, 현역으로의 복직은 사실상 제한된다 할 것임.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하면 별정직 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60세인 바, 이에 의하더라도 별정직 군무원으로의 임용 또한 제한될 것임. 그러므로 현재 복직을 위한 별도의 제적처분 취소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당시 국방부 인사명령(갑) 제506호('79. 10. 31.)에 의거하여 공군본부에서 제적명령['79. 11. 2./인사명령(갑) 제254호]을 발령하였는데, 국방부장관이 발령한 제적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공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제적명령은 국방부장관이 발령한 인사명령을 근거로 이를 확인한 것인바, 군인사법상의 위반사항은 없음.

결국 유죄판결로 인하여 제적되었다가 추후 재심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적처분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4106 (2014. 3. 27.)

회신 : 법무담당관-3012 (2014. 4. 9.)

## 9. 군장학생과 군사교육

### 【질의요지】

군장학생에 대해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장학생에 대해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군장학생은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서,<sup>13)</sup> 「군인사법」 제62조 제3항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군장학생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 규정에 따른 군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장학생 규정」 제9조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을 받는 동안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대우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군장학생에 대하여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경우와 같은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됨.

13) 「군인사법」 제62조 제1항, 임천영, 군인사법, 1221면

그러나 ①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군장학생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는 국가와의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 점,<sup>14)</sup> ② 군장학생은 「군장학생 규정」 제9조 이외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경우와 같이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상위법상 근거규정<sup>15)</sup>이 없는 점, ③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 달리 「군장학생 규정」 제9조는 특별교육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군인사법」 제62조 제3항은 군장학생의 신분 및 교육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위임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군장학생 규정」 제9조의 ‘특별교육’은 일반군사교육이 아닌 군 생활을 사전에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개 정도의 교육이고, 만일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을 포함시켜 실시 중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및 보훈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으며, 특별교육 받는 중 사관후보생 등으로 대우 받는다는 내용은 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닌 사관후보생 등에 준하여 예우하여 준다는 의미로 사료됨.

따라서 군장학생에 대하여 「군장학생 규정」 제9조를 근거로 일반군사훈련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인력관리과-688 (2014. 3. 4.)

회신 : 법무담당관-3081 (2014. 4. 10.)

14) 대법원 2007. 9. 6. 판결 2005다39808

15) 「병역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116조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등

## 10. ‘군 내 임신여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 【질의요지】

군 내 임신여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사정보체계 시스템상 개인정보 열람 및 추가정보 획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 변】

시스템 개발로 열람 및 추가 획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고, 동의가 적법한 절차(내용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지 않고, 의료법 적용사항도 아님.

### 【이 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개인정보[군구분, 신분,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군/자택/휴대전화), 메일, 출산예정일, 근무지내 분만가능 산부인과)를 열람하고 추가 개인정보(근무지역, 분만예정병원, 태아검진병원, 자녀수, 보건휴가실적, 고위험 임신여부)에 관하여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군 내 임신여성의 진료여건 보장, 지원제도 안내, 고위험 임산부 중점관리의 목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 적법하다 할 것임.

다만,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가 정보로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군 내 임신여성의 진료여건 보장, 지원 제도 안내, 고위험 임신부 중점관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책부서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상의 절차(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를 준수해야 할 것임.

한편, 시스템 구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분만예정병원, 태아검진병원, 고위험 임신여부로서, 개인진료기록 자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군 내 임신여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부서가 활용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수범자로서 적용되는 의료법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끝.

질의 : 국방여성정책과-834 (2014. 3. 11.)

회신 : 법무담당관-3099 (2014. 4. 11.)

## 11. 육군 협약대학 졸업자의 해·공군 장교 임관 가능성

### 【질의요지】

사이버국방학과 「학·군제휴」 협약서에 따른 육군 협약 대학생 중 육군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선발된 인원을 해·공군 장교로 임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사이버국방학과 「학·군제휴」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학·군 협약 대상 대학생은 육군 외 해·공군 학사장교로 임관시킬 수 없다고 판단됨.

### 【이 유】

육군과 고려대학교 간에 체결된 사이버 국방학과 「학·군제휴」 협약서 및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학·군 협약 추진방안 보고서》, 《“사이버 국방학과” 개설 관련 학·군 협약 참고보고》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사이버 공격 및 방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의 양성과 안정적인 확보가 요청됨에 따라 사이버 전문 인력의 주 활용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게는 “협약 대학 선정 업무”를,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학·군 협약 및 장학생 선발·관리 업무”를 각각 위임하여, 결국 육군 참모총장과 고려대학교 총장 사이에 「학·군 협약서」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위 협약서 및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 및 기무사령부를 비롯한 육·해·공군 각 군별로 사이버 전문인력(장교) 소요를 책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군별 임관목표 및 획득비율을 정한 점, 이에 따라 육·해·공군을 포함한 총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12년도 소요예산을 '육군' 장학예산에 추가 반영한 점, 협약대학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및 최종심의간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참석한 점, 해·공군은 다른 대학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최초 사이버 국방학과 개설을 위한 협약 및 신입생(군장학생) 모집에 관하여 편의상 '육군'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고,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육군 외에도 해·공군 학사장교로의 임관도 예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군인사법 제62조 제1항과 「군장학생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각 군의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학교와의 협약체결 및 군장학생 선발 계획부터 선발, 장학금 지급을 각 군 참모총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발된 군장학생의 경우 각 군의 군장학생으로서 타군으로의 임관은 제한된다 할 것인데, 사이버국방학과 「학·군제휴」 협약서에 의하면 대학과의 실제 협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군장학생 선발과 마찬가지로 육군참모총장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육군이 군장학생에 대한 선발계획 수립 및 선발, 그리고 장학금 지급 등을 모두 하였다는 점,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도 “육군”과 대학과의 사이에서 사이버국방학과 학생을 “육군” 장학생으로 임명하여 졸업 이후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시키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이버국방학과 군장학생 선발을 위한 예산도 육군예산으로 편성하여 육군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협약서 제10조에 의한 수정협약 체결 등)가 없는 한, 사이버국방학과 군장학생의 경우 육군 외 타군으로 임관시키는 것은 제한된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4556 (2014. 4. 7.)

회신 : 법무담당관-3819 (2014. 5. 1.)

## 12. 군무원 전직시험 면제 여부

### 【질의요지】

‘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으로 임용(‘91. 7. 1.)되어 면직(‘92. 1. 15.)과 동시에 ‘기능군무원 행정직렬 10급’으로 재임용(‘92. 1. 16.)된 자가 그 후 ‘일반군무원 인쇄직렬 7급’으로 임용(‘12. 3. 1.)되어 ‘일반군무원 시설직렬 7급’ 전직대상자로 선정되었는 바, ‘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 경력을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자의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일반’군무원 전직대상자에 대한 전직시험 면제에 있어 ‘기능’군무원으로 명칭이 동일한 ‘직렬’(시설직렬)에 근무한 것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단서 1호의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없음.

###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에 의하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하나,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단서 1호에 의하면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상이한 직군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전직은 일반군무원 상호간, 기능군무원 상호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직렬 간에는 전직 임용될 수 없는 것인바<sup>16)</sup>,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업무분야에서 직렬 명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의 ‘직렬’은 다르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일반군무원 시설직렬 7급’ 전직 시 ‘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없음. 끝.

질의 : 인사기획과-5147 (2014. 4. 22.)

회신 : 법무담당관-4326 (2014. 5. 22.)

---

16) 안전행정부 실무담당자(엄현경 주무관)도 기능직이 폐지되기 전 전직시험 면제의 기준이 되는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기능직 내 또는 일반직 내에서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

### 13. 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 【질의요지】

현행 군인사법 제7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군 장학생 및 각 군 사관학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 【답 변】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정한 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정책의 합리성 판단은 소관부서의 영역이라 사료됨.

#### 【이 유】

군인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단기장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간호병과에서 영관급 장교의 정원확대 없이 무분별한 장기인원 증가는 전역자 감소로 인한 초임획득인원 감소 및 이에 따른 학교 운영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인력운영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의 의무복무기간도 최초 여자군인들만을 전제로 하여 여자군인의 의무복무기간(2년)을 수업연한에 가산하여 5년(여자군인 의무복무기간 2년 + 수학기간 3년)이었다가 6년(여자군인 의무복무기간 2년 + 수학기간 4년)이 되었고 그 기간이 군인사법 제7조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인력수급의 문제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정책적 문제라 할 것임.

그러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 정한 정책의 합리성 판단은 소관부서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군 장학생은 그 양성목적과 인력운영 여건, 임무수행 등에 있어 별개의 양성과정이므로 의무복무기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을 두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양성평등 차원에서 3군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모집하고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생도를 모집하였다 하여 그 결론에 있어 달라질 필요는 없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력관리과-1472 (2014. 5. 13.)

회신 : 법무담당관-4593 (2014. 6. 3.)

## 14. 통합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본부직원의 소속

### 【질의요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를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 편성·운영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위반되는지와 통합직장예비군여단본부 직원의 소속이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인지 여부

### 【답 변】

통합직장예비군부대를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 편성·운영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직장예비군여단본부 직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이라 판단됨.

### 【이 유】

구미산업단지 직장예비군여단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편성된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이며, 이 경우 직장의 장은 동법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단위로 통합직장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통합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장의 책임 하에 구미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 편성하여야 함.

그러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장의 책임 하에 통합직장예비군 여단을 편성한다는 것은 구미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조직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이자 여단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 통합직장방위협의회 아래에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 편성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직장예비군여단본부 직원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끝.

질의 : 예비전력과-1599 (2014. 5. 8.)

회신 : 법무담당관-4988 (2014. 6. 20.)

## 1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인의 범위

###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0의 2호에서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군인의 범위

### 【답 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 【이 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0의 2호가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5급 이상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한 군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대별하고 경력직공무원을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분이 서로 다른 공무원 상호간에 계급별 상하관계에 대해 명시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1980년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가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제3호가 「국군조직법」상의 구성원인 군인과 군무원사이의 서열 또는 대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 4가 다른 공무원 중에서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공무원 상호간 대우 또는 서열을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6조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용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 급여수준을 공무원 사이의 대우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론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하는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를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고, 구분이 다른 공무원 사이에 엄격한 의전 또는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직공무원과 군인 사이의 서열 및 대우를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적정한 군인의 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위 군인의 의전예우에 관한 지침, 각 공무원의 보수 기준, 수행하는 직위가 민원 또는 이권에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등록 예정인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군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끝.

질의 : 직무감찰담당관-4391 (2014. 7. 7.)

회신 : 법무담당관-5977 (2014. 7. 15.)

## 1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 【답 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 【이 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0, 11호에서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5급 이상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한 군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대별하고 경력직공무원을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분이 서로 다른 공무원 상호간에 계급별 상하관계에 대해 명시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1980년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가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제3호가 「국군조직법」상의 구성원인 군인과 군무원 사이의 서열 또는 대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 4가 다른 공무원 중에서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공무원 상호간 대우 또는 서열을 정함에 있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6조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 급여수준을 공무원 사이의 대우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론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하는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를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고, 구분이 다른 공무원 사이에 엄격한 의전 또는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 사이의 서열 및 대우를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적정한 군무원의 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위 군인의 의전예우에 관한 지침, 각 공무원의 보수기준, 수행하는 직위가 민원 또는 이권에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등록 예정인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군무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끝.

질의 : 직무감찰담당관-4575 (2014. 7. 11.)

회신 : 법무담당관-5976 (2014. 7. 15.)

##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범위

### 【질의요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가 전역예정자에 대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전역예정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의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장관의 의뢰 없이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됨.

### 【이 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동법 제2조 참조), 원칙적으로 이미 제대한 군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동법 제13조가 국가보훈처장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해서도 전직교육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임.

한편,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전직 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신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전직지원교육을 받으려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sup>17)</sup>은 국가 보훈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전역예정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실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은 전역 전까지 현역신분으로 인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전직지원교육 권한은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를 의뢰한 경우<sup>18)</sup>에만 실효성이 있다 할 것임.

질의 : 전직지원정책과-1836 (2014. 6. 20.)

회신 : 법무담당관-6219 (2014. 7. 18.)

---

17) 동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는 전역예정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18) 특히, 「전직지원교육원법」이 제정(‘14. 12. 12. 시행)되어 향후 국방지원교육원에서 전역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이 실시될 예정인바, 국방부장관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뢰할 필요성도 없어졌다 할 것임.

## 18.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가능성

### 【질의요지】

프로골프 선수 출신으로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을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그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는 병역법이 정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됨.

### 【이 유】

병역법 제18조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제19조는 예외적으로 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음. 질의한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향해 중이거나 외국에 복무 중인 경우 또는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합동참모본부가 발행한 군사용어사전은 ‘작전’을 “1. 전략, 전술, 근무, 훈련 및 군 행정임무에 관한 군사적인 행동 또는 그 수행, 2. 어떠한 전투 또는 전역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투수행 과정으로서 이동, 보급, 공격, 방어 및 기동 등이 포함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연습’을 “작전계획, 준비, 시행을 포함 모의된 전시작전이나 군사기동, 즉 작전계획 시행훈련으로서,

연습은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절차와 교리를 적용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sup>19)</sup>

구 병역법(법률 제7186호, 2004. 12. 31. 개정되기 전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는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3월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규정은 국방부 장관에게 그 재량의 범위를 지나치게 인정하여 현역병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이유로 2004년 12. 31. 병역법이 개정될 때 삭제되었음.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조정, 특히 그 연장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열’을 이유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군의 날 행사, 국제 관함식 등이 특별한 사열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이 곤란하며 동 사유로 복무기간 조정사례가 없어”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sup>20)</sup>

세계체육대회에 참석이 작전 또는 연습에 해당될 수 있는냐에 대해 검토하면, 군 복무기간의 연장은 장병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연습과 작전은 군사행동을 전제로 한 개념인 점, 과거 병의 복무연장 연장사유에 해당되던 ‘특별한 사열’이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삭제된 점과 그 사유, 해군의 경우 항해로 인해 복무기간 연장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육군의 경우 전혀 없었던 점<sup>21)</sup>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는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19)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p. 270, p. 223.

20) 2004. 8. 20. 김석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p. 3.

21) 각 육군 및 해군본부 실무자로부터 확인한 사항임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이 복무연장 및 보류를 신청 또는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전역의 보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 됨. 끝.

질의 : 인력관리과-2137 (2014. 7. 7.)

회신 : 법무담당관-6230 (2014. 7. 18.)

## 19. 군인 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해석 관련

### 【질의요지】

가. 군인징계령 제21조에 규정된 ‘징계유예’의 법적성격(처벌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징계 유예기간을 경과한 징계기록(말소기간 2년)의 효력

다. 견책유예를 받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서류전형 배점표상 ‘기타 처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3점을 감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변 및 이유】

가. 징계유예는 군인징계령에 의해 근신, 견책 의결에 대한 집행의 유예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나,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6월)이 도과되면 의결의 효력이 없음(군인징계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그러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취소 가능성이 있는 등 처벌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음.

나. 군인징계령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유예 후 징계유예기간(6월)이 경과한 후에는 의결의 효력이 없음. 다만, 징계유예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징계의결이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사상 진급시 잠재역량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7에 규정된 서류전형 배점표에 의하면 ‘기타 처벌의 경우’는 중징계를 제외하고 지휘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당할 것인데, 징계유예가 경징계 중 근신 또는

견책에만 가능하다는 점, 징계유예기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경징계 처분과는 달리 진급시 잠재역량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유예를 ‘기타 처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3점의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끝.

질의 :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4445 (2014. 7. 4.)

회신 : 법무담당관-6726 (2014. 8. 1.)

## 2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지침 하달의 적법성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14. 7. 1.부로 다(多)태아<sup>22)</sup> 임신시 출산휴가의 확대 및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sup>23)</sup>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군인복무규율」 개정 이전에 군인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하달(국방부 소관부서 실장 전결)이 적법한지 여부

### 【답 변】

군인복무규율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지침으로 다태아를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22)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2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향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이 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단(單)태아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다르게 다(多)태아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는 등 개정을 통해 2014. 7. 1.부로 시행하고 있으나,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 제2항은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한 출산휴가에 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多)태아를 임신한 여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일반 국가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로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고, 「군인사법」 외에도 「군인복무규율」의 적용을 받는바(군인사법 제1조, 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조 참조), 임신한 여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다(多)태아를 임신한 여군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특히 휴가는 군인의 복무 중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용을 그 규정 자체의 개정이 아닌 지침으로 하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인바, 향후 「군인복무규율」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헌법상 모성보호 규정(헌법 제36조 제2항)을 비롯한 국방여성의 권익 증진 및 모성보호정책의 발전 측면에서 여성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향후 「군인복무규율」 개정시 부칙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시기와 동일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수혜적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끝.

질의 : 병영정책과-6185 (2014. 7. 17.)

회신 : 법무담당관-6725 (2014. 8. 1.)

## 21.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 【질의요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직권 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해촉 가부

### 【답 변】

위촉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촉권자인 국방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음.

### 【이 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로 위원의 해촉 사유 및 구체적인 해촉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가를 보면, 동법 제7조 제4호는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명이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아닌 위원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도 볼 수 없는바, 위원장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부쳐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나 위원회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특히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 수립권자는 국방부장관인 점(동법 제6조 및 제7조 참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원회의 의결이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어 위원회를 의결기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방부장관의 결정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명예직으로서 특별한 신분보장의 내용이 없다는 점, 법령에서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원으로 위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촉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위촉권자인 국방부장관이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끝.

질의 : 보건정책과-4144 (2014. 7. 11.)

회신 : 법무담당관-6882 (2014. 8. 6.)

## 22. 재심청구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제적명령 및 진급

### 【질의요지】

소령 진급 예정자('73. 5. 1.부)였으나 뇌물수수 등으로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제적('73. 12. 26.부)<sup>24</sup>된 후 사망('04. 10. 22.)하였으나 이후 재심 청구에 의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14. 5. 2.)된 경우 제적명령을 무효로 발령해야 하는지 및 소령의 연령정년시점으로 전역명령을 발령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재심 무죄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제적명령의 근거되는 사유가 없는바 이미 발령된 제적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무죄판결을 받은 시점 후에 그 자에 대한 진급명령을 발령할 수 없어 소령으로 진급을 명할 수 없으며, 소령으로 진급하지 않은 이상 진급예정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령이라는 전제하에 연령정년을 계산하여 전역(퇴역)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임.

### 【이 유】

「군인사법」(1970. 1. 30. 법률 제245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호는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적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24) 구속되어 '73. 4. 17.~ 12. 25. 휴직

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에 따라 제적명령이 발령된 자에 대하여 무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적명령의 근거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미 발령된 제적명령은 취소하여야 할 것임.

한편, 동법 제31조 제1항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결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에 따라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군법회의에 기소되었을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40조는 진급 예정자가 휴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의 발령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 시행령(2014. 7. 18. 대통령령 제2548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시에 발령한다.”고 규정하는바, '73. 5. 1.부 소령 진급 예정자였으나 휴직되어 진급 발령이 보류되었고, 진급발령 전에 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면, '14. 5. 2.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죄판결 확정일이 진급 예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무죄 확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진급을 발령을 하지 않으며, 무죄 판결 확정일 이전인 '04. 10. 22. 이미 대상자가 사망한 이상 소령 진급을 발령할 수는 없으므로,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급 예정자를 진급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렇다면 무죄 판결 확정으로 인해 제적명령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진급 예정 계급인 소령으로 진급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소령으로 진급시킬 수 없다면 소령으로 진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소령의 연령정년에 전역(퇴역) (동법 제36조 및 제41조 제2호 참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8615 (2014. 7. 2.)

회신 : 법무담당관-7540 (2014. 8. 18.)

## 23.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 관련 감사의 주체

### 【질의요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 권한의 주체

### 【답 변】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인 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의 장이 그 책임 하에 통합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는바,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에 관한 감사는 수입군부대의 장(정기), 국방부장관(또는 각 군 참모총장)(특별)이 그 주체로서 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는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직장예비군부대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인 산업단지공단 본부장의 책임 하에 편성·운영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직장예비군부대라 할 것임.

그런데 동법 제4조는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정기감사”는 “수입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특별감사” 중 “각 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감사대상기관으로 ‘직장예비군부대’(제2호),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을 규정하고 있고, 통합직장예비군부대도 직장예비군부대라 할 것인바,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감사 또한 “수입군부대의 장”, “국방부장관”(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주체로서 행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예비전력과-2543 (2014. 7. 18.)

회신 : 법무담당관-7929 (2014. 8. 22.)

## 24. 국직부대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부대

### 【질의요지】

국직부대(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답 변】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해군 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설치 권한이 없으므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은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군 전역규정」 제9조는 “위관, 준사관 및 부사관은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제대를 규정한 제10조에서 부사관에 대해서는 계룡대 근무 지원단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계룡대근무지원단’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동 규정 제9조는 “위관,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구별하여 “영관급 장교와 조사위원회 설치권이 없는 본부 각부서 및 본부 직할부대 조사 대상자는 참모총장(해병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 규정 제10조에서 해군본부 조사위원회는 ‘해군 제1위원회’와 ‘해군 제2위원회’로 구분하고, ‘소령급 이상 장교’를 그 대상으로 하는 ‘해군 제1위원회’와는 달리 ‘해군 제2위원회’는 ‘본부 각 부서, 조사위원회 설치권이 없는 직할부대 및 대외부서 근무 중 원복되어 해군본부로 대기 중인 위관, 준사관 및 부사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렇다면 계룡대근무지원단은 해군 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이 없으므로 부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원복조치 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 해군본부 조사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해군 규정에 의해 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끝.

질의 : 계룡대근무지원단 인사복지처-11197 (2014. 8. 13.)

회신 : 법무담당관-9454 (2014. 9. 25.)

## 25. 기소휴직된 단기복무장교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시 전역일자 등

### 【질의요지】

의무복무기간(3년) 만료 전 1심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기소휴직되어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단기복무장교의 전역일자(복직, 휴직기간 포함)와 봉급의 차액 지급 여부

### 【답 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에 당연히 복직한다 할 것이고, 복직일 전날까지가 휴직기간임. 이에 따라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 종료한 무죄 판결 확정일이 전역일이라 할 것임.

### 【이 유】

구 「군인사법」(법률 제11390호, 2012. 3. 21. 시행) 제48조 제2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49조 제2항은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건은 판결 확정일에 종료하므로 판결 확정일 전날까지가 휴직기간이라 할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한 바, 기소휴직된 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에 기소휴직기간이 종료되고 당연히 복직된다 할 것임.

또한 동법 제48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기소휴직자에게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고, 동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단서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만료일인 '12. 5. 31.을 전역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① 동법 제48조 제4항이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죄판결 확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소휴직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에도 전역일을 원래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로 보는 경우 기소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규정 및 전역일 이후 기소휴직기간에 대해 봉급의 차액을 지급하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는 점, ② 단기복무장교의 경우 기소휴직이 없었더라면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전역일로 보아야 하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소휴직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사실상 중단되어 원래 예정된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 ③ 비록 무죄판결 확정 전에는 기소휴직기간이 의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그 기간도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의무복무기간을 산입함에 따라 3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초과하였더라도 기소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사실상 복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실상의 복무는 기소휴직기간의 종료로 만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④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단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기소휴직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소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점, 마찬가지로 ⑤ 동법 제48조 제4항 단서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휴직기간 동안 봉급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 또한 기소휴직기간 동안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무죄판결 확정일을 전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질의 : 인사기획과-12937 (2014. 9. 25.)

회신 : 법무담당관-10440 (2014. 10. 15.)

## 26. 1심판결 선고 후 중징계를 받은 자의 지원전역 허가 가부

### 【질의요지】

성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중징계 처분(정직 3월)이 확정되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의 조사 전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원에 의한 전역을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임.

### 【이 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규칙 제63조는 “조사 대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조 제1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로 요구 중인 때”(동조 제2호)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라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전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전역을 원한다 하더라도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에 의한 전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임.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록 형이 확정되지 않는으나 향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선고의 효과를 받을 상태에 있는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미 형사판결 선고 후 중징계 처분을 받고 확정된 상태인바 위 훈령 제3조 제2호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로 요구 중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취지는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자로 판정되어 부적합 전역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군인에게 원에 의한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형사처벌에 있어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이후이고 징계처분에 있어 원심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형사벌과 징계처분 모두에서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는 전역을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임.

다만,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는 동 시행규칙 제62조에서 규정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조사보류사항이 아닌바, 원에 의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여 부적합전역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지원전역절차에 따라 원에 의한 전역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전역권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임.

한편, 1심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군인사법」 제10조 제5호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른 제적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14498 (2014. 10. 22.)

회신 : 법무담당관-10991 (2014. 10. 31.)

## 27. 해병대 사령부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 관련 지침의 적법성

### 【질의요지】

해병대 사령부는 「'14년도 장병 태권도업무 지침」을 시달하여 태권도 단증 미취득 병사에 대하여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는바,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가 군인복무규율 제4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외출·외박 또는 휴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자인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취득 시까지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지 못한 자를 외출·외박 또는 휴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자인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군인복무규율에 반한다고 사료됨.

### 【이 유】

해병대 사령부는 태권도 활성화를 통해 장병들의 강인한 전투체력 유지 및 자신감 부여로 군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4년도 장병 태권도업무 지침」을 시달하면서 이 지침의 내용으로 우수부대 및 태권도업무 유공자를 선발하여 부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하여 동기를 유발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계급별(개인) 목표수준 미달자에 한하여 각종 제한사항을 적용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면서, 특히 병의 경우 ‘병장 1~2개월 지연진급 적용’ 및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박)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그런데, 포상휴가의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5 제2항은 특별휴가에 관하여 “허가권자는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상휴가를 허가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고, 외출·외박의 경우 군인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바,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임.

한편, 「군인복무규율」 제42조 제1항은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지휘관의 재량을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목적 및 방법 등은 타당해야 할 것임.

또한, 동조 제2항은 “환자”(제1호),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제2호),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3호)의 외출·외박 또는 휴가는 일시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의 경우 현재 보호조치가 필요한 인원이라는 점,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는 현재 처벌 또는 처벌가능성으로 인해 부적절한 인원이라는 점 때문에 외박·외출 또는 휴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태권도는 장병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부대관리훈령」 제401조에서도 규정된 종목이기는 하나,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는가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는 달리 취득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취득할 때까지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경우 ‘일시 보류’라고 볼 수도 없고,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결국 태권도 단증 취득자에 대하여 포상휴가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단증 미취득자에 대하여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태권도 활성화를 통해 장병들의 강인한 전투 체력 유지 및 자신감 부여로 군 전투력을 배양’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닌 ‘태권도 단증 취득 시까지’로 무기한 제한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에 반한다 할 것임.  
끝.

질의 : 병영정책과-7702 (2014. 8. 28.)

회신 : 법무담당관-11122 (2014. 11. 4.)

## 28. 승진공석 추가 승인 가능여부

### 【질의요지】

승진공석 확정 통지(10. 23.) 후 해군에서 추가 승진 공석(총포 8급 1석)을 요청(11. 6.)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국방부가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 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9조 제1항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반기 충원계획을 2월 10일까지, 후반기 충원계획을 8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까지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승인할 수 없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는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8. 10. 이후 승진공석의 추가 필요성으로 인해 추가로 승진공석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15334 (2014. 11. 10.)

회신 : 법무담당관-11312 (2014. 11. 11.)

## 29. 복무연장기간 중 불임휴직을 한 경우 전역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복무연장기간 중 불임휴직한 경우 불임휴직기간만큼 전역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 【답 변】

불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예정된 복무연장기간 만료일에 전역된다 할 것임.

### 【이 유】

불임휴직은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근거하여 「국방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 제14조 제1항에서 인정한 휴직제도로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및 위 훈령 제17조는 불임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연장기간에의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복무연장은 「군인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자가 원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전형을 거쳐 임용권자가 선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으로, 일정한 기간만큼 실질적인 복무로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복무기간과는 달리 복무연장기간은 연장된 일정 시점까지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고, 연장된 복무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무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바, 복무연장기간은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할 것임.

특히, 동법 제36조 제2항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무연장으로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전역된다 할 것인바, 불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예정된 복무연장기간 만료일에 전역된다 할 것임. 끝.

질의 : 국방여성정책과-3468 (2014. 10. 14.)

회신 : 법무담당관-11418 (2014. 11. 14.)

## 30.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자 등이 군인인지 여부

### 【질의요지】

‘개별적으로 입영 중에 있는 자’,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 중인 자’ 및 ‘전역 후 귀가 중인 자’가 각각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개별적으로 입영 중에 있는 자’와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 중인 자’는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전역 후 귀가 중인 자’는 군인에 해당함.

### 【이 유】

「병역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입영은 인도·인접지에 설치된 입영사무소에서 인도·인접이 이루어짐으로써 완료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군복무기간을 기산함에 있어 입영당일을 포함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인접지에 설치된 입영사무소에서 인도·인접이 이루어짐으로써 군부대의 통제 하에 있게 되고 사실상의

군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입영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바,<sup>25)</sup> 입영대상자가 군부대 또는 인도·인접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군복무 중으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입영 중에 있는 자’는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히, 「병역법」 제75조 제1항은 “군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복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대상과 범위는 그 희생과 공헌의 성격과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직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입은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나 재해의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동법이 정하는 보상의 대상으로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로 군부대로 입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군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상의 범위를 넓힌 정책적 결단으로 보이는바, ‘개별적으로 입영 중에 있는 자’ 역시 군인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동법 제17조는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귀가시키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영 후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귀가조치 하는 경우 그

25) 헌법재판소도 군인신분의 시기(始期)에 대하여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군부대 내로 들어갔다면 그 때로부터 군인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4헌바37결정 참조)

자는 입영함으로써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다가 귀가조치를 받음으로써 현역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인바,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 중인 자'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사의 전역일은 통상 군복무기간의 말일로 정하고, 민법 제159조에 의하면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군복무기간은 전역일의 종료, 즉 전역일 당일 24:00가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어 군인의 신분이 상실되는바, '전역 후 귀가 중인 자'는 '군인'이라 할 것임. 끝.

질의 : 인력정책과-152 (2014. 12. 4.)

회신 : 법무담당관-322 (2015. 1. 12.)

## 31. 사법연수생이 방침보류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사법연수원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을 방침보류 대상인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간주하여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사법연수원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법연수생은 방침보류 대상인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지위 또는 ‘법관 및 검사’ 직종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방침보류 규정의 목적 및 취지, 운영실태 및 관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 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에 의해 [별표 3]에서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과 보류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법연수원은 최초 구 「법원조직법」(법률 제2222호) 제8조의3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이 아닌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사법연수생은 명시된 보류대상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그러나, ① ‘각급 학교 학생’을 방침보류 대상 직종으로 규정한 취지는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학교가 가지는 공공성과 학교교육의 공익성<sup>26)</sup>에 따라 이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인바, 사법연수원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고도의 공익적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법연수생을 방침보류 대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법연수원은 수업연한이 2년으로 4학기 동안 총 65학점에 이르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대학 또는 대학원과 유사한 수업연한 및 과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 ③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사법연수원에서의 수습기간 동안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법원조직법」 제72조), 특히 검찰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검사에 준하는 지위(「검찰청법」 제32조 제1항)를 가지는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방침보류 대상 해제시 직무의 수행 및 교육진행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공익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④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사법연수원 개원 이래 약 45년간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방침보류 직종으로 ‘법관 및 검사’를, 보류대상으로 ‘현직 판사 및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현직 판사 또는 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 잠재적 적용대상자이자 검찰 시보기간 동안에는 검사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법관 및 검사’에 준하여 볼 수도 있는 점, ⑥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법연수생 중 여자 연수생 및 미필자와는 달리 예비군에 해당하는 연수생의 경우 방침보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로인해 수습에 제한사항이

26)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교육기본법」 제2조 및 제9조, 「고등교육법」 제28조 참조)

발생되어 향후 법관·검사·변호사로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예비군의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⑦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방침보류 대상자에 해당함에 반해 사법연수생은 방침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바,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사법연수원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 학생’ 또는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된 사항과 방침보류 규정의 목적 및 취지, 운영실태 및 관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예비전력과-4463 (2014. 12. 18.)

회신 : 법무담당관-323 (2015. 1. 12.)

## 32.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방부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의 비율이 50퍼센트와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와 30퍼센트로 변경되었으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근무성적평정) 및 제24조(경력의 평정점)는 기존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국방부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규칙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시행규칙이 시행령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국방부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규칙의 내용을 대체할 수 없음.

### 【이 유】

「군무원인사법」 제15조 제1항은 “군무원의 계급 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교육훈련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하여, 제24조는 경력평정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는 「군무원인사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의 산출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개별 요소의 반영비율이 근무성적평정점은 60%, 경력평정점은 30%, 교육훈련성적은 10%로 변경되었으나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아니하여 개별 구성요소의 산정기준을 보면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50점, 경력평정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각각의 개별 구성요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각각의 구성요소를 산정한 후 이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하는 비율은 개정된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기준대로 하면 되므로 시행규칙이 시행령에 명백히 반하여 위법무효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그러므로 시행규칙의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효한 시행규칙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국방부 지침의 형식으로 하달하여 시행규칙을 대체할 수는 없음.

더군다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 지침으로 하달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다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시행규칙상의 각각의 구성요소를 산정한 점수를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대로 반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지침의 형식으로 하달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인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그리고 ‘교육훈련성적’을 산출하는 것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에 반영하는 비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근무성적평정점’은 60퍼센트, ‘경력평정점’은 30퍼센트 그리고 ‘교육훈련성적’은 10퍼센트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산출된 평정점을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대로 반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지침으로 하달할 수 있다 할 것임.<sup>27)</sup> 끝.

질의 : 인사기획과-1033 (2015. 1. 21.)

회신 : 법무담당관-771 (2015. 1. 26.)

---

27) 산출된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시행령상의 비율대로 반영함에 있어서 계산의 복잡하고 혼란이 야기되어 승진명부작성의 반영비율과 개별 요소의 점수기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임.

### 33.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 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 【질의요지】

국방부 검찰단 검찰수사관(신원정보담당 군무원)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답 변】

사전에 각 군의 동의를 거친다면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약식자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군은 군내 전 기관 및 부대와 그 소속 군인·군무원 및 예비역에 대한 인사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운영 및 관리하고 약식자력을 포함한 각종 인사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는바, 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상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방인사정보체계”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제3자인 국방부 검찰단에 ‘제공’<sup>28)</sup> 또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7호는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군사법원법」 제36조는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호는 검찰관의 직무로서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은 “검찰수사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며,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

28) 공유를 포함함.

수사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31조 제1항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검찰관 또는 검찰수사관이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상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임.

다만,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인사기획관은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중요 정책 결정, 민·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국방인사체계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군이 인사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각 군 소속인원의 인사자료에 관련된 업무 및 자료열람 권한은 사전 각 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성 또는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상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각 군의 동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673 (2015. 1. 14.)

회신 : 법무담당관-1841 (2015. 2. 26.)

## 34.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상 전보 및 인사 교류 규정 해석

### 【질의요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7조 제1항은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일체의 전보 및 인사교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훈령 제106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도 전보 및 인사교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sup>29)</sup>

### 【답 변】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보 및 인사교류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자로 전보 및 인사교류 제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동 훈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37조는

29) 재질의서에 기재된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은 오기인 것으로 사료됨.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5조는 전보에 관하여, 제106조는 인사교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면서, ‘전보’의 경우 보직을 부여받은 후 최대 5년 단위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교류’의 경우 동일부대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 훈령 제106조 제5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부대(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특채 2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도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애발생자 및 부부·고충군무원으로 승인된 사람’(제1호), ‘금품수수, 횡령, 성추행, 도박행위, 상습 결근자 등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제2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복수 직급직위 보직자(3급 직위에 보직된 4급, 4급 직위에 보직된 5급)가 18개월 이후에도 원 직급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부대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특채 2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도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교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훈령 제107조 제1항은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전보 또는 인사교류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으로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보 및 인사교류 후 활용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일부대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능률성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등에 비추어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일체의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

그러므로, 인사교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하고, 동 훈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았을 때 인사교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교류의 필요성 때문에 임용권자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 점,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sup>30)</sup> 교류대상자의 필요성(‘장애발생자 및 부부·고충군무원으로 승인된 사람’ 등) 또는 보직권자 또는 임용권자의 필요성(‘금품수수, 횡령, 성추행, 도박행위, 상습 결근자 등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 등에 의한 인사교류를 일체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자도 동 훈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한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끝.

질의 :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60 (2015. 1. 13.)

회신 : 법무담당관-1911 (2015. 3. 2.)

---

30) 「육규114 군무원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1항도 “정년 도래일자가 3년 이하(공로연수기간 포함)인 자는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승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35. 군무원의 정직기간 중 교육과견과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기록물관리담당의 직책을 수행하는 군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15. 1. 26. ~ 3. 25.)을 받았는바, 교육과견(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기록관리학 과정을 수강, '15. 3.부터 1년, 총 2학기)과 출장(국가기록원 교육 등)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정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육과견 또는 출장은 정직의 효과에 반하여 금지된다 할 것임.

### 【이 유】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3항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인원은 정직기간 중인 '15. 1. 26.부터 '15. 3. 25.까지는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이 경우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비추어 그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으로, 정직처분의 효과로서 정직기간 중 보수의 2/3 감액(「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2항 참조), 18개월의 호봉승급 지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참조), 18개월의

승진임용제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참조) 외에 별도로 정직처분의 효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므로 정직기간 중 교육 또는 출장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미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출장은 직무수행 그 자체 또는 직무수행을 위한 직접적 행위인바, 출장은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고, 교육 파견은 직무수행 그 자체 또는 직무수행의 직접적 행위는 아니나 앞으로의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직무수행의 간접적 행위인바, 교육 또한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정직기간 중 출장 또는 교육파견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 것임. 끝.

질의 : 계룡대근무지원단 인사복지처-2299 (2015. 2. 11.)

회신 : 법무담당관-1973 (2015. 3. 3.)

## 36.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 【질의요지】

2014. 6. 16. 육군 8군단에서 내려진 원징계처분에 대하여 육군 1군사령부의 징계 항고심사 결과 2014. 7. 14. 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육군 8군단에서 재징계 의결 요구가 없는 사이 대상자가 2014. 11. 25. 현 소속사인 연합사로 전속된 경우,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 규정된 3개월의 재징계 의결 요구 기간은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를 단축하는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징계처분자가 아닌 징계권자가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가. 재징계 의결요구에 관한 기간이 징계시효를 단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한 재징계 의결 요구할 수 있음.

나. 재징계 의결요구권자는 원징계처분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유】

가.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에 의한 징계시효 단축 가능성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 기재된 3개월의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은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되었거나 징계시효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원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징계 의결요구가 가능하도록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규정은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된 경우 또는 징계시효가 3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 규정이 징계시효를 단축할 수 있는 취지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러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sup>31)</sup>

위 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파악할 때, ‘제1항의 기간(징계시효)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본 징계시효를 단축하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음.

법적안정성이나 형사절차와 비교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징계항고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징계시효가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징계항고나 행정소송을 거친 자에게 징계시효 적용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징계항고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자와 비교 측면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일반 공무원의 재징계 의결요구 기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판결 및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판결 등이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요구 기한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관되게 재징계 의결기한에 관하여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징계의결 기한규정의 법적 성질은 훈시적 규정으로서 징계의결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님을 안내하고 있음.<sup>32)</sup>

31)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판결에서는 본 사안과 같은 쟁점이 문제된 「교원징계처분 등의제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의 3개월 재징계 기한에 관하여 이를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

32) 2012년도 징계업무 편람(2012. 6. 행정안전부 발간) p. 132 참조

만약 재징계 의결요구 기한을 징계시효를 단축할 수 있는 강행(효력)적 규정이라고 본다면 일반 징계 의결 기한(「군인 징계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처분 징계 의결 기한은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항고 의결 기한 역시 「군인 징계령」 제35조,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규정을 준용함) 역시 혼시적 규정이 아닌 강행(효력)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등 징계 의결요구 기한 전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게 될 수 있음.

#### 나. 재징계 의결요구권자의 범위

한편 재징계 의결에 관한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서는 재징계 의결요구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이를 원징계처분권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재징계 의결요구권자를 원징계처분권자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징계권을 근거규정 없이 축소하는 것임.

『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서도 ‘재징계의결 요구시 해당 공무원이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을 달리할 경우 관련법령에서 처분권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소속 기관장이 현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sup>33)</sup>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한 원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원징계처분 사안에 대한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징계 의결요구권자는 원징계처분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관할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거하여 현 소속대에서 징계의결 및 처분할 수 있음. 끝.

33) 2012년도 징계업무 편람(2012. 6. 행정안전부 발간) p. 136 참조

질의 :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245 (2015. 2. 12.)

회신 : 법무담당관-2029 (2015. 3. 5.)

## 37. 예비역 간부의 진급심사 시 전역예정자 선발 가부

### 【질의요지】

예비역 간부 진급절차(서류심사→신체검사→진급교육→인사명령) 중 서류심사 이후 진급교육 이전 시점에 전역하는 전역예정자의 경우도 교육소집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전역예정자는 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음.

### 【이 유】

예비역 간부에 대한 진급은 전시 동원부족 간부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은 “예비역의 장교·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역 간부에 대한 진급은 예비역의 장교·부사관일 것을 전제로 하여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였고, 교육소집을 마친 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할 것임.

또한 동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진급계급을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지원자격 또한 동원자원의 경우 “예비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교육소집은 예비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육대상자 선발(서류심사) 당시 “예비역”이라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당시 예비역이 아닌 전역예정자는 “예비역”에 해당하지 않는바, 선발 후 교육 이전 시점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발 당시 “예비역”의 신분이 아닌 자는 교육소집 대상으로 선발할 수 없음. 끝.

질의 : 자원동원과-404 (2015. 2. 4.)

회신 : 법무담당관-2636 (2015. 3. 25.)

## 38. 육군 예비역 장교 전역명령 정정

### 【질의요지】

2014. 6. 5.(목)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결정에 의거하여 2014. 6. 13.(금)부 전역명령을 받게 된 장교(민원인)가 전역일과 전역명령 발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4. 6. 16.(월)에 통지받아 알게 된 후 부대 지시에 따라 계속 근무를 하고 2014. 6. 17.(화) 오전경 전역신고를 한 경우, 위 전역명령 상 전역일자 수정을 위하여 이미 내려진 전역명령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정정할 수 있다면 타당한 전역일은 해당 장교가 전역을 통지받아 알게 된 날(2014. 6. 16.)인지 아니면 실제 전역신고를 한 날(2014. 6. 17.)인지 여부

### 【답 변】

전역명령 대상자가 전역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된 날을 전역일자로 하여 정정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고, 만약 부대 사정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근무를 마치고 전역신고를 한 날을 전역일자로 하여 정정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규정을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근거를 두고 있고, 이 경우 전역일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규율하는바, 같은 조 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제2조 제1호는 ‘임용’에 대하여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임용령 제6조 제1항은 ‘임용의 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특히 불이익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은 임용통지서 상 날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sup>34)</sup>

그러므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결정으로 인한 전역처분 역시 명령 대상자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 대상자가 전역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되기 전을 전역일자로 하여 전역명령이 내려졌다면, 전역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된 날을 전역일자로 하여 전역명령에 대한 정정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며 만약 부대 사정으로 그 이후의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전역신고 조치를 하였다면 근무를 마치고 전역신고를 한 날을 전역일자로 하여 정정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인사기획과-5033 (2015. 4. 13.)

회신 : 법무담당관-3465 (2015. 4. 17.)

34)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누148 판결(직위해제처분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누165 판결(공무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행위는 임명권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전까지 그 공무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 참조

## 39. 기존 훈령과 배치되는 군무원 동일부대 지침 발령의 가능성

### 【질의요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733호) 제106조 제6항에 따른 별표 5의 규정 상 합동군사대학교가 서울, 인천, 경기 생활권으로 명백히 잘못 기재<sup>35)</sup>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별도 수정지침으로 하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훈령이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명백한 오기로서 당연무효로 해석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훈령과 다른 내용으로 임시적인 국방부 지침을 하달하여 훈령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으며, 훈령의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규정이 명백한 오기 등으로 당연무효인지를 검토하여 계통으로 공지하고, 업무의 혼란 또는 민원 등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훈령을 개정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유】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6조 제6항에서는 “동일부대 개념은 각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국직부대는 별표 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5) 질의부서 담당자는 해당 규정이 질의 부서 업무 상 명백한 오기라는 입장이나, 이는 질의 부서의 공식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위 별표 5에서는 나항에서 동일부대 적용기준을 도표로 기재하면서 현재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합동군사대학교를 ‘서울, 인천, 경기’ 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현재 같은 별표 5에서는 현재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 역시 ‘서울, 인천, 경기’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등 부대의 위치와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규정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발하게 되므로, 훈령이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명백한 오기로서 당연무효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닌 한, 훈령과 다른 내용으로 국방부 지침을 하달하여 훈령의 내용을 대체할 수 없음.

위 별표 5 해당 내용을 명백한 오기로 판단할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명백한 오기가 맞는지 여부 및 명백한 오기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해서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를 해당 계통으로 공지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이루도록 함이 타당하며, 만약 명백한 오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훈령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타당함.<sup>36)</sup> 끝.

질의 : 인사기획과-5601 (2015. 4. 22.)

회신 : 법무담당관-4021 (2015. 5. 7.)

---

36) 훈령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명백한 오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해당 훈령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생한 혼란과 민원 등은 담당 부서의 책임 사항임

## 40. 신원조사 결과 회보 시 범죄경력조회 일체의 회신 가능성

### 【질의요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장교 등 신규임용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 후 각 군 본부에 그 결과를 회보할 때 기존의 방식(‘적·부’로만 회신)을 변경하여 범죄경력자료 일체를 제공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답 변】

개인정보 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종합적인 해석에 의할 때, 범죄경력자료 일체를 각 군 본부에 회보하는 것은 위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서 제한됨.

###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위 규정에 의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은 업무 수행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개인정보가 업무 수행과 직결된 필수 자료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두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서면동의 등 엄격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함.

만약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는 같은 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및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조, 각 군 본부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1항에 각 근거를 두고 있어 그 법적 근거와 성질, 지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호 간에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제3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나아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일응 장교 및 사관생도의 임용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회보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근거한 범죄경력조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되므로 각 군 본부가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근거가 되기 어려움.

그러므로 각 군 본부가 신원조회를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에 범죄경력자료 일체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므로 제한된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223 (2015. 2. 16.)

회신 : 법무담당관-4215 (2015. 5. 13.)

## 41. 임시계급의 현역복무기간(정년)

### 【질의요지】

임시중령의 계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연령정년 등 「군인사법」 제8조 소정의 현역정년에 관해서 중령의 정년(53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임시중령의 계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령의 연령정년(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유】

가. 임시계급 부여의 의의

군인사법 상의 진급은 정상진급(제24조), 임기제진급(제24조의2), 명예진급(제24조의4), 특정직위의 계급부여(제28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제30조), 임시계급부여(제33조)로 구분됨.<sup>37)</sup>

위와 같은 기본 규정을 토대로 임시계급 부여의 의의를 진급과 관련된 관점에서 살펴보면, ① 연혁적으로 군인사법의 전신인 「정규군인신분령」 제9조에서 진급을 정규진급과 임시진급으로 구분하여 임시진급을 진급의 한 종류로 보았던 점, ②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계급의 순위에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③ 임시계급부여 절차는 정규진급발령 절차와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군인사법에서 진급 및 해당 계급자의 인사운영에 관한

37) 임천영, 군인사법, 법률문화원, 2012. 5. 465면

사항을 규정하면서 진급의 종류별로 그 특성 상 정상진급과 다르게 적용할 사항들은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는 점, ⑤ 진급방침 등 인사운영 측면에서도 임시진급을 다른 진급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시계급의 부여는 군인사법 상 진급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sup>38)39)</sup>

#### 나.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적용할 연령정년의 기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계급의 부여는 군인사법 상 진급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바, 군인사법 제8조, 제36조 등 군인 정년에 관한 규정 등에서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정년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기본적 권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적용시점을 규정하여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흠결사항임. 따라서 현재에는 해석 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령정년은 해당 임시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첫째, 임시계급의 부여 또한 군인사법 상 진급의 한 종류임은 위와 같고,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임시계급부여에만 별도로 적용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정상진급 및 이에 따른 계급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해야 할 것임. 특히 군인사법 상 연령 정년에 관해서는 계급별로 복무기간, 해당 임무수행 능력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임시계급을 부여받는 자도 상위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아 진급된 자이므로 해당 임시계급에 상응하는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연령 정년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38) 임천영, 군인사법, 법률문화원, 2012. 5. 557면

39) 국방부 법제33010-2071(2001. 3. 15.) 법령해석

둘째, 연혁적으로 1987년도 국방부 해석에서는 임시대령의 계급정년<sup>40)</sup>과 관련하여 임시계급의 본질을 원계급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그 후 2001년도 국방부 해석에서 임시계급 부여의 법적 성질이 진급이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상급 직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로 선발되었고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시계급 부여를 진급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견해를 변경하였음.<sup>41)</sup> 셋째, 임시계급의 보수(報酬)에 대해서도 2001년도 국방부 해석을 통하여 임시계급을 기준으로 대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넷째, 군인사법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에서는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으로 복귀한다.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의 원계급 복귀 사유인 “전역될 때”가 임시중령을 소령으로 원계급 복귀시킨 후 소령을 기준으로 연령정년으로 산정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연령정년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8조가 연령정년에서 임시계급자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임시계급을 기준으로 연령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원계급 복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위 원계급 복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하여 보면, 임시계급이 원계급으로 복귀되는 것은 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그 법률효과로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가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의 연령정년을 원계급의 연령정년으로

40) 중령과 대령의 계급정년(당시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령 8년, 대령 9년이었음)은 1989. 3. 22. 군인사법(법률 제4085호) 개정으로 삭제되어 그 후로는 적용되지 아니함

41) 국방부 법제33010-2071(2001. 3. 15.) 법령해석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역’의 사유는 원에 의한 전역·연령 정년에 따른 전역·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연령정년에 따른 전역을 다른 전역 사유들과 비교할 때에도 위 원계급 복귀 규정에서 임시중령이 소령 정년에 도달한 때를 연령정년으로 보아 전역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sup>42)</sup> 다섯째, 임시계급의 부여는 장기 간 지속되어 온 제도<sup>43)</sup>로서, 위와 같이 진급의 한 종류이며 군인사법 상 진급절차에 따라 취득한 계급인 이상 이에 대하여 발생한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신뢰이익의 보호 필요성<sup>44)</sup>이 있는 점, 여섯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위 규정의 위임 내용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1세~3세 연장하고 있는 등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군법무관 등 특수병과의 초임계급 임용연령은 35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령정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원계급 연령정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임관시점이 연장되었음에도 정년은 연장되지 아니하여 복무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게되는 점, 일곱째, 특수병과 우수 자원 확보의 필요성 등에 의할 때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의 연령 정년을 원계급으로 축소 인정하여 조기 전역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와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시계급을 부여 받은 자에 대한 연령 정년은 해당 임시계급(중령)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42) 그 상세 논거를 열거하면, ① 기본적으로 임시계급은 군인사법 상 ‘진급’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연령정년에 대해서도 해당 임시계급을 기준으로 연령정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② 그렇다면 전역 사유에 관련된 규정 역시 명시적인 배척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임시계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므로 임시중령의 연령 정년은 중령의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전역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유들도 ‘휴직’, ‘중징계’,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제적’으로서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원계급 복귀 원인으로 하고 있고, 연령정년에 의한 전역을 위 다른 각호의 열거된 사유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④ 군인사법 상 연령정년(제8조)과 원계급 복귀 규정(제34조)의 규정 순서 및 체제에 의할 때에도 연령정년이 먼저 규정되어 있어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4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규군인신분령에서 임시계급 부여를 진급으로 규정한 이후로 군인사법 제정 시부터 임시계급의 근거가 명시되었고, 특수병과(법무, 의무) 장교의 경우 1991년부터 임시계급 부여를 하여 왔음(임천영, 군인사법, 법률문화원, 2012. 5. 557면).

44)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3. 10. 57면(신뢰보호의 원칙은 독일에서 20세기 초 이래 학설 및 판례 상으로 정립·발전되어 왔고, 영미법 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해석됨)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1220 (2015. 4. 24.)

회신 : 법무담당관-4386 (2015. 5. 21.)

## 42.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앱)을 통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발송

### 【질의요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의 타당성 여부

### 【답 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는 현행법의 체계 상 개별 통지대상자들의 명시적인 의사를 동의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절차 마련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여야 함.

### 【이 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소집통지서가 형사처벌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위와 같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에 놓인 자의 소집불응 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서류가 되어야 하고, 본인의 동의를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의 체계상으로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하여 통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집통지 대상자들의 명시적인 의사를 동의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하여 통지하는 등 신중한 절차 마련을 전제로 하여야 함. 끝.

질의 : 자원동원과-657 (2015. 3. 3.)

회신 : 법무담당관-4473 (2015. 5. 26.)

## 43. 일반계약군무원 직위지정범위 확대 가능성

### 【질의요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반하여 일반계약군무원 직위지정 범위를 직급별 20%에서 직급별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훈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대통령령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법률 바로 다음으로 강한 효력을 가지는 법령이므로, 위 대통령령 보다 하위법규인 국방부 훈령으로 이에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제한됨.

### 【이 유】

대내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령의 서열순위는 헌법 - 법률 - 대통령령의 순서에 의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하위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며, 해당 법규는 무효의 법규가 되므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므로<sup>45)</sup> 국방부 훈령은 위 대통령령의 하위 법규에 해당함.

45)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대통령령 제25751호로서 2014. 11. 19.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임.

위 대통령령 제24조 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대통령령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는 내용인 ‘일반계약 군무원 직위지정범위를 직급별 20%에서 직급별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끝.

질의 : 인사기획과-6248 (2015. 5. 6.)

회신 : 법무담당관-4538 (2015. 5. 27.)

## 44. 군종장교의 소속 종단 변경과 장교 신분의 보유

### 【질의요지】

불교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 한다)은 병역법 시행령 상 선정된 종단인 반면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라 한다)은 선정된 종단이 아닌 바 해군군종장교(법사)가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임의 소속 종단 변경을 한 사례와 관련하여, 위 장교가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상 선정되지 아니한 종단인 태고종이 위와 같은 임의 소속 종단 변경 결과 군종법사 정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가. 군종법사가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임의 소속 종단 변경을 한 경우에 대하여, 군인사법,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법령 상 징계절차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교 신분의 당연 상실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해당 군종장교에 관하여 징계절차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의 결과에 따라 장교 신분이 상실될 수 있음(징계사유 해당 여부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등 판단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판단 권한 사항임).

나.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으로부터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게 된 경우까지 군종장교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에 의할 때 종전에 소속되어 있던 종단의 신뢰를 깨고 소속 군종장교로서의 종단 업무(포교활동 등 각종 종교활동과 행정업무 등을 포함함)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속 종단의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감소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sup>46)</sup> 등을 참조하여 군종 인사심의위원회(종단협력위원회, 군종윤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당 군종장교에 대한 군종특기박탈 관련 건의를 인사계통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위와 같은 군종특기 관련 건의에 대한 결론은 담당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판단할 사항임).

## 【이 유】

가. 「군인사법」 제40조에서는 열거된 제적 사유를 통하여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종장교가 종단을 임의 변경한 사실 자체만으로 위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단의 임의 변경으로 인해 장교 신분의 당연 상실을 인정하기 어려움.<sup>47)</sup>

다만 「군인사법」 제56조에서는 징계사유로서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군종장교는 그가 속한 종단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규정을 통해 현역복무

46) 제9조(군종장교의 상하관계 등)

① ~ ⑤ 생략

⑥ 군종장교와 종단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군종장교는 그가 속한 종단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군종장교는 군의 기본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종단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종단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47)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에서는 군종장교가 신앙상의 혼란을 막도록 신앙을 보호하는 일은 군종목사의 핵심적 직무사항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으나,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신앙상의 혼란을 초래한 군종장교의 신분을 당연 박탈하는 취지로 해석되거나 그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적합 전역의 근거를 두고 있고,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대해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사유로서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장(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제54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역 심사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제35조의2<sup>48)</sup>에서는 공익법무관이 변호사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전문자격을 기초로 복무하는 신분은 해당 전문자격을 상실한 때 신분 자체를 박탈하도록 한 일부 법률 규정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49)</sup>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종단의 건의 내용을 전문적 판단 및 보유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속 종단을 임의 변경한 것이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심의 회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징계사유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의 판단은 해당 심의위원회(관할 징계위원회, 관할 인사 관련 심의위원회)의 권한 사항임.

---

48) 징병검사전담의사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병역법 제34조의3).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공중보건 의사(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공익법무관(병역법 제35조의2 제1항, 제2항), 공중방역수의사(병역법 제3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도 두고 있다.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편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병과장교인 군의, 법무,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의 전제조건인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과 같은 신분박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현행 군인사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신분을 직접 박탈할 수 없으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사유가 될 수 있음.

49) 다만, 신분 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장교 신분 자체의 당연 제적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음.

나.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으로부터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게 된 경우까지 그대로 군종장교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에 비추어 종전에 소속되어  
있던 종단의 신뢰를 깨고 소속 군종장교로서 해당 종단 업무(포교활동 등  
각종 종교활동과 행정업무 등을 포함)를 수행할 인원을 감소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하게 함. 따라서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등을  
참조하여 군종인사심의위원회(종단협력위원회, 군종윤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당 군종장교에 대한 군종특기박탈 관련 건의<sup>50)</sup>를 인사계통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군종특기 관련 건의에 대한 결론은 담당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

질의 : 군종정책과-1047 (2015. 4. 17.)

회신 : 법무담당관-5311 (2015. 6. 22.)

---

50)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는 불교 중에서 조계종이 유일하게 군종장교를 보유하고 왔고, 이것이 사실  
상 관습법화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 점 역시 참작할 사항임.

## 45. 고위공무원도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 요건은 “상위직”일 것을 요하는바, 고위공무원의 경우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현행법상 고위공무원단과 1급 군무원간 상위직위 관계를 규율한 규정은 없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인한 징계처분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 실무상 군무원 대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장급’ 고위공무원은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 【이 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징계위원회에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공무원이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이 되려면 징계혐의자인 군무원보다 ① 상위직에 있을 것과 ② 일반직 공무원이어야 함.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특정한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공무원의 군”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과장급 이하 공무원과 구분하여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 시스템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처럼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위공무원단이 일반직공무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일반직공무원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이라 할지라도,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반면(「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의 정도에 따라 ‘가등급’ 또는 ‘나등급’으로만 나누고 있고 계급 및 급수의 개념이 없으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1급 군무원간 상위여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기준이 없으며, 고위공무원단 내에서도 실장·국장·과장 등으로 다양한 직위가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공무원이 1급 군무원보다 상위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한편,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징계 등 사건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 등 사건을 다루는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공무원 징계령」 제2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상위계급에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

그러나,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대상자는 6급 이하 공무원 등이어서 고위공무원단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언제나 상위직이 되므로, 상위계급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당연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에 준용할 수 없음.

또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17조는 “군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

이처럼 현행법상 1급 군무원과 고위공무원단간의 상위관계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 및 관련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번 질의 사안과 같이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곤란하여 징계위원회 회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징계혐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군무원이란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징계처분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한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3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관련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여성위원 1인도 다른 부대에서 위촉하는 실무상 사례가 다수인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질의 사안에서도 다른 부대 소속의 상위직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을 위촉하여 적법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한편, 국방부 조직도 및 의전예우 등에 따라 국방부는 기획조정실, 인사복지실, 국방정책실, 전력자원관리실,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등 5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상 종래 1급 일반공무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위 5실의 실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장급인 동원기획관이나 군수관리관 등은 현역 소장들이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 군무원의 대우기준표에서는, 1급 군무원은 소장(1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준장의 대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급 군무원은 현역 소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장급과 동급이거나 그 이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한 징계처분 공백 방지, 실무상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의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장급보다 상위인 ‘실장급’ 고위공무원이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끝.

질의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40 (2015. 5. 7.)

회신 : 법무담당관-4710 (2015. 6. 2.)

## 46. 일반계약군무원(1급) 직위 지정 가능성

### 【질의요지】

일반군무원 1급 직위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일반군무원 1급 직위를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제한됨.

### 【이 유】

군무원인사법 제45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4조 및 제136조 등에 의하여 계약군무원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1급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제1차 시험만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등 서류전형에 의한 시험방법이 전제되어 있음.

위와 같이 1급 일반군무원에 대해서 이를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일반군무원 1급 직위는 대부분 국방부 및 각 군 지휘부를 직접 보좌하는 중요 직위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군무원 1급 직위를 계약직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자격 요건, 채용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군무원인사법령에서는 이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군무원 1급 직위는 현행과 같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일반군무원의 형태로 임용하여야 하고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인사기획과-5679 (2015. 5. 24.)

회신 : 법무담당관-4832 (2015. 6. 8.)

## 47.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 가능성

### 【질의요지】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민간인에게 수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업무를 수탁하는 것이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답 변】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향토예비군설치 관련 법령에서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이 가능함.

### 【이 유】

법령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기본 법리임.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는 직장예비군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병역법」 제48조는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군의 경우 훈련을 받는 동안 등에는 현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위와 같이 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한 경우를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더구나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특별한 효력을 부여한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의 근거를 둔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업무 수행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예비전력과-1859 (2015. 5. 9.)

회신 : 법무담당관-4949 (2015. 6. 10.)

## 48. 입대취소 또는 무효인 자의 신분

### 【질의요지】

6·25전쟁 중 입대하여 입대명령이 발령되고, 군번이 부여되었으나 입대취소된 사람과 입대무효인 사람에 대하여 ① 군인 신분을 인정하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을 적용할 것인지, ② 군인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답 변】

참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병적 상 입대취소되거나 또는 입대무효로 등재된 사람은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의거하여 참전은 하였으나 군인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목에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이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는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655호)에서는 군인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참전한 사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참전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훈령 제1조에서는 “이 훈령은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 처리와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군복무를 위한 입대명령이 법령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무효의 일반적 효력에 의하여 위 입대명령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위와 같이 입대명령이 취소되거나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사실상 입대하여 참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전사실 확인에 따른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상 군인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사실상 입대하여 참전한 사람에 대하여 입대명령이 취소되거나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법률상 군인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을 적용함이 타당(다만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퇴역 또는 면역’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가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573 (2015. 2. 24.)

회신 : 법무담당관-4996 (2015. 6. 11.)

## 49.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

### 【질의요지】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에 관하여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의미와 관련하여, ‘단계’가 ‘계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휘계통’을 의미하는지 여부(만약 지휘계통을 의미한다면 공군사관학교 소속 인원의 경우 공군본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방부를 의미하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문언해석 상 ‘단계’는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sup>51)</sup>

### 【이 유】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설치 부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국방부 및 그 소속부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 각 군 부대 또는 해병대 소속 장교에 관한 경우에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 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라고 규정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규정한 보직해임 설치부대에 대해서는 종래 대법원에서 ‘2단계’의 의미에 관하여 ‘2계급’으로 해석하여 판시한 바

5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호 판결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된 바 있음.

있음(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위 대법원 판결 후 2014. 11. 19.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현행과 같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에 관하여 보다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개정 당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판시와 다른 의미로 개정하려는 특별한 입법취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다른 해석을 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문언해석 상 '2단계'는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986 (2015. 3. 4.)

회신 : 법무담당관-4997 (2015. 6. 11.)

## 50.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육아휴직과 의무복무기간

### 【질의요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넣어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는 것(육아휴직기간만큼 복무기간 만료시점이 연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유】

「군무원인사법」 제3장 복무 제19조에서는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sup>52)</sup>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서 근무하여야 하고 그 의무복무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5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국군조직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여 군무원이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에 소속됨을 명시하고 있음.

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위탁교육훈련과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법령인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배제한다고 해석되기 어려운 점, 군무원과 유사한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점, 군무원도 국군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을 일반 공무원보다 유리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무원에게도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적용됨이 타당하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질의 : 공군본부 법제과-1973 (2015. 5. 15.)

회신 : 법무담당관-4998 (2015. 6. 11.)

## 51. 부사관 군장학생의 장학금 반납

### 【질의요지】

부사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사관 임관 후 복무 중, 장교로 임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군인사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할 수 없으며, 「군인사법」 제7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가산을 하여 복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유】

「군인사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sup>53)</sup>을 복무

53)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수습)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④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사관으로 임관된 후 복무를 하던 중 장교로 임관되어 계속 복무 중인 경우, 비록 장교로 임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임관된 신분인 부사관 신분으로서는 제적된 것이므로 위 군인사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반납 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문제됨.

군 장학생 제도는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장교와 부사관 임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장학금 반납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인바, 이는 위와 같은 군 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군 복무가 중단된 경우로 해석됨.

그렇다면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가 복무 중 장교로 임관되어 계속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군 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장교의 신분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위 군인사법 제62조 제2항에서의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단지 신분 종류를 바꾸어 군 복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서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군 장학금 반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그 경우 군 장학생이었던 해당 장교는 군인사법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에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함이 타당함. 이는 장교로서의 기본 의무복무기간(3년)<sup>54)</sup>과 부사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복무기간(4년)<sup>55)</sup>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더욱이 최초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 임관이 된 때 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임.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1442 (2015. 5. 15.)

회신 : 법무담당관-5030 (2015. 6. 12.)

---

54)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

55)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7호

## 52. 신원조회 및 보안적부 심의 결과에 따른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의 적법성

### 【질의요지】

신원조회 및 보안적부 심의 결과에 따라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답 변】

신원조사 및 보안적부심의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훈령」 등의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군무원 채용 시험응시자의 능력이나 자질, 품성과 위 신원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유】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을 받은 「보안업무규정」<sup>56)</sup>에서는 제31조에서 신원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에서는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 훈령인 「군사보안업무훈령」에서는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을 받은 「보안업무규정」의 재위임을 받아 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 절차, 신원조사

56) 현행 규정은 2015. 3. 11. 시행 대통령령 제26140호임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훈령」이 헌법 제75조의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와 관련한 대전고등법원 판례<sup>57)</sup>의 태도임.

위 판례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다면 「군사보안업무훈령」 제73조 제3항 및 별표6에 의거한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에 의한 보안적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제한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함.<sup>58)</sup>

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훈령」 등의 법령과 규정에 의할 때 군무원 채용 시험응시자의 능력이나 자질, 품성과 신원조사 결과 및 보안적부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질의 : 인사기획과-7232 (2015. 5. 27.)

회신 : 법무담당관-5029 (2015. 6. 12.)

57)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누10071 판결. 위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전제로 ①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대상자로 규정된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기 전 단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② 원고에 대한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의 존재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16년 전의 기소유예(벌금형보다 낮은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의 한 종류임)에 불과한 전력 사안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0. 3. 5.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는 등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국가관이나 애국심 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58)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누10071 판결 이유 제9면 참조, 다만 위 판결의 해당 사안에서는 16년 전의 기소유예 전력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인사계통과 신원조사 및 보안적부심사 관련부서에서는 위 판결 사안과의 비교 검토, 사안의 경중 등을 추가로 참조하여 관련 심의 및 판단에 있어서 판례의 취지를 신중히 참고할 필요가 있음.

## 53. 해군 법무병과장의 임기만료 후 해군 내부 전직 가능성

### 【질의요지】

해군 법무병과장이던 해군 법무실장이 임기만료 후 해군 군사법원장으로 전직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해군 법무실장의 직위와 해군 군사법원장의 직위 간에 상하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 다만 같은 군내로의 전직은 군인사법상의 계급 및 서열 규정의 취지를 위배할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 군내로의 전직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앞으로의 인사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후임 병과장에 대한 업무 여건 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유】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해군 법무실장과 해군 군사법원장 간에 과연 직위의 상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될 수 있음.<sup>59)</sup>

이에 따라 해군 법무실장이 해군 직할부대장인 해군 군사법원장으로 전직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해군 법무실장과 해군 군사법원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인지, 둘째, 해군 법무병과장의 복무 상 서열은 어떠한지, 셋째, 「군인사법」 상 ‘직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위 직위와 하위 직위 간의 판단기준(‘현재 직위 보다 낮은 직위’의 의미)이 무엇인지 등이 쟁점임.

첫째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당해 병과장의 전공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분야’를 의미하는바, 해군 법무실장과 해군 군사법원장은 같은 군, 같은 병과(법무)에 속하는 직위이므로 유사한 계통의 직위임은 명백함.

둘째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병과장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군규정 제1920호 「해군 병과장 운영 규정」 제8조에서는 해군 각 병과장의 보직 직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군 법무병과의 병과장은 해군 법무실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군 법무실장은 ‘해군’의 ‘법무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됨.

---

59) ① 해군 법무실장이 해군 군사법원장으로 전직될 수 있다는 견해는 위 보직들이 모두 동일한 대령 계급으로 편제되어 있는 점, 해군 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법에 근거를 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제3항에서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군 군사법원이 해군 직할부대로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해군 군사법원장이 해군 법무실장보다 낮은 지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② 반면에 해군 법무실장이 해군 군사법원장으로 전직될 수 없다는 견해는 편제 상 계급은 직위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며, 현재 군의 직위 중 동일 계급인 직위 내에서도 상하의 개념이 명백한 직위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해군 군사법원장은 해군 법무실장 보다 낮은 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셋째로 「군인사법」 상 ‘직위’의 의미와 상하직위의 판단이 문제됨.

먼저 ‘직위’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론적·사전적 의미에서 「군인사법」 상 ‘직위’는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관직과 관위)을 말하며 직무는 직제 또는 법령에 정해진 직업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sup>60)</sup>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현재 직위 보다 낮은 직위’의 의미는 ① ‘직위’의 개념은 반드시 계급과 일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실제 운용상으로도 같은 지휘계선 내의 동일한 계급으로 편제된 직위이지만 인사 및 작전 실무상 하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직위가 존재하고 있는 점,<sup>61)</sup> ③ ‘직위’가 ‘계급’만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같이 명시적인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군인의 서열은 같은 계급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점<sup>62)</su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계급의 상하관계가 ‘현재 직위 보다 낮은 직위’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음.

헌법상에서는 병과장의 전직 제한 사항으로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60) 임천영, 군인사법, 법률문화원, 2012. 5. 379~380면

61) 예를 들면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육군 야전군사령관(대장), 작전사령관(대장)이 이에 해당함.

62) 군인사법 제4조 (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가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병과장)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④ 부사관 및 병(병)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직위'로 전직이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하위직위인지 상위직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해군 군사법원장이 해군 법무실장보다 하위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첫째로, 하위직이 아니라는 견해로는 ① 「해군본부 직제」<sup>63)</sup>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해군 법무실장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등에 관하여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sup>64)</sup>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직위는 별개의 독립한 법규를 근거로 가지고 있는 점, ②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군사법업무, 사법행정사무에 대해서 군판사를 대표하는 군사법원장에게 위와 같은 사법업무 수행 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등군사법원을 제외한 각 군 군사법원은 각 군 본부의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는 점, ③ 해군 법무실장이 서열 상 해군 법무병과에 있어서 인사상 최고의 서열자라 하더라도 해군 군사법원의 개별 구체적인 사건이나 군사재판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여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점에서 해군 군사법원은 해군 법무실과 별도의 조직으로서, 해군 법무실에 소속된 예하부대가 아니며, 해군본부의 직할부대에 해당하므로, 해군 법무실장과 해군 군사법원장 간에 직위의 상하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둘째로, 하위직이라는 견해로는 ① 병과장은 병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병과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자로서 병과발전을 위한 교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며 이를 위해 군인사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병과장은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라는

---

63) 대통령령 제25462호

64) 대통령령 제23203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 해군 법무실장이 해군 군사법원장보다 상위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② 해군 법무실장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에 관하여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해군 군사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군 법무실장은 해군 군사법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 및 정책, 지침하달을 통하여 군사법원장을 실질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sup>65)</sup> ③ 군사재판 업무 외의 부분에 있어서 해군 법무실장은 해군 법무병과에 대하여 최고의 인사권한자로서 실질적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해군 군사법원장을 포함하여 해군 군사법원 복무자 전원에 대해서도 보직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을 들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① 참모의 지위와 지휘관의 지위 중 어느 직위가 상위적인지 하위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 다만 업무 기능적으로 볼 때 지휘관은 업무를 집행하는 시행부대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참모 직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짐. 이러한 측면에서는 군사법 정책에 대한 기능적 권한은 군사법원장보다는 법무실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병과장제도의 취지는 해당 병과장으로 하여금 병과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책임자이며 또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의하여 최고의 서열을 부여한 것임. 이는 계급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하게 인정한 제도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지금까지 전직 사례를 보면 이러한 이유로 육군과 공군에서도 병과장을 마치고 군내에서의 전직을 허용한 사례가 법무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점,<sup>66)</sup> ④ 타군과의 형평성,<sup>67)</sup> ⑤ 법무장교 대령급 인사에

65) 이 점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2항 제2호)는 규정과 고등군사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무관리관은 법률, 사법정책, 지침 하달을 통해 고등군사법원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다만,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음.

66) 육군의 경우에는 병과장을 마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전직하였으나 개방형 고위공무원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전직하고 있으며, 공군의 경우에는 병과장을 마치고 검찰단장으로 전직한 사례가 있음. 또한 해군에서도 국방부로 전직한 사례가 있음.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끝.

질의 : 인사기획과-6979 (2015. 5. 21.)

회신 : 법무담당관-5414 (2015. 6. 24.)

---

67) 공군의 경우 대령 편제 인원이 4명인 경우 보직 2년을 기준으로 대령으로 8년간 복무하게 하고 마지막 병과장 보직을 마치고 전역하고 있음.

## 54.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종료(근속기간, 정년) 관련

### 【질의요지】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종료 시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 및 근속기간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장 내 고용계약 기간 및 정년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에 관한 군(軍) 내부에서의 판단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에 따라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거한 근무상한연령 및 근속기간에 따라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 종료 시점을 판단하되, 직장 내에서의 향후 인사 조치는 해당 직장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함.

### 【이 유】

국방부 훈령 제1808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제3항에서는 ‘직장예비군지휘관 중 대대장 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훈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훈령 제46조<sup>68)</sup> 제1항에서는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 연령과 근속기간을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은 근무상한연령과 근속기간을 동시에 적용하여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퇴직한다’라고 규정함.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직장예비군대대장은 군(軍) 내부의 관점에서는 직장예비군대대의 지휘관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나, 해당 직장의 관점에서는 직장의 구성원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이중적 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sup>69)</sup>되고, 위 신분은 병존적인 관계로서 군(軍)에서 근무상한연령 및 근속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국방부의 행정규칙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이 적용되나, 직장에서 정년 등을 판단할 때에는 직장 내 고용계약 및 정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신분의 관계는 병존적으로서 각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인사 조치에 대한 기본 법리임.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655 판결에서도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을 지휘, 통솔하고 예비군 자원 및 장비를 관리하며 유사시 국가방위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지나친 고령으로 인한 임무수행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대하여 국방부 행정규칙으로 근무기간, 근무연령 상한을 규정한 점’ 그리고 ‘직장예비군대대장에 대하여 특별히 단기간의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하였다고

6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근무기간)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 '22년 이후는 60세로 한다.

2.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18년까지는 58세(근속 5년), '19년부터 '21년까지는 59세(근속 6년), '22년 이후는 60세(근속7년)로 한다.

3. 직장예비군연대장 이상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근속 5년)로 한다.

② 대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은 근무상한연령과 근속기간을 동시에 적용하여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퇴직한다.

③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기간 계산시 임명일자과 임명 후 해당 직장 보직일자가 다른 경우 근속기간 계산은 보직일자부터 기산한다.

69)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1993. 1. 12.자 법령해석검토(국방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및 직장 고용계약과 직장예비군 지휘관 정년) 참조

하여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을 각 정당한 판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군(軍) 내부에서 직장예비군 대대장의 복무 만료시점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의거하여 근무상한연령 및 근속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군 내부에서의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신분과 직장 내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병존적이고  
상호간 간섭할 수 없는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방부에서는 해당 직장 내에서의  
인사 조치에 관여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끝.

질의 : 예비전력과-2782 (2015. 7. 9.)

회신 : 법무담당관-6414 (2015. 7. 28.)

## 55.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 직무대리 가능성

### 【질의요지】

군인 또는 군무원 보직자의 직무 상 공백 발생 시 「직무대리규정」<sup>70)</sup> 제5조에 따른 직무대리가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에도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의 「직무대리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해당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이 유】

「직무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71)</sup>

70) 대통령령 제25751호

71) 직무대리규정 제5조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위와 같은 직무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바로 아래 공무원’에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즉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에 직무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위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직무대리는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조항의 취지 상 직무대리는 직무상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임시적인 인사조치에 불과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을 특정 직위에 보직하는 것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함.

또한 위 규정 제5조 제1항의 직무대리자는 ‘바로 아래 공무원’에 반드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우의 특성 상 직무대리자를 조정하여 부적합한 직무대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위 규정 제5조 제1항의 직무대리는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에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다만 해당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2309 (2015. 7. 31.)

회신 : 법무담당관-6867 (2015. 8. 7.)

## 56. 비예산 국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 【질의요지】

군인이 학교발전기금, 종단지원 등 민간재단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국외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체제비, 항공료 등 일체 경비 군에서 미지급),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답 변】

군에서 일체 경비를 지급받지 않은 국외 교육을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군 선발 형식의 국외 위탁교육이었던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가산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sup>72)</sup>

### 【이 유】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2항에서는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구분기준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73)</sup>

72) 질의부서인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에서는 본건이 군 선발 형식의 교육·연수에 관한 것이고 휴직처리 대상인 자기비용의 해외유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본 법령해석에서는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2호의 휴직처리 대상인 자기 비용의 해외유학 사안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73)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연한)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위와 같은 의무복무기간의 가산 대상이 되는 국외 위탁교육에, 군에서 비용을 지원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군에서 일체의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는 ① 해당 교육의 비용이 군에 의하여 지출된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 점, ② 법에서 가산기간을 부여한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교육을 받은 장소(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간·시점(주간인지 야간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비용의 지원처는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질의 사안은 휴직과 무관한 국외 위탁교육인 점, ④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의할 때 군인으로서 봉급을 그대로 받으면서<sup>74)</sup> 복무지를 떠나고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받지 않아 복무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중요한 혜택이 되므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아니한 타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렇다면 군인으로서 군에서 선발된 국외 위탁교육에 관하여 군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함이 타당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2266 (2015. 7. 29.)

회신 : 법무담당관-6857 (2015. 8. 7.)

---

74) 이러한 점에서 휴직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국외 위탁교육은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휴직처리 대상인 '자기비용 해외유학'(같은 조 제4항에 의거하여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함)과 구별됨

## 57. 별정군무원의 상위 상당계급 재임용 가능성

### 【질의요지】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상 근거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상위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상 근거 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의 상위 상당계급 재임용은 제한됨.

### 【이 유】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서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위와 같은 별정군무원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으로 복무·징계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 관련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별정군무원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음.

또한 별정군무원은 기본적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군무원인사법」 제44조 제2항), 위와

같이 별정군무원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sup>75)</sup>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는 종래 제3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운용한 바 있었으나, 2013. 12. 11.자 개정을 통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는 위 사항에 대한 재임용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별정군무원에 대한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은 그 법령 상 근거가 없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적으로, 위와 같은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 근거 조항 폐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무원인사관리 훈령」<sup>76)</sup>에서 재임용의 근거를 유지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과 달리 별정군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상당계급으로의 재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방부 훈령인 「군무원인사관리 훈령」보다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반하는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끝.

질의 : 인사기획과-11100 (2015. 8. 7.)

회신 : 법무담당관-7668 (2015. 8. 25.)

---

75) 대통령령 제25751호

76) 국방부 훈령 제1789호

## 58. 가사휴직을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가족의 질병을 간호할 목적으로 가사휴직을 연속하여 신청할 경우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8호의 제한규정에 의거하여 재직기간 중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유별로 가사휴직을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조부모 등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른 바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5호에서도 부모 등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8호에서는 가사휴직의 기간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군인사법」 제4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군인의 가사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사유별로 연속하여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가사휴직 기간의 한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살피건대, 군인의 가사휴직 기간에 대해서 1년 이내로 규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제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별로 연속하여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육아휴직과 유사하게 가족을 부양하는 의미를 가진 가사휴직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의 보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특히 별도의 사유별로 가사휴직을 명하거나 별도의 사유에 대하여 연속하여 가사휴직을 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더구나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가사휴직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의 지출 대상이 되지 않아 휴직자의 입장에서조차 봉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사유에 대하여 연속하여 가사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면, 1년 단위의 가사휴직을 무한정 허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① 국가공무원의 일반 규정 보다 더 높은 정도의 혜택이 부여된 가사휴직이 군인에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며, 이는 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군인에게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군인사법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 점,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반대해석 상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 상 공통의 휴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인의 가사휴직에 대해서도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끝.

질의 : 육군본부 법제과-2907 (2015. 10. 6.)

회신 : 법무담당관-10462 (2015. 10. 27.)

## 59. 육아휴직한 간호장교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활용가능성

### 【질의요지】

「군인사법」 제48조 제7항의 “군인이 제3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간호장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육아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운용할 수 없음.

### 【이 유】

「군인사법」 제48조 제7항은 “군인이 제3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4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원보충을 반드시 ‘군인’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① 「군인사법」 제48조 제7항은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결원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인의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군별·계급별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 ③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본문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업무대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군인’으로 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④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군인에 대한 업무대행자로 원칙적으로 소속 ‘군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상 군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운용할 수는 없고, 휴직한 군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을 결원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끝.

질의 : 인사기획과-14690 (2015. 10. 16.)

회신 : 법무담당관-10508 (2015. 10. 29.)



# 제 3 장 병역



## 60. 예비역 간부 진급에 있어 퇴역 연령 기준일

### 【질의요지】

병역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예비역 간부 진급 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급명령(9월 예정) 이전에 진급 전 계급의 연령정년이 도래한 자를 예비역으로 보아 진급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예비역 간부의 경우 진급 전 계급의 연령정년이 도래한 해의 말일까지 예비역으로 볼 수 있어 진급이 가능함.

### 【이 유】

병역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역”의 신분을 가져야 진급이 가능하고, 군인사법 제42조는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여 현역 장교로 전역한 자는 퇴역되지 않는 한 예비역의 신분을 가진다고 할 것임.

또한, 병역법 제72조 제1항은 “예비역의 장교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의 경우 퇴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교의 연령정년을 소령의 경우 ‘45세’, 중령의 경우 ‘53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역 장교의 병역의무 중기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라 함은 소령의 경우 45세가 되는 해까지라는 의미인바, 결국 연령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12. 31.까지 병역의무가 있다 할 것임.

그러므로 예비역의 경우 연령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12. 31.까지 예비역의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가지나, 그 다음 해의 1. 1.부로 퇴역되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할 것인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급 전 계급의 연령정년이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의 말일까지는 병역의무가 있는 예비역으로 보아 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끝.

질의 : 자원동원과-1072 (2014. 4. 8.)

회신 : 법무담당관-3904 (2014. 5. 7.)

## 61. 퇴역여군의 역종변경 가능성

### 【질의요지】

퇴역한 여군을 예비역 재임용을 위하여 예비역 여군으로 역종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퇴역한 여군은 퇴역 당시 예비역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그 후 개인의 의사에 의해 예비역으로 역종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이 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41조 본문은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은 퇴역된다.”라고 규정한바, 여성은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현역을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역, 즉 병역의무가 종료됨.

그러나 군인사법 제41조 단서는 “다만, 현역을 마친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마친 경우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역이 아닌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역의무는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역종을 변경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존부와 연결되고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시점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면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근거한 예비병력 편성 및 운용에 있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바, 역종 변경의 시점은 엄격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특히 병역법 제5조 제1항 및 군인사법 제41조 단서에서 여성(여군)이 지원에 의해서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취지는 현역으로 복무한 여군이 퇴역하는 그 당시에 지원에 의해 퇴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여군이 현역을 마치고 퇴역한 후 어느 시점이라도 지원을 통해서 예비역으로 역종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

한편 예비역 중에서 재임용하는 제도의 취지 또한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여 예비역으로서 일정기간 훈련 및 교육 등을 수행·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할 것임.

그러므로 현역을 마친 여군이 퇴역할 당시에 예비역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상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역을 지원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퇴역으로 병역의무가 종료된 여군이 지원에 의해 다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예비역으로 역종변경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8540 (2014. 7. 1.)

회신 : 법무담당관-6338 (2014. 7. 22.)

# 제 4 장 복 지

[보수 · 연금 · 보훈 · 국립묘지안장]



## 62.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 【질의요지】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당사자인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이 유】

재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면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속력에 따라 ① 반복금지효, ② 취소·변경의무, ③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고인은 「군인연금법」 제31조에 정한 군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판례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제37조<sup>77)</sup>가 정하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 하는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행정청인 국가보훈처는 유족에 대하여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질의 : 군인연금과-2201 (2014. 5. 19.)

회신 : 법무담당관-4989 (2014. 6. 20.)

---

77) 현행 행정심판법 제49조

## 63. 예비군훈련 중 부상 후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받은 경우 휴업보상금 지급 가부

### 【질의요지】

예비군훈련 중 부상을 당한 예비군이 군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휴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휴업보상금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 제1항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제9조 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2항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인근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 중 부상당한 예비군이 위 법 제9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아닌 민간의료시설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그러나 치료비 지급의무와는 별개로 휴업보상금은 훈련에 참석했던 예비군이 부상으로 인해 치료받은 기간 동안 실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예비군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질의 : 예비전력과-2168 (2014. 6. 25.)

회신 : 법무담당관-5900 (2014. 7. 11.)

## 64. 국가패소에 따른 재처분시 소멸시효 주장 가부

### 【질의요지】

퇴직('98. 7. 31. 의병전역) 후 폐질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상이연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불가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취소하는 국가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으로서 전역당시 이미 폐질상태였다는 것을 전제로 시효 소멸을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처분당시 존재한 다른 사유인 소멸시효를 이유로 동일한 상이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음.

### 【이 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 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 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기속력에 의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2. 3. 21. 원고가 퇴직 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1. 5. 19. 이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불가결정을 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8. 7. 전역 당시 이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고정되어 신체에 영구적인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이연금 불가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그렇다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원고가 전역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는 이유 및 그에 따른 취소 판결주문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처분시에 존재한 다른 사유 즉, 원고가 상이연금을 청구할 당시 상이연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바, 피고 국방부장관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끝.

질의 : 군인연금과-6676 (2014. 6. 11.)

회신 : 법무담당관-6141 (2014. 7. 17.)

## 65. 재심의로 공상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장애 보상금 지급

### 【질의요지】

전역당시(1998. 7.) 신체장애등급 2급(심신장애등급 4급)으로 의병전역 하였으나 비공상 판정으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가 2014. 1. 육군 전공상 재심의를 통해 공상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장애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신체장애등급을 받고 전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바,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이 유】

구 군인연금법(법률 제5482호) 제10조 제1항은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07호) 제67조는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동조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급여의 사유’라 함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③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 그는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을 갖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군인연금법 제8조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④ 군인연금법 제8조를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자의 청구 여부에 따라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한없이 연장될 수 있어 법률관계의 불확정한 상태를 정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수급권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구체적인 수급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sup>78)</sup>

그렇다면 1998. 7. 전역당시 신체장애등급 2급(심신장애등급 4급)을 받고 의병 전역한 경우, 1998. 7. 전역당시에 이미 장애보상금 지급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장애보상금 청구권은 신체장애등급을 받고 전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 2014. 1. 육군 재심의를 통해 ‘공상’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장애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78) 서울행정법원 2007. 1. 18. 선고 2006구합33286 판결 참조

한편,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청구인이 장애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신체장애등급을 받고 전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육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비공상 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이 장애보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 결론에 있어 다르지 않다 할 것임.  
끝.

질의 : 군인연금과-3019 (2014. 7. 10.)

회신 : 법무담당관-7066 (2014. 8. 8.)

## 66.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 【질의요지】

전사자(셋째, 男)의 사망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첫째(男)는 실종선고심판확정에 따라 실종선고된 자, 둘째(男)는 북한에 생존 중인 주민, 넷째(女)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다섯째(女)인 청구인이 군인사망급여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는 경우 둘째(男) 또는 넷째(女)가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바, 후순위자인 청구인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유】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1. 2. 28. 대통령령 제455호로 제정된 것) 제1조에 의하면 “육해군의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향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의 경우 형제자매 외 유족이 없고, 동 규정 제1조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향에 계기한 순위에 의하며 동순위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고 규정한바, 이에 의하는 경우 장남 → 차남 → 장녀 → 차녀 순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장남은 이미 2013. 11. 7. 실종선고심판 확정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28조 참조) 제외되고, 차남은 북한주민으로서 지급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행사할 수 없으며, 장녀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정은 군인사망보상금지급청구에 있어 제한요소가 아닌바, 차남 또는 장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끝.

질의 : 군인연금과-2101 (2014. 5. 16.)

회신 : 법무담당관-7959 (2014. 8. 22.)

## 67. 한국전쟁 중 미군 측에 귀순하였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자의 참전유공자 예우법령 적용 여부

### 【질의요지】

한국전쟁 중 미군 측으로 귀순하였다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후 반공포로로 석방된 자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라목의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공포로’라는 사실만으로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포로’의 지위를 넘어 6·25전쟁에 어떤 행위로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를 ‘참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각종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된 자를 ‘참전유공자’로 정의하면서, 가목내지 다목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참전유공자’로 정의하고, 라목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한국전쟁 당시 군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및 자료 등을 기초로 판단할 때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는 자는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임.

그런데 민원인은 1953. 6. 18. 광주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의 신분으로 석방되어 한국전쟁 당시 ‘포로’의 지위에 있었던 자인 바, 포로의 경우 국제법상 적국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로’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포로’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민원인의 행위가 ‘포로’의 지위를 넘어 한국군 또는 미국군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그들의 통제 하에서 아군에 유리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한국전쟁에 일정부분 기여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객관적 자료 등 직·간접적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러한 행위가 동법 제2조 제2항 가목 내지 다목에 기재된 자들과 같이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예비역정책발전TF-2485 (2014. 7. 14.)

회신 : 법무담당관-12648 (2014. 12. 31.)

## 68. 복지기금을 통한 해군마트의 포인트 제도 운영의 타당성

### 【질의요지】

육·공군과는 달리 해군마트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생기는 상품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해군마트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 【답 변】

해군장병의 복지형평성을 위한 포인트 적립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군인복지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나,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민간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기금의 운용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이 유】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매점”은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sup>79)</sup>로서, 육·공군과는 달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하여 군매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해군장병들에게 상품가격차이의 평균치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 간접적인

79)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에 관하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제4호)을 규정하고,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5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 관하여 “군매점”(제4호)을 규정하고 있음.

가격인하 효과를 통하여 육·공군장병과의 복지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 제도 도입의 취지라 할 것인바, 이는 동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포인트 제도는 해군마트에서 해군장병들이 상품을 구입함에 따라 해군장병들에게 개별적으로 적립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민간운용 업체에 복지기금으로 이를 지급하고자하는 것이고, 동법 제4조 제2항은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부터 7호까지 열거하고 있어,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복지계정을 운용할 수 없는바, 복지기금을 포인트 제도 운용에 사용하는 것이 각 호의 용도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살피건대, 동법 제4조 제2항 “복지시설 등의 신설 및 증설”(2호),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4호),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5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제7호에 규정된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복지계정’ 그 자체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마트에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른 사용은 ‘복지계정’ 그 자체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한편, 제1호는 “복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포인트 제도 운용에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군마트의 운영방식에 의해 생기는 복지혜택의 차이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광의로 보면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규정의 의미는 ‘복지시설 자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지 및 관리’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포인트 제도 운용은 “복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또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1호에서 7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나, 포인트 제도 운용에 사용하는 것이 “체육·문화행사, 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1호), “부대 및 모범군인 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2호),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 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3호),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4호),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6호),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군매점은 복지시설로서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바, “운영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제5호에 규정된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진다 할 것임.

그런데, “운영”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로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을 뜻하고, “지원”은 ‘지지하여 도움’을 뜻하는 말로, 포인트 제도 운용은 해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른 마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입게 되는 마트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므로,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2014년도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2014. 1. 1.)에 의하는 경우 “부대시설운영지원”은 시설의 비품, 소모품 및 비품의 운영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는 등 “운영지원”의 의미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포인트 제도 운용은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상품가격의 불균형에 따른 해군마트 이용자의 상대적 금전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고안된 포인트 적립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군인복지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나,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민간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기금의 운용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끝.

질의 : 복지정책과-9072 (2014. 12. 5.)

회신 : 법무담당관-195 (2015. 1. 7.)

## 69.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 【질의요지】

비군인신분(8240부대 유격대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52. 9. 27. 전사한 자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유】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455호, 1950. 11. 20. 시행) 제1조는 “육해군의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831호, 1953. 11. 10.)에서 “본 영은 군에 복무한 징용자 및 노무자에 준용하되 그 급여는 사병대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망급여금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육해군의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나 예외적으로 부칙에 의해서 ‘군에 복무한 징용자 및 노무자’도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음.

그런데 8240부대는 1940년대 말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남하한 북한출신 청년들이 조직한 유격대를 미극동군사령부에서 접수하여 작전통제한 부대로,

계릴라전과 첩보전을 수행하는 등 6·25전쟁 중 다양한 특수전 및 유격전을 전개하였으나 군번이 부여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8240부대에 속한 유격대원을 군인으로 볼 수는 없는바, 8240부대 유격대원으로 참전한 대상자는 ‘육해군의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또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 긴급명령 제6호, 1950. 7. 26. 시행)에 의하면 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 군작전상 필요한 인적자원(피징용자)을 영장 집행을 통해 징용<sup>80)</sup>한 것인바(제1조 및 4조 참조),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부칙에 규정된 ‘군에 복무한 징용자 및 노무자’는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근거한 징용절차에 의해 군에 복무한 징용자 및 노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8240부대 유격대원으로 참전한 대상자는 ‘군에 복무한 징용자 및 노무자’가 아닌바,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상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질의 : 군인연금과-3694 (2014. 9. 1.)

회신 : 법무담당관-350 (2015. 1. 13.)

---

80) 징용(徵用)의 사전적 의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보통의 수단으로써는 군 작전상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보상을 지급하고 개인에게 권력적으로 필요한 의무 부담을 과하는 행정행위’를 뜻함.

## 70.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 【질의요지】

국방부장관이 직권으로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국방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신체검사 비용을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이 유】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인연금급여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8조는 상이연금등급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상이연금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3조는 “직권”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에 대하여, 제4조는 “신청”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3항은 “제1항의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반해 직권에 따른 폐질상태의 확인을 규정한 제3조에는 신체검사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입법의 불비로서 국방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 비용을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임.

그런데, ① ‘신청’에 따른 폐질상태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점, ② 군인의 상이연금과 유사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장해연금수급자의 장애등급 조정시 장애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와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③ 신청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직권에 의해 폐질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국가의 이익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④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CD복사나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비용인데, CD복사나 의무기록 발급은 군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은 실무상 환급해 준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에 의한 폐질상태 확인에 따른 신체검사 비용을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한편, 향후 입법적으로 비용부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끝.

질의 : 군인연금과-630 (2015. 2. 11.)

회신 : 법무담당관-1680 (2015. 2. 17.)

## 71. 전문자격(면허)을 보유한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 가능여부

### 【질의요지】

전문자격(면허)을 가진 의무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면허 보유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 【답 변】

전문자격(면허)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반하여 위법함.

### 【이 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과 군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사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므로 의무병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군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하여 위법함. 끝.

질의 :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5667 (2015. 2. 10.)

회신 : 법무담당관-2002 (2015. 3. 4.)

## 72. 예비군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의 각 지급기관

### 【질의요지】

예비군이 예비군동원 및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장애·사망보상금의 지급기관이 어디인지 여부

### 【답 변】

사망보상금의 지급은 국방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장)가,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국군재정관리단장)이 그 지급기관이라 할 것임.

### 【이 유】

「군인연금법」 제6조 제11호는 ‘사망보상금’을, 제12호는 ‘장애보상금’을 각각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11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은 ‘사망보상금’(제1호) 및 ‘장애보상금’(제2호)에 관한 각 결정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였고, 동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은 ‘장애보상금’ (제3호)의 지급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동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였음.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 제1항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바, 예비군의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에 규정된 사망보상금 규정 및 제32조에 규정된 장애보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

특히, 장애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보상금의 지급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 군병원의 장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보상금의 지급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반해 사망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무에 관한 제11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 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병역법」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병역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병(兵)(제2호)에 대한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의 지급권한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되어 장애보상금의 지급기관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사무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되어 사망보상금의 지급기관은 국가보훈처로 보아야 하는바, 「병역법」 상의 병역동원훈련소집 입영자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동원훈련자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관을 달리 취급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 ③ 사망보상금의 지급기관을 통일적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예비군에 대한 사망보상금의 지급기관은 국가보훈처로 보아야 할 것임. 끝.

질의 : 예비전력과-4052 (2014. 11. 17.)

회신 : 법무담당관-2638 (2015. 3. 25.)

## 73. 군인 연금 급여종류 변경 신청

### 【질의요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연금인 급여의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종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금 종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수령한 급여는 반납해야 하는바, 이 경우 위 반납금 미납시 변경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연금종류변경 신청자가 기수령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토대로 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수령한 급여의 반납을 요청하고, 그러함에도 기수령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반려 또는 기각함이 타당함.

### 【이 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은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에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금종류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내외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이는 업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관련 조치를 청구하는 처분대상자에 대한 의무 부여가 가능하므로 위 처분대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해석 상 연금종류변경 신청을 위한 적법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기수령 급여를 반환하지 아니한 연금종류변경 신청은 위법한 신청으로서 반려 또는 기각되어야 함.

따라서 연금종류변경 신청자가 기수령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토대로 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수령한 급여의 반납을 요청하고, 그러함에도 기수령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반려 또는 기각함이 타당함. 끝.

질의 : 군인연금과-1178 (2015. 3. 20.)

회신 : 법무담당관-2943 (2015. 4. 2.)

## 7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판단기준

### 【질의요지】

원소속 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과 서울행정법원 결정, 실무상 심의기구 운영방법 등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 해당 여부 결정은 국방부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원소속 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공상 결정만으로 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이 유】

「군인연금법」 제10조는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에 따른 상이연금,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결정할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급여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5항 제2호는 “2.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는 법 제23조(상이연금) 또는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 여부, 3.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개정

및 소멸”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이연금 등은 급여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사유의 발생여부,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각 군 참모총장이 조사, 확인하는 것이고,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각 군 참모총장의 조사, 확인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심사 권한에 의하여 당해 군인의 공무상 질병, 부상에의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며, 국방부장관은 위 심의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전·공상, 비전공상 등의 판정은 군인사법 제37조, 제48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47조, 제53조에 의하여 심신장애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그 심신장애의 사유에 따라 이를 구분함으로써 전역, 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권의 발생에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서울행정법원 2009. 4. 14. 선고 2009구합58 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전공상심사위원회의 공상 결정에 따라 연금지급절차만을 정할 수 있을 뿐 공상 결정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전공상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 결정을 받았을 뿐 군인연금급여심의회로부터 연금 지급에 관한 공상 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군인연금법에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인연금법만 확인하면 ‘전공상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연금을 당연히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점...(후략)”이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 12208 판결).

실무상 심의기구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원소속 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 없이 독자적으로 전공상 여부를 심의하는 한편, 원소속 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상 인정을 받은 경우

에도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상 승인을 부결한 건수가 상당함('14년 공무상요양비 지급현황 : 총 신청건수 112건 중 66건 부결). 또한, 전공상 심사위원회는 상이구분(전·공상, 비전공상)을 심의하면서 인사처리 자료(전역, 제적 등) 및 향후 상이연금 심의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위원회의 주된 목적·기능인 반면,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는 공무상 질병·부상 해당 여부, 상이연금 및 공무상요양비 대상자 결정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며 연금 지급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심의기구의 목적과 기능, 근거규정, 판단기준, 심의결정의 효과가 상이함.

따라서, 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규정과 서울행정법원 결정 취지, 실무상 심의기구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건대, '공무상 질병 및 부상에의 해당 여부'의 최종 결정은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원소속 부대 및 각 군 본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급여가 당연히 지급된다고 할 수 없음. 끝.

질의 : 보건정책과-1971 (2015. 4. 6.)

회신 : 법무담당관-3558 (2015. 4. 21.)

## 75.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요지】

지방 병무청에 있는 징병검사장에서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유전자 시료 채취의 특성을 고려 징병 검사 대상자의 명시적인 서명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불특정다수인인 징병 검사 대상자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비용 소요 문제와 함께 병무청 업무에 대한 영향, 그리고 병무청은 징병 검사를 업무로서 하는 곳이어서 전사자 신원 확인은 주된 업무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징병 검사와 전사자 신원 확인은 업무의 성격과 목적 상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병무청의 동의까지를 전제로 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6·25 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내용은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위와 같은 법률의 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유전자 시료 채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 의사 유무가 불확실한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병검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징병검사 대상자의 평균 숫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병무청에서 소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문제와 과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전자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이를 강제로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를 전제로 하는 유전자 시료 채취의 경우에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유전자 시료 채취 관련 특별법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등을 채취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제9조에서는 “경찰청장은 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 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서식에 따른 명시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관련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그러므로 병무청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강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징병검사 대상자의 숫자와 불특정 다수성, 병무청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에 따른 이의 제기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과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병무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징병검사 대상자로부터 명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을 유전자 시료 채취 절차의 전제로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끝.

질의 : 예비역정책발전TF-1146 (2015. 3. 31.)

회신 : 법무담당관-3629 (2015. 4. 23.)

## 7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유급의 현장연수” 관련

### 【질의요지】

- 가. 연수수당 수령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상 겸직금지 및 이중취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현장연수 참가 중 재해 발생 시 군병원 이용가부
- 다. 기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라. 연수약정 체결 시 고려사항

### 【답 변】

- 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및 「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연수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 상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나. 현역 신분으로 파견된 것으로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 다. 기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음.
- 라. 현장연수시간, 구체적 업무내용 등 연수조건, 급여조건, 연수약정 해지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이 유】

- 가. 연수수당 수령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상 겸직금지 또는 이중취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사법」 제46조의2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7조는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제5항은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지원에 의해 중소기업 사업장내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연수수당 등의 급여를 받고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음.

한편,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는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우려가 없는 영리업무로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따라서, 겸직이 허락되는 사업체에서 현장연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수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상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나. 현장연수 중 산업재해 발생 시 군병원 이용가부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호는 전직지원교육은 해당교육 종료 시까지 현역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인사명령(파견)에 따라 현역 신분을 유지하면서 현장연수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다. 기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데, 제1호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사법」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은 군인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받는 것으로, 「군인연금법」의 재해보상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검토의견).

라. 연수약정 체결 시 고려사항

현장연수시간, 구체적 업무내용 등 연수조건, 급여조건, 연수약정 해지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장년 취업 인턴제 등의 연수약정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을 권함. 끝.

질의 : 전직지원정책과-2100 (2015. 6. 30.)

회신 : 법무담당관-5689 (2015. 7. 3.)

## 77.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 포함 여부

### 【질의요지】

국군수도병원 전문계약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의사를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할 경우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외부 전문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계약군무원의 임용권자가 국방부장관인 점, 전문계약군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취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제3항의 체계를 고려할 때, 제2항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유】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군무원인사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의사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계약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계약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함(「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

다만, 직제에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기능군무원 및 6급 상당 이하 별정군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일반계약군무원과 전문계약군무원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임용할 수 있음(「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4조).

한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원은 의료 및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항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부대 소속 공무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 군무원도 포함하는 광의의 공무원으로 해석할 것인지, 의료업무 및 법무 등에 종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국방부 소속 여부를 불문한 군인을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다의적인 해석함. 따라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명문으로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요구됨.

한편, 현행 규정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전문계약 군무원을 군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 전문계약군무원의 임용권자가 국방부장관인 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도 의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군무원을 위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양하고 균형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위원을 증원하고자 하고자 2006. 10. 23.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의무직공무원 및 국방부소속 공무원 중에서”라는 종래 규정에서 “의료업무 및 법무 등에 종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로 개정한 개정취지와 원칙적으로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제2항), 필요시에 외부 전문가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항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군 외부 전문가와 상반되는 개념인 군 내부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해석상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끝.

질의 : 군인연금과-2848 (2015. 7. 9.)

회신 : 법무담당관-7576 (2015. 8. 24.)

## 78.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과의 약정 관련

### 【질의요지】

가.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계약서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로 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현재 관리운영대행기관인 군인공제회와의 약정기간 연장 가부

### 【답 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관리운영대행계약서의 형식을 취하여야 함

나.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나, 개정 전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제26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15. 12. 31.까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부칙 제7조 경과조치규정에 근거한 군인공제회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리운영대행계약 기간 연장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이 유】

가.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계약서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계약체결방법 (경쟁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과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sup>81)</sup>”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계약서 서식을 정하고 있음.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위탁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방부가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sup>82)</sup>

---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82)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질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라목 (생략)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마목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

같은 항 마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법제처는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음(법제처 07-044, 2007. 3. 23.).

군인공제회가 법제처에서 말하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기관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 
-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카목 (생략)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사목 (생략)
  -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라목 (생략)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라목 (생략)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목 (생략)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관리대행약정서에 따라 관리대행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인 바, 현행 규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사료됨.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부칙 제7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 다목<sup>83)</sup>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한편,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하여 관리대행업무를 하고 있었던 바, 이는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83)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22282호, 2010. 7. 21.)」 부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5. 1. 1.부터 '15. 12. 31.까지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에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현재 관리운영대행기관인 군인공제회와의 약정기간 연장 가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부칙 제7조의 “'15. 1. 1.부터 '15. 12. 31.까지”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15. 12. 31.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부칙에서는 수의계약만료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같이 계약만료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부칙 제7조 경과조치규정에 근거한 군인공제회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리운영대행계약 기간 연장(계약만료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끝.

질의 : 복지정책과-6041 (2015. 8. 4.)

회신 : 법무담당관-7575 (2015. 8. 24.)



# 제 5 장 군수 및 방위산업



## 79. 군용표지가 없는 반합판매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 【질의요지】

반합 자체에는 군용표지가 없고 포장지에 국방부 마크가 그려진 라벨지를 붙인 반합을 판매한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상표법」 위반 행위인지 여부

### 【답 변】

반합자체에 군용표지가 없는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단속하는 군용장구라고 할 수 없고, 특허청에 등록된 국방부 마크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것임.

### 【이 유】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용표지가 있는 반합의 경우 위 법에서 단속하는 군용장구에 해당하여 제조·판매 등이 금지됨. 군용표지가 있는 반합이란 반합 자체에 군용표지가 있어 누가보아도 군에서 사용하는 장구임을 알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포장지에만 국방부 마크가 그려진 라벨이 붙어 있을 뿐 반합 자체에는 어떠한 군용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 법에서 말하는 군용장구라고 할 수 없음. 군용표지가 없는 반합의 경우 위 법에서 단속하는 군용장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업무표장으로 등록된 국방부마크와 유사한 표장을 반합의 포장지에 붙여 시중에 유통한 것은 위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음. 끝.

질의 : 국방부조사본부 법무실-27 (2015. 1. 2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1518 (2015. 2. 24.)

## 80.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기간 산정 관련

### 【질의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용계획서에 기재한 특정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사용계획서에 기재한 특정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지급일로부터 해당 일수가 끝나는 날까지를 사용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지급규칙’이라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계획서에 특정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보고, 기간의 종기가 경과함에 따라 사용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유】

지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착수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사용한 날까지 약정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반환함. 이때 사용기간 이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특정한 기간 이내로 보아야 하는지,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기간을 사용일수로 보아 착수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위 일수를 계산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이라 함은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다시 착수금 등 지급일로부터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즉, 지급규칙 제11조 문언의 해석상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기간을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용계획서에 사용기간을 일수로 기재한 경우는 논외로 하고, 특정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기재된 종기까지 착수금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전력정책과-2187 (2015. 5. 1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4147 (2015. 5. 15.)

## 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해석 관련

###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항 각 호 및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판례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은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판 1995. 11. 21. 95누9099)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함) 제13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허가’는 처분의 한 유형에 해당하며, ‘그 밖의 처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이외의 처분 유형인 신고에 대한 수리, 인가, 특허, 승인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료됨.

즉 ‘그 밖의 처분’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처분이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역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 등에 해당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84)</sup> 끝.

질의 : 군사시설재배치과-1381 (2012. 4. 1.)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3696 (2014. 4. 29.)

---

84) 이는 「도시개발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은 참고만 하기 바람.

## 82.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군용물 재산범죄 처리

### 【질의요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및 관할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과형에 관한 규정이고, 수사의 권한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과 상관없이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하여 수사가 가능함. 다만, 수사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수사가 종료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

### 【이 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및 제46조 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범위 밖 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군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군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조 제1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각 호는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과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수사 개시 여부나 수사 권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다음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후 관할 검사에게 사건송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62조에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군용물 등 범죄의 수사 종결 시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함.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할 검사의 지휘 없이 훈방 등 자체 종결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앞서 살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조 제1항은 수사 시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물품 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1천킬로그램 미만의 물품 또는 2천리터 미만의 유류)와 같이 사안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마지막으로 군용물 등 범죄 처리에 있어 관련자 확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건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3조의2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끝.

질의 : 국방부조사본부 법무실-40 (2015. 2. 5.)

회신 : 법무담당관-3830 (2015. 4. 23.)



# 제 6 장 시 설

(군용지 취득·국유재산·군사시설보호)



## 83. 국방대학교 운동장 이용

### 【질의요지】

국방대학교가 경기도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동 대학교 운동장에 대해 사용기간과 사용료, 관리규칙 등을 정하여 국방대학교 행정구역 내 민원인(고양시 야구연맹)의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방대학교와 마포구 야구연합회가 체결('12. 3. 5.)한 M.O.U.(민·군 친선활동 및 교류활동 확대 차원에서 주말 간 일정한 조건 하 무상사용 가능)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마포구 야구연합회에게만 운동장 사용을 허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 변】

국방대학교 운동장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개방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방대학교는 동 조례의 적용을 근거로 운동장에 대한 고양시 야구연맹의 우선 사용을 승인할 의무도 없음. 또한 국방대학교와 마포구 야구연합회간 체결한 M.O.U.에 따라 운동장을 마포구 야구연합회가 이용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허가'에 해당하지 않고,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관할 부대장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부대장이 관장할 사항임. 다만, 국가기관인 국방대학교는 특정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사용허가'가 아닌 재량과 협의에 따라 운동장을 이용토록 허락하였다면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이 유】

경기도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인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그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사립학교로 하고 있는바, 국방대학교는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동 법률은 과정·수업연한·입학자격·학위수여 등에 대해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중등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 그러므로 고양시 야구연맹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국방대학교 운동장의 개방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국방대학교의 소재지가 경기도임을 이유로 고양시 야구연맹의 우선 사용을 요구할 수도 없음.

또한 국방대학교 운동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국유재산법 제2조 제7항 참조), 행정재산 본래의 용도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할 것임.

그렇다면 국방대학교와 마포구 야구연합회간 체결한 M.O.U. 내용에 의할 때 국방대학교가 마포구 야구연합회로 하여금 운동장을 이용토록 한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유재산의 권리변동 없이 국방대학교가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이용을 허락한 것인바,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18조 제2항에서 “국유재산의 권리변동 없이 공동사용(민·관·군)하는 경우에는 사용부대장이 관장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부대장의 판단 하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국유재산법이 규정한 ‘사용허가’이 아니고 단지 훈령에 따른 ‘공동사용’에 해당함.

다만, 국방대학교는 국가기관인바, 특정인에 대하여 운동장의 배타적 지배 및 점유권을 인정하는 ‘사용허가’가 아니라 관할 부대장의 재량과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운동장의 ‘공동사용’을 허락하였다면 모든 신청인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

질의 : 국방대학교 지원과-3160 (2014. 4. 8.)

회신 : 법무담당관-3369 (2014. 4. 17.)

## 84.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한 자산의 “국방·군사시설” 해당여부

### 【질의요지】

민간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군인연금법」 제37조의3 제2항 제4호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5 제1호에 근거하여 군인연금기금으로 주한 미군사령부 성남골프장 부지를 유상 매입하려고 하는바, 매입 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성남골프장 부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목의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민간인을 대상으로 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목의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목에서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이어야 하고,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인을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 할 것임.

또한, 국방부가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주한미군사령부 성남골프장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도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고 부대에 부속된 시설로 볼 수 있다면 군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임.

그러나, 국방부가 군인연금기금으로 주한미군사령부 성남골프장 부지를 유상 매입하여 골프장 사업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골프장을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 볼 수 없는 점, 향후 골프장의 이용대상이 민간인으로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이 목적인바,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군인의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시설을 보았을 때 사목에 규정된 시설 또한 국방·군사 및 군인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목적의 골프장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호의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끝.

질의 : 군인연금과-655 (2015. 2. 13.)

회신 : 법무담당관-2371 (2015. 3. 17.)

## 85. 「건축법」상 국방·군사시설인 군관사 내 과외교습 등 상행위 가부

### 【질의요지】

군 가족(부인, 자녀)이 관할 교육청 등에 신고 후 군 관사에서 상행위(과외교습, 공부방 등)하는 경우 적법 여부

### 【답 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와 등록 등 제반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 관사에서 군 가족이 교습소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이 유】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된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구조로만 볼 때 공동주택 중 아파트<sup>85)</sup>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교정 및 군사시설<sup>86)</sup>로서 국방·군사시설<sup>87)</sup>에 해당함.”<sup>88)</sup> 이처럼 군 관사는 공동주택이면서 국방·군사시설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군 관사”라는 장소적 측면에서 교습소 등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하면,

85)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86)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3호

87)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

88) 「부평구-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2010. 11. 18. 회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시설의 구조(형태)를 정하고 있을 뿐<sup>89)</sup>이고,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교습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군 관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군 관사라는 이유만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습소 운영 등을 할 수 없다고 보면, 군 관사에 살아야 하는 군 가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습소 운영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교습소 등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군 가족이 교습소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군 관사 외 민간 주거시설로 나갈 수밖에 없어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 “군 가족”이라는 인적 측면에서 교습소 등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하면,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는 ‘군인’의 영리업무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군 가족’에 대하여 영리업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명문의 근거가 없으며, 군 가족이 군 관사에서 교습소 등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군 가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임.

89) 제2조(정의)

1. “학원”...(중략)...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제1호사목

따라서, 교습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법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 및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교습시 유의사항<sup>90)</sup> 등의 제반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 관사에서 군 가족이 교습소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계룡대군무지원단 「아파트 운영」 예규 제18조 제3호에서는 입주자 준수사항으로서 “아파트시설을 이용한 상행위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의 ‘상행위’를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하게 되면 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시설을 이용한 어떠한 경제활동도 금하게 되어 금지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위 예규 제18조에서 입주자 준수사항 정하면서 제11조에서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퇴거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입주자의 아파트시설을 이용한 상행위로 안정된 공동생활을 심히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퇴거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아파트시설을 이용한 교습소 운영 등이 공동생활을 심히 방해하지 않는 한 위 예규가 제한하는 ‘아파트시설을 이용한 상행위’라고 보지 않음이 타당함. 다만, 위 예규 제18조 제3호와 관련하여서는 금지하는 상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화·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비록, 군 관사에서 군 가족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 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에 위치하는 긴요한 국방·군사시설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국방·군사시설 및 군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인 및 군 가족들의 공동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인한도를 넘는

---

9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041-730-7172) 작성의 「개인과외교습시 유의사항」 참조

소음을 발생하거나 심야 교습소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참가하는 등 군  
관사 입주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 끝.

질의 : 계룡대근무지원단 감찰실-1873 (2015. 6. 15.)

회신 : 법무담당관-6834 (2015. 8. 4.)

# 제 7 장 재정 및 예산회계



## 86. 기부금품 사용 대상자

### 【질의요지】

예비군이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상 ‘국군장병’에 포함되어 도서(圖書) 등 기부금품의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예비군은 훈련에 소집되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대관리 훈령 상 국군장병에 포함되므로 훈련과 관련된 상황과 장소에서 연관 물품에 한정하여 서면 등의 형태로 기부금품 수령을 희망하는 예비군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유】

「병역법」 제48조는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군의 경우 평상 시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소집되어 훈련을 받는 동안 등에는 현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예비군이 소집되어 훈련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평상 시까지 포괄적으로 기부금품 사용 대상인 국군장병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소집되어 훈련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 현역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사용 대상 등 국군장병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부대 비치 후 개인 소장(수령)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명확한 의사를 신청서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 교부함이 타당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불온서적인 도서(圖書)는 제외함이 타당함. 끝.

질의 : 예비전력과-1376 (2015. 4. 8.)

회신 : 법무담당관-4387 (2015. 5. 21.)

# 제 8 장 기 타



## 87. 비영리법인인 국방인재개발원의 수익사업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국방인재개발원이 제대군인 취업지원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적법한지 여부

### 【답 변】

국방인재개발원이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계획한 사업은 법인의 정관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으로 보임. 그러나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방법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유】

사단법인 국방인재개발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동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역장병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동조 제2항에서는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사업으로서, 이는 이미 정관에서 규정한 ‘전역장병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종으로서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관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이라 보임.

그러나 정관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령 (「직업안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국방인재개발원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으로는 국방인재개발원 - 전역장병 및 예비역 -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이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sup>91)</sup> 향후 계약관계 등 사업추진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법령을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할 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4443 (2014. 4. 4.)

회신 : 법무담당관-3736 (2014. 4. 28.)

---

91) 국방인재개발원과 전역장병 및 예비역과의 관계, 국방인재개발원과 예산지원 또는 운영 기관 사이에 사업운영 및 운영에 따른 인력지원 형태, 전역장병 및 예비역들과 운영 기관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업계획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불분명하다 할 것임.(향후 구체적인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문의하길 바람)

## 88. 정문 위병소 배치 헌병이 군형법 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정문 위병소에 배치된 헌병 근무자가 군형법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정문 위병소에 배치된 헌병 근무자는 군형법상 ‘초병’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이 유】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는 "초병"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군형법은 군의 이목(耳目)에 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는 초병을 두텁게 보호하며 동시에 그 임무해태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sup>92)</sup>

위 군형법 제2조 제3호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초병은 ①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할 것, ②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 ③ 실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실제 배치되어 임무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경계(警戒, Security)’라 함은 한 부대가 전투력을 보존하고 부대의 안전 및 행동의 자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의 공격, 기습, 관측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아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92) 초병수소이탈죄(제28조), 초령위반죄(제40조), 초병에 대한 폭행 등 죄(제54조 내지 제59조), 초병모욕죄(제65조), 초소침범죄(제78조) 등

취하는 모든 수단을<sup>93)</sup> 뜻한다 할 것임.

그런데 계룡대는 각 군 본부가 한 울타리 내에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각 군 부·실단이 모여 있는 본청 및 개별적인 부·실단이 위치한 분청, 군정을 이끄는 각 군 참모총장 공관 등 국방과 관련하여 국방부 본부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시설과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적의 공격 또는 관측의 위협이 높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할 것임.

특히 계룡대근무지원단 경계 작전 지침서에 의하면 경계 작전 구역의 주요시설(영문 경계) 세부 경계 책임 부대는 헌병대대이고, 헌병대대가 맡고 있는 위병소 임무는 계룡대 영내 지역 출입인원·차량 검문검색, 외래인 출입 안내 및 통제, 각종 집회 및 시위 진압, 기타 우발 상황 조치 등인 바, 결국 정문 위병소에 배치된 헌병 근무자는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하여 실제 배치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군형법상 초병에 해당한다 할 것임. 끝.

질의 : 계룡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3072 (2014. 5. 26.)

회신 : 법무담당관-4890 (2014. 6. 17.)

---

93) 군사용어사전, 육군교육사령부, 77면

## 89. 특정수혈부작용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 【질의요지】

특정수혈부작용 인원이 발생하였고 그 인원이 군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헌혈자가 헌혈 시 작성한 헌혈기록카드 동의서를 근거로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sup>94)</sup>

### 【답 변】

헌혈기록카드 동의서를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 【이 유】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94) 질의부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주체로서 헌혈기록카드 동의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는 국방부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질병관리본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권한 범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 즉, 질병관리본부가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헌혈기록카드 동의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던 중 헌혈자가 군인임이 확인되어 군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군의 입장에서는 군인에 대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 할 것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 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호는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하부조직으로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하부조직인 ‘혈액안전감시과’의 사무분장이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임을 알 수 있는바,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받은 소관기관으로서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임.

그런데,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를 위한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헌혈자의 입대 등으로 헌혈자가 군인으로 추정되어

군에 그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는 것이고, 질병관리 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이라 할 것인바,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비추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할 것임.

살피건대, 국방부 및 소관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동법 제15조 제1항 제3호상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정수혈부작용에 따른 헌혈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군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다 할 것임.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가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군에 요청하고, 이에 따라 군이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질병관리 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임. 끝.

질의 : 보건정책과-345 (2015. 1. 16.)

회신 : 법무담당관-1843 (2015. 2. 26.)

#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 총 목 차

[제1집 ~ 제31집]



## 차 례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 .....	257
2. 조직관계 .....	260
3. 인 사 .....	263
가. 계급 및 분과 .....	263
나. 위 탁 .....	264
다. 복무기간 .....	265
라. 정 년 .....	268
마. 임 용 .....	268
바. 초임계급 .....	270
사. 임 기 .....	270
아. 군인복무규율, 겸직 .....	271
자. 진 급 .....	271
차. 전 역 .....	273
카. 제 적 .....	276
타. 복 적 .....	277
파. 휴 직 .....	278
하. 휴 가 .....	278
거. 위 임 .....	278
너. 잡 칙 .....	279
4. 징 계 .....	281
가. 성 질 .....	281
나. 사 유 .....	281
다. 종류·대상 .....	281
라. 징계권자 .....	281
마. 징계위원회 .....	282
바. 징계절차 .....	282
사. 징계의 효력 .....	282
아. 항 고 .....	283

자. 잡 칙 .....	283
<b>5. 군무원 인사 .....</b>	<b>284</b>
가. 임 용 .....	284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	285
다. 면 직 .....	286
라. 복 무 .....	286
마. 신분보장 .....	286
바. 징 계 .....	287
<b>6. 보 수 .....</b>	<b>287</b>
가. 보수 및 수당 .....	287
나. 보 칙 .....	291
다. 기 타 .....	291
<b>7. 병 역 .....</b>	<b>292</b>
가. 총 칙 .....	292
나. 징병검사 .....	294
다. 현역입영 .....	294
라. 소 집 .....	295
마. 병역의무의 종료 .....	297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	297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298
아. 특 전 .....	299
자. 병무행정 .....	299
차. 벌 칙 .....	300
<b>8. 향토예비군 .....</b>	<b>301</b>
가. 임 무 .....	301
나. 조직과 편성 .....	301
다. 동 원 .....	302
라. 훈 련 .....	303
마. 소집통지서 .....	303
바. 무 장 .....	303

사. 원호 및 가료 .....	303
아. 직장보장 .....	304
자. 실비변상 .....	304
차. 병역법과의 관계 .....	304
카. 권한의 위임 .....	304
타. 벌 칙 .....	305
파. 기 타 .....	305
<b>9. 학생군사교육 .....</b>	<b>305</b>
<b>10. 연 금 .....</b>	<b>307</b>
가. 총 칙 .....	307
나. 급 여 .....	308
다. 퇴역연금 .....	309
라. 퇴직일시금 .....	309
마. 상이연금 .....	309
바. 유족급여 .....	310
사. 재해보상금 .....	311
아. 급여의 제한 .....	311
자. 기금의 조성 .....	312
차. 보 칙 .....	313
카. 기 타 .....	313
<b>11. 보 훈 .....</b>	<b>314</b>
가. 총 칙 .....	314
나. 대상 및 사유 .....	314
다. 급 여 .....	316
라. 기 타 .....	316
<b>12. 국가배상 .....</b>	<b>317</b>
가. 배상책임 .....	317
나. 배상기준 .....	318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	319

라. 절차(배상심의회) .....	319
마. 기 타 .....	319
<b>13. 군용지취득</b> .....	<b>320</b>
가. 총 칙 .....	320
나. 목적물(제한) .....	320
다. 절 차(원상회복) .....	321
라. 해 제 .....	322
마. 보 상 .....	322
바. 기 타 .....	324
<b>14. 군 수</b> .....	<b>325</b>
<b>15. 방위산업</b> .....	<b>329</b>
<b>16. 재 정</b> .....	<b>331</b>
<b>17. 예산회계</b> .....	<b>332</b>
<b>18. 국유재산</b> .....	<b>335</b>
<b>19. 군사시설보호</b> .....	<b>339</b>
<b>20. 상 훈</b> .....	<b>342</b>
<b>21. 국립묘지안장</b> .....	<b>343</b>
<b>22. 형 사</b> .....	<b>344</b>
가. 군형법 .....	344
나. 군사법원법 .....	345
다. 기 타 .....	347
<b>23. 민사관계</b> .....	<b>348</b>
<b>24. 기 타</b> .....	<b>350</b>

## 1. 헌법, 행정법, 선거, 계엄

- 귀농선 북방에서의 민간인의 권리제한 ..... 1-1
- 현역무관 혼인규정 제정 ..... 1-3
- 율곡집행단장의 전결권 유무 ..... 15-73
- 국방정책 자문위원의 신분 ..... 15-91
- 국방부장관의 시체보전법 제6조의 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가부 ..... 3-31
- 국방부 조사대장의 신분증 발행권 ..... 5-15
-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원의 처리 ..... 3-44
- 불가쟁력이 발생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3-45
- 소원의 재결범위 ..... 5-16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과 소원법에 의한 재결과의 효력관계 ..... 5-19
- 소원법상의 행정처분해당여부 ..... 14-106
- 개방제한구역의 토지에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때 허가관청과의  
합의 여부 ..... 9-114
-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원법상 행정청인지 여부 ..... 15-299
- 군인으로서 송요찬 씨 석방운동에 서명조인하는 행위가 군형법 및  
선거법에의 저촉여부 ..... 1-5
-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의 입후보를 위한 사임의 효력 발생시기 ..... 1-7
- 부대영내에서의 선거연설 및 포스터 첨부행위의 적법성 ..... 1-9
- 현역군인의 선거위원 취임 ..... 1-9
- 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요건 ..... 1-10
- 병의 국회의원 입후보등록 가능여부 ..... 10-91
- 제3자의 부재자 신고 등 ..... 4-27
- 계엄사령관의 작전지휘권 등 ..... 1-170
- 계엄령하에 있어서 지휘감독권 등 ..... 1-172
-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등 ..... 1-174, 2-170
- 포고령의 시행시기 등 ..... 2-21
- 포고령 위반자의 법정형 ..... 2-169, 1-256, 1-257
- 계엄시 보안업무지침 제정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조정 ..... 16-157, 21-29
- 계엄법상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한계 및 내용 ..... 8-137

○ 계엄사령관의 근로동원 가능여부 .....	9-125
○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의 한계 .....	13-141
○ 위수령에 의한 적용부대 범위 .....	13-14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의 의미 .....	16-15
○ 국방부장관의 행정대집행 가부 .....	16-16
○ 헌법 제76조 제2항의 “중대한 교정상태”의 의미 .....	18-11
○ 국방부장관이 ‘지휘서신’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	19-24
○ 합동참모본부의 성격 .....	17-11
○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된 것인지, 개편된 것인지 여부 .....	19-14
○ 합동참모본부가 각군의 직속상급기관인지 여부 .....	19-18
○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 국·실에 협조문에 의한 문서발신이 가능한지 여부 .....	19-21
○ 합동참모본부의 훈령제정권 및 위임전결 가능성 .....	19-26
○ 작전통제권 인수와 휴전협정 .....	19-237
○ 독도경비대에 대한 군의 작전통제 .....	19-240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	17-12
○ 위임받아 한 행정처분의 재결청 .....	18-13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범규명령성 .....	19-31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 .....	21-20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연구원에 장관의 해외여행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9-11
○ 군용전기통신법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19-13
○ 재향군인회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청인지 여부 .....	18-15
○ 토지협의매수시 군수의 보상불가통보가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 .....	19-9
○ 파견된 방위병에 대한 지휘·감독권 .....	18-87
○ 파견된 방위병에 대한 소속군부대의 업무활용 .....	18-89
○ 훈령과 지침의 효력관계 .....	18-16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17-13
○ 육군사관학교의 명예교수·명예졸업제도 .....	18-59
○ 군병원과 일반병원의 자매결연 .....	17-35

○ 군병원의 요양취급기관지정과 의료기관개설 .....	18-233
○ 무역대리점 등록업무의 민간단체위탁 .....	19-29
○ 재외공관주재 무관의 대외직명 사용 .....	21-3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재심청구와 집행정지 .....	21-5
○ 군무원의 정원조정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여부 .....	21-7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류 제4조의 ‘제출할 서류’에 향후 수집할 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	22-1
○ 국방부산하기관의 국방부장관 적인 사용 가능 여부 .....	24-6
○ 국방정보본부 군사보안업무 처리시 협조문 발신 가능 여부 .....	24-8
○ 국방조달본부장이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1
○ 군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4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1조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 .....	26-3
○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36조 제2항의 대외적 효력 .....	26-8
○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국방부공문서의 효력 .....	27-3
○ 직무대리의 권한 범위 .....	27-6
○ 통합방위법상 검문소 운용 .....	27-9
○ 나라사랑카드와 행정권한의 위임 .....	27-17
○ 합참대 지휘·감독권한의 위임 가부 .....	28-2
○ 국직부대에 대한 합참 전투지휘검열 가부 .....	28-4
○ 국군상비병력규모에 관한 국방개혁법의 해석 .....	28-6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 .....	28-9
○ 장관의 군정권한 일부 합참의장 부여 여부 .....	28-12
○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간 권한의 민간위탁 가부 .....	28-16
○ 국방부 감사실의 방위사업청 감사 가능여부 .....	28-18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	29-1
○ 국군포로 등록 거부가 기속재량인지 여부 .....	29-2
○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	30-6

## 2. 조직관계

- 해군병원에서의 군속의 치료의무 유무 ..... 1-13
- 폭동진압 ..... 2-15
- 중앙정보부가 국방부 예하 각 정보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29
- 부대 또는 기관설치권한 사항의 위임입법 ..... 3-53
- 군수근무단요원 선발 임명권한의 위임 ..... 15-74
- 전력증강위원회의 법적성격 및 기능 ..... 16-11
- 월남귀순용사 원호심사위원회의 성격 ..... 16-13
- 국방정보본부의 조직법상 성격 ..... 16-14
- 국방품질검사소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3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 16-155
- 국방부와 합참 및 각군의 관계 ..... 20-3
-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범위 ..... 20-5
- 국방부내 C3I 사업단 설치 ..... 20-8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검열권한 범위 ..... 20-10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검열권한 범위 ..... 20-10
- 합참의장의 인사협의권 ..... 20-58
- 비상대비훈련주관부서 ..... 20-12
- 대사관에의 현역파견근무 ..... 20-15
- 고속도로 건설시 군병력투입근거 ..... 20-17
- 군전공의 정원책정업무의 민간기관위탁 ..... 20-18
- 국방대학원장의 교수임용기간결정권 ..... 20-20
- 국방대학원 부원장의 지휘권 ..... 20-21
-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7-177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징수 및 활용 ..... 21-9
- 감사임명예정자의 설립위원 위촉 ..... 18-217
- 법인설립전 임직원에 대한 봉급용도의 보조금 지급 ..... 18-218
-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 ..... 18-220
-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 21-24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학교법인 이사 겸직 가부 .....	21-26
○ 군인공제회가 직할기관인지 여부 .....	19-220
○ 정관개정으로 감사의 임기가 변동된 경우 정관개정전 선임된 감사의 임기 .....	19-221
○ 군인공제회 산하단체의 이사와 보수약정 .....	19-222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연장방법 .....	19-223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 .....	20-30
○ 군인공제회 관리 골프장이 사업장인지 여부 .....	18-222
○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수자료취급인가와 감독 .....	18-224
○ 재향군인회 임직원의 지방의회의원출마 .....	19-215
○ 재향군인회의 각급회 해산가능여부 .....	19-216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수익사업 .....	19-229
○ 재향군인회에 대한 기부금과 국방헌금 .....	19-230
○ 재향군인부인회의 사회단체 등록 .....	20-36
○ 예비군수송협회의 수익사업실시 .....	20-34
○ 예비군수송협회의 자동차 유상운송 .....	18-226
○ 예비군 수송협회의 명칭변경 .....	20-35
○ 예비군수송협회의 임원의 취임승인 .....	21-13
○ 예비군수송협회의 전세버스 사업등록 .....	21-15
○ 해병전우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 .....	18-228
○ 3·6동지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 .....	19-227
○ 사단법인 성우회의 설립허가 .....	21-27
○ 사단법인 세계군악연구원의 설립허가 .....	21-31
○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기구설치와 법적근거 .....	18-229
○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에 대한 조건부 승격실시 .....	21-25
○ 한국국방연구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	21-30
○ 전사편찬위원회의 사업을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9-218
○ 전쟁기념사업회와 부설기관 .....	19-224
○ 전쟁기념사업회의 결산보고 .....	20-32
○ 한·미 안보연구회 법인설립허가 .....	20-37
○ 국군홍보관리소가 특수일간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9-234

○ 문화유적지표조사 소요경비의 부담주체 .....	19-242
○ 국방부 통합수송부의 군용차량 집중관리 .....	21-11
○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의 지위 등 .....	22-2
○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에 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및 법적근거 .....	22-3
○ 합동참모의장이 작전부대장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23-1
○ 차기잠수함 사업평가단에서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23-2
○ 각 병과 사병의 현병 직무 보조에 관한 질의 .....	23-3
○ 군체력단련장 운영의 재위탁 관련 질의 .....	23-4
○ 국방과학연구소가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	23-5
○ 전쟁기념사업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	23-6
○ 계룡대근무지원단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여부 .....	24-3
○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지역·지구계엄사령관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4-5
○ 국방부소속기관에 보안적부심의회 설치 가능 여부 .....	24-10
○ 국군수송사령부의 합동부대 지정 가능 여부 .....	24-12
○ 국방과학연구소 제2부소장 직위 폐지 가능 여부 .....	24-13
○ 호국장학재단이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인지 여부 .....	25-3
○ 직업보도 교육인원의 별도 정원화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여부 .....	25-5
○ 합참의장의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의 범위 .....	25-7
○ 합참의장이 국직/합동부대의 훈련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5-9
○ 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
○ 국직기관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배속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25-12
○ 국방중기부대계획 및 연도부대계획을 합참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5-14
○ 국방부합동조사단이 각군 현병업무를 조정,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25-15
○ 전쟁기념사업회가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16
○ 장교제적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5-17
○ 군인사법 제14조의 결원 보충 .....	25-18
○ 물자·장비의 비축훈련(안)에 대한 사전 법령해석 질의 .....	26-6

- 군기관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 26-12
- 부대해체 승인권자 ..... 27-23
- 합참예속 하에 합동군 창설 여부 ..... 27-25
- 해군기지구역 설정 건의권의 법적 성격 ..... 27-32
- 향방대대 편성 ..... 27-34
- 전시창설부대의 모체부대 변경 가부 ..... 27-36
- 해외파병부대 기록관리 ..... 27-37
- 장교후보생의 정원운영 ..... 27-42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의 관계 ..... 27-43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 29-3
-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의 국외여행 통제 ..... 29-4
- 보상금 환수 시 징수업무기관 ..... 30-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 30-9
-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가부 ..... 30-13
- 합동참모의장의 국직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 범위 ..... 30-16
- 국직부대에서 합동참모의장 명의의 공문서 하달이 가능한지 여부 .. 30-20
- 각 군 참모총장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30-23
- 군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3
-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 임명 ..... 31-5

### 3. 인 사

#### 가. 계급 및 분과

- 강등된 장교의 서열 ..... 4-57
- 신분변동에 따른 인사처리 ..... 8-30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군인인가 ..... 11-21
- 생년월일 오기로 임관된 장교의 신분 ..... 13-23

- 방위 이병과 현역 이등병간의 서열관계 ..... 15-57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강등 ..... 16-29
- 병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시 계급 재부여 ..... 18-41
-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강등되는지 여부 ..... 19-39
-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현역병에 대한 강등 ..... 19-61
- 전투병과 대대장에 대한 잠정적인 중령계급 부여 ..... 20-55
- 군인·군무원의 상하관계 ..... 20-84
- 군무원에게 지휘관 자격이 있는지 ..... 23-7

## 나. 위 탁

- 군인사법시행 이전의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1-17, 8-47
- 병으로서 외국에 유학한 자의 복무기간 ..... 2-48
- 현역군인의 타업무 겸직의 합법성 여부 ..... 3-60
- 군위탁생의 비용상환 ..... 8-54
- 군인의 외국유학 및 위탁교육과 복무기간의 가산 ..... 1-18, 3-69, 9-21, 10-29, 15-20
- 군 기술위탁생출신 하사관의 복무기간 ..... 11-55
- 위탁교육받은 자가 공상으로 전역한 경우의 비용 반환여부 ..... 19-44
- 방위병의 취업가능여부 ..... 17-34
- 현역군인의 특허권 양도가 영리행위인지 여부 ..... 17-36
- 단기복무장교의 복학보장해당여부 ..... 17-85
- 현역교관의 국외파견 ..... 18-56
- 한국국방연구원에 현역군인지원시 지원기간 설정여부 ..... 18-57
- 국외위탁교육생의 지급경비 반환 ..... 21-51
- 예산지원이나 복무가산 없이 주간대학원에 취학시키는 제도의 적법성 ..... 22-4
- 형이 실효 또는 사면된 자나 중징계후 기록말소된 자가 군위탁생이 될 수 있는지 ..... 22-5
- 군위탁생 해임, 재징계 관련 질의 ..... 23-16
-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단기복무하사관의 지위 ..... 23-17
- 야간위탁교육생의 수학기간 산정 ..... 24-19
- 군위탁자 5년차 전역 가부 ..... 28-48
- 군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면제 ..... 28-66

- 위탁교육 종료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 29-13
- 복수의 위탁교육 복무기간 가산 ..... 29-16
- 군위탁생 군전공의 수련과목 강제 지정 ..... 30-107
- 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 ..... 31-13

#### 다. 복무기간

-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의 의무복무기간 ..... 1-52
- 학도군사 훈련과정(RNTC) 출신 하사관의 복무연한 ..... 2-35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연장과 전역 ..... 15-88
- 연장복무를 지원한 단기복무장교의 전역시기 ..... 16-19
-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및 전역 ..... 3-81
- 단기장교의 복무연장 ..... 15-29
- 여군복무기간의 연장 ..... 9-49
- 20년 이상 현역복무자 복무기간 계산 ..... 4-63
- 간부후보생의 장기복무 ..... 5-35
- 의무·법무·군종 병과장교의 복무기간 기산점 ..... 5-45
- 군법무관 시보 실무수습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10-27
- 기본병과 장교가 복무기간중 법무병과로 전과한 경우의 복무기간 .. 12-38
- 군의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한 자의 의무복무기간 ..... 8-58
- 군의관으로 복무중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의 장기복무 장교 해당 여부 ..... 10-40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 11-52
-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군전문의 장교의 복무기간 ..... 9-25
- 군법회의에서 면소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입,  
    봉급차액 소급지급 ..... 9-25
-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로 복직될 경우 호봉승급계산시 복무기간공제 여부 ..... 11-41
- 제적된 단기복무 하사의 복무기간 ..... 9-47
- 위탁교육기간의 실역복무 포함여부 ..... 10-24
- 국비로 외국에 파견한 감독관의 파견기간 ..... 10-54
- 인사관리잠정규정 제31조에 의한 교관복무연장 ..... 12-27
- 병역의무 특례규정 시행이전 군에 종사한 자의 복무기간 기산일 및  
    복무기간 ..... 12-31

- 무관후보생이 하사관으로 복귀한 경우 복무기간의 환산여부 ..... 14-33
- 이중병적자 복무기간 합산가능 여부 ..... 12-59, 13-22
- 이중병적자의 의무복무연한 ..... 8-35
- 군인사법 제정 이전의 예비역장교의 예비역 복무기간 ..... 9-35
-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된 실역 복무장교의 복무기간 ..... 12-25
-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현역 편입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문제 ..... 12-61
- 지원에 의한 예비역 무관의 실역복무, 계급정년 계산 ..... 1-45
- 현역 복무기간 단축사유 ..... 9-75
- 사관후보생의 장기복무지원서 제출의 효력 ..... 17-17
- 의무복무기간을 넘는 기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여군장교를  
모집할수 있는지 여부 ..... 17-19
- 병으로 복무중 임관한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17-21
- 6개월간 어학교육을 받은 장교의 가산복무여부 ..... 17-22
- 군의장교의 복무기간 산정 ..... 17-23
- 외국장비제조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군위탁생의 복무기간의 가산 여부 ..... 17-24
- 외국유학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17-25, 21-37
- 제적된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17-27
- 심신장애자 치료를 위한 복무연장 ..... 20-68
- 군인력운용상의 필요에 의한 군복무기간 단축가능 여부 ..... 17-74
- 특과장교의 복무기간단축 ..... 17-77
- 특례보충역이었다가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기간 ..... 17-80
- 공중보건역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기간의 성격 ..... 17-89
- 주간근무를 하면서 주간과정 위탁교육받은 자의 가산복무 ..... 18-27
- 장교임용전 복무연장철회와 복무연장 장교임명의 적법성 ..... 19-40
- 제적된 일반하사의 병으로서 잔여복무기간 복무 ..... 18-83
- 재영복무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 ..... 18-85
- 군위탁생이 장기복무장교가 된 경우 복무기간 가산여부 ..... 19-42
- 군위탁생 이수기간과 장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 ..... 19-50
- 군법무관 가산복무 적용대상자 ..... 21-68
- 장교임용을 위한 교육기간의 군복무기간 해당여부 ..... 21-70

○ 학군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22-6
○ 해임된 군위탁생의 의무복무기간 .....	22-7
○ 소위임관시 장기복무 인사명령이 발해진 경우의 효력 .....	22-8
○ 정상근무를 하는 주간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	22-9
○ 일반하사가 연장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연장을 할 수 있는지 .....	23-26
○ 현역병(기술특기병) 복무기간 단축 가능 여부 .....	23-14
○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 .....	24-46
○ 복무연장장교에 대하여 복무기간연장 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5-25
○ 연장복무장교의 휴직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25-31
○ 공소기각판결시 휴직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 .....	25-33
○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	25-75
○ 자비입학자 취학추천 및 의무복무기간 .....	26-55
○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점 .....	27-55
○ 위탁교육자의 가산의무복무기간 기준 .....	27-57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60
○ 군책임운영기관장인 현역군인 계약연장 가부 .....	28-26
○ 이중국적자의 장기복무 여부 .....	28-53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28-70
○ 유급지원하사의 신분전환시 의무복무기간 기산방법 .....	29-14
○ 유급지원병 복무연장 가능성 .....	29-15
○ 조종장교의 복무서약서의 법적 효력 .....	29-22
○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	29-23
○ 해군 항공병과장교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개정 군인사법의 적용시기 .....	30-62
○ 가산복무기간 중 정직 처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정 .....	30-70
○ 간호사관 출신 장교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성 .....	31-34
○ 복무연장 기간 중 불임휴직을 한 경우 전역일이 연장되는지 여부 ..	31-72

○ 비예산 국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 31-147

**라. 정년**

○ 계급정년에 해당되어 전역되는 장교의 정년해당일 ..... 8-63

○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퇴역 또는 면역 ..... 9-19

○ 군인연금법상 특례에 의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의 퇴역 ..... 9-24

○ 법무·의무·군종장교의 병역법에 의한 면역연령 ..... 11-57

○ 의무행정장교에게 군인사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하여 그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4-39

○ 군국간호학교의 일반학 과정 교수요원의 연령정년 ..... 15-44

○ 군사관학교 부서장 겸 조교수인 현역장교의 정년 ..... 15-87

○ 사관학교 교수요원의 인정 여부 및 정년 ..... 21-41

○ 포로로 관리중인 자가 현역정년에 달한 경우의 인사처리 ..... 17-30

○ 임시대령의 계급정년 ..... 17-31

○ 의무복무기간대에 정년에 달한 경우 ..... 18-23

○ 특정 병과원에 대한 연령정년 단축 가능 여부 ..... 24-21

○ 해병대 영관급장교의 정년 단축 ..... 26-46

○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된 경우 정년과의 관계 ..... 30-57

○ 임시계급의 현역복무기간(정년) ..... 31-103

**마. 임 용**

○ 공무원 신분에 관한 행정행위의 효력 ..... 1-40

○ 공무원 전직시험 ..... 2-30

○ 사관생도의 편입학 ..... 2-50

○ 준사관이 군법무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 5-32

○ 임용자격의 유효기간과 군복무 ..... 5-42

○ 하사관의 임용자격 결격사유 ..... 7-22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 7-26

○ 병역기피자의 군종장교 선발 여부 ..... 8-21

○ 인사발령 취소 ..... 8-39

○ 군의관요원의 해·공군 분류에 있어 지원서의 법적 효력 ..... 9-72

○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의 전직 ..... 10-31, 10-32

○ 장기복무장교의 연령제한 .....	11-27
○ 민간인 강사의 임명 .....	11-47
○ 사관학교 교육중 도태자에 대한 하사관 임용 가능여부 .....	12-54
○ 군종장교요원 선발 .....	13-20
○ 장교 임용 연령제한 .....	13-21
○ 조건부 의사의 군의관 임용가능성 .....	13-26
○ 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규정 제11조의 해석 .....	13-31
○ 예비역 군종장교 후보생의 자격취득 제한연령 .....	13-42
○ 하사관 임용에 있어서의 학력 .....	16-23
○ 사관학교예의 특정직공무원 교수의 임용 가부 .....	16-38
○ 국방대학원 교수의 기한부 임용 가부 .....	16-34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	17-71
○ 성결교신학교 졸업자의 사관후보생 지원자격 .....	20-43
○ 정년전역하는 위관급 장교의 준사관 임용 .....	18-29
○ 육군장병을 공군으로 전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9-52
○ 군장학생의 타군입대 .....	20-45
○ 5급 공채합격자의 현역장교 임용 최고연령 .....	20-46
○ 영관급장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수여 .....	20-56, 21-63
○ 육군사관학교의 부교수를 국방정신교육원의 부교수로 보직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23-19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구군속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	23-57
○ 독학사의 해군학사장교 지원자격 여부 .....	24-22
○ 임용결격사유자를 준사관으로 임용한 처분의 효력 .....	24-24
○ 북한주민 귀순자의 하사관 특별임용 가능 여부 .....	24-54
○ 국방대학교원 신규채용 .....	25-28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사관후보생 지원 .....	26-29
○ 장기·연장복무 지원 시 연령상한 연장여부 .....	27-65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상의 ‘임용’ .....	28-29
○ 학위미취득 장교 임관취소 .....	28-91
○ 준사관 지원자격 .....	29-9

- 국방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시 특정 연구조건 부과가부 ..... 30-29
- 전역심사위원회 결과 ‘계속복무’로 판정된 생도의 임관 가능여부 ..... 30-35
- 군종장교 임용제한 연령 ..... 31-19
-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은 자에 대한 임용 가능 여부(벌금형 전과 사유) ..... 31-21
- 육군 협약대학 졸업자의 해·공군 장교 임관 가능성 ..... 31-29
- 신원조사 결과 회보 시 범죄경력조회 일체의 회신 가능성 ..... 31-101

## 바. 초임계급

- 법무장교의 경력환산 ..... 4-59
-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군법무관의 사회경력 환산 ..... 21-72
- 장교 초임계급 부여 ..... 8-33
- 경력환산의 소급적용 ..... 10-26
- 의무장교의 임용연령제한 및 재임용시의 계급 및 경력환산 ..... 10-30
- 국민방위군 사관근무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 ..... 13-28
-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한 일반병과 병적편입과 초임계급 ..... 16-24
- 사관학교 교관요원의 초임계급 ..... 17-20
- 사관학교 1년 중퇴자의 현역입영시의 초임계급 ..... 17-70
- 석사학위를 소지한 공사교관의 초임계급 ..... 20-49
- 군의장교의 인턴수련기간에 대한 사회경력 환산 여부 ..... 21-56
- 일반하사제도의 시행 가능 여부 ..... 30-45

## 사. 임 기

- 서리기간의 임기계산 여부 ..... 4-47
- 복무연장에 따른 장교분리 ..... 6-29
- 병과장의 임기 기산 ..... 11-37
- 중요부서의 장의 임기 ..... 15-79
- 해병통신병과장의 임기 ..... 20-63
- 임기제로 진급된 자의 임기 ..... 24-26
-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 ..... 26-19
- 병과장의 임기 중 전직을 위한 해임가능성 ..... 26-44

- 박사학위 교육기간이 사관학교 부교수 임기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6-69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부대 ..... 31-126
- 해군 법무병과장의 임기만료 후 해군 내부 전직 가능성 ..... 31-136

#### 아. 군인복무규율, 겸직

- 군인복무규율에 관한 질의(겸직금지) ..... 3-60, 7-34
- 민간대학에 출강하는 사관학교 교수의 겸직 ..... 9-28
- 군인근속의 한국무선종사자협회에 가입여부 ..... 10-201
-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되어 실역복무중인 장교의 계급 호칭 ..... 13-19
- 군부대장의 학교장 등 겸직가능 여부 ..... 19-176
- 방위소집자의 겸직 ..... 10-35
- 국방정책자문위원 해촉요건 ..... 15-78
- 국방대학원 교수의 겸직 가부 ..... 16-35
- 천주교 군종교구 유지재단의 이사의 직무가 영리적인지 여부 ..... 19-54
- 연예인의 징집전 제작된 광고와 군인복무규율상의 영리행위 ..... 22-10
- 군 소속 체육선수의 프로구단 입단계약 가능여부 ..... 23-11
- 군무원이 재개발조합 이사가 될 수 있는지 ..... 23-17
- 군인공제회 산하법인 임직원의 정치활동 금지여부 ..... 23-55
- 군인의 학교법인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 24-35
- 대외 출강이 겸직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25-34
- 장관급장교의 산하기관 임원직위 겸직 ..... 26-17
- 현역복무 중인 병사의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 및 청원휴가 ..... 26-67
- 영리적 직무 범위 판단 기준 ..... 27-68
- 파견 상태로 국제기구에 복무가능 여부 ..... 28-45
- 가점·감점제도로 외박제한 가부 ..... 30-105
- 해병대 사령부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 관련  
지침의 적법성 ..... 31-68

#### 자. 진 급

- 군장성급의 정규진급 절차 ..... 3-84
- 진급낙천사유 ..... 7-23

○ 장교진급 .....	5-26
○ 장교진급심사 .....	8-29
○ 장교진급 낙천자의 인사처리 .....	8-50
○ 남조선 국방경비대원의 추서진급 .....	15-86
○ 군인사법 부칙 제2조 해당자의 진급 .....	9-42
○ 군인사법상의 진급 해당연도 .....	10-25
○ 임시소령과 예비역소령 .....	15-81
○ 장교진급 예정자의 진급발령 순위 .....	14-28
○ 군인진급규정에서의 “유죄판결”의 의의 .....	1-236
○ 국제기능올림픽 입선자와 1계급 특별진급 .....	15-27
○ 진급예정자 명단과 유죄판결 .....	16-22
○ 군인사법상의 진급 해당연도에 관한 질의 .....	17-28
○ 공군학사장교의 육군장교 복무경력 인정 .....	20-51
○ 진급최저근속기간 단축규정의 적용 .....	20-53
○ 진급전 전년도에 진급선발 .....	18-32
○ 진급예정인원의 의미 .....	18-34
○ 연령정년에 달한 이후의 진급선발 .....	18-36
○ 진급선발후 연령정년에 달한 하사관의 진급 .....	18-37
○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진급발령 .....	18-39
○ 진급발표된 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진급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	19-37
○ 원사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	21-49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중사진급예정자의 진급 .....	21-65
○ 실효된 벌금형 선고사실로 진급선발시 감점하는 것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위반인지 여부 .....	22-11
○ 진급예정자의 법적 지위 .....	24-27
○ 임시계급부여제도의 적법성 여부 .....	24-28
○ 진급예정자가 중징계를 받아 항고하여 경징계로 감경되었으나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경우 진급발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5-23
○ 명예진급제도를 국방부지침으로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	25-37

-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진급예정인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 26-39
- 진급예정인원과 진급제청인원의 범위 ..... 26-57
-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예외(약식명령 청구) ..... 27-71
- 부사관 근속진급제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29-17
- 재외공관 무관의 직책계급장 부여 가부 ..... 29-25
- 예비역 간부의 진급심사 시 전역예정자 선발 가부 ..... 31-95

## 차. 전 역

- 병력초과운영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적용 ..... 1-30
-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복무기간 초과자의 전역 ..... 1-47
- 전역지원서 제출기간 ..... 1-48
- 제적사유가 확정된 군인이 그 확정일 전에 원에 의한 예편이 되었을 경우의 조치 ..... 1-49
- 군인으로서의 신분종결일 ..... 1-71
- 전역일 당일의 신분 ..... 15-90
- 지원에 의한 단기하사에 대한 저능률자 전역규정의 적용 ..... 15-75
- 저능률자 전역규정 해석 ..... 2-32
- 장기복무전형에 불합격한 장교로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처리 ..... 3-77
- 예비역무관의 특수 전면역 ..... 7-73
- 여군 임신으로 인한 전역무제 ..... 5-37
- 군인사법상 복무연장자의 전역 ..... 6-23
- 불명예제대자의복무해제시기 ..... 7-16
-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하는 장교에 대한 전역조치 가능 여부 ..... 8-43
- 위탁교육 이수자의 전역원 제출 ..... 8-52
- 연령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 연기 ..... 8-53
- 의원출마를 위한 전역 ..... 8-145
-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기일전에 제출된 전역 보류신청 ..... 9-29
-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전의 전역 ..... 9-32
- 전역될 병과장의 전역보류 ..... 10-19
- 전역보류처분의 효력기간 ..... 15-24

○ 2중전역 발령된 자의 효력 .....	10-20
○ 장기복무 법무장교의 전역 등 .....	10-23
○ 단기하사 및 병에 대한 전공상 여부 결정 .....	9-17
○ 위탁교육을 받은 간호장교의 특수전역 등 .....	11-63
○ 전역의 특례 .....	11-68, 14-35
○ 형집행정지중인 자가 의병전역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인을 의병전역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12-23
○ 군복무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 .....	16-21
○ 군인신분상실시기 .....	17-33
○ 착오에 의한 전역처분의 취소여부 .....	17-78
○ 현역병의 특수전역 .....	17-79
○ 장기복무장교의 장기복무해임 .....	18-21
○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	18-25
○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시기 .....	19-55
○ 을종 위탁생이었던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	19-58
○ 5년차 전역희망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절차 .....	20-76
○ 전역지원서 제출 없는 전역지원 .....	18-42
○ 전역지원서의 효력과 인사정책 .....	20-79
○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여부 결정권한 .....	18-44
○ 8, 9급 심신장애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	20-66
○ 의무장교에 대한 전·퇴역신체검사시 적용규정 .....	18-45
○ 전역보류기간 만료후 전역보류 .....	18-48
○ 의무복무기간 연장입법의 적용시기와 전역보류 .....	19-63
○ 현역정년에 달한 장교의 전역보류 .....	20-73
○ 퇴역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역보류 .....	21-53
○ 군위탁생출신장교의 의병전역과 비용반환 .....	18-52
○ 기소된 군의장교에 대한 전역발령일자 .....	20-71
○ 전역에 관한 해군 건강관리및신체검사규정의 효력 .....	21-54
○ 편제조정 및 교과개편과 관련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전역관리문제 .....	22-12

-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복무장교이 강제전역 여부 ... 22-13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4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22-14
- 직업보도교육의 입과자격 ..... 22-15
-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시기 등 ..... 23-10
- 장기복무 의무장교가 전문의학과정 수습 도중 위 과정을 중단한  
경우 5년차 전역이 가능한지 ..... 23-13
- 군인사법 개정 전 임관한 단기장교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해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지 ..... 23-23
-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 기산점 ..... 23-25
- 정원초과 인력해소를 위한 강제전역 가능 여부 ..... 23-28
- 직업보도교육 신청자격 여부 ..... 24-33
- 특수병과장교 전역시 적용할 신검규정 ..... 24-52
- 장관급 장교의 정년전역 ..... 25-27
- 의무조사결과 신체등급(4급) 판정을 받은 자를 전역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 26-23
- 가산복무기간 중 군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장학금을 반납하고  
전역가능한지 여부 ..... 26-25
- 육아휴직자의 5년차 전역지원 ..... 26-33
- 의무조사결과 심신장애등급이 1~7급인 자를  
현역복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26-51
- 전직된 임기제 진급자의 전역시기 ..... 27-73
- 육아휴직자의 전역일 ..... 27-78
- 기소휴직 처리된 전역예정자의 전역명령의 적법성 ..... 27-80
- 임기제 진급자 보직 변경 ..... 28-55
- 군 체육선수 ‘도태’의 법적 성질 ..... 28-68
- 심신장애전역 대상자 복무 가능 여부 ..... 28-73
- 전투경찰순경 전환복무 해제 ..... 28-83
- 직업보도중 근속진급된 경우 재복무 가부 ..... 28-87
- 전역보류 직권취소 및 철회 ..... 29-11
- 임기제 진급자를 전직지원교육 비대상자로 한 해군 규정 ..... 30-67
- 부사관후보생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는 경우 전역처분 필요 여부 ... 30-82

-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기간 중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30-10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범위 ..... 31-42
-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가능성 ..... 31-44
- 국직부대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제대 ..... 31-59
- 기소유죄된 단기복무장교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시 전역일자 등 ..... 31-62
- 1심판결 선고 후 중징계 받은 자의 지원 전역 허가 가부 ..... 31-65
- 육군 예비역 장교 전역명령 정정 ..... 31-97

### 카. 제 적

- 벌금형을 받은 자의 제적 ..... 1-24
-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관의 제적 ..... 1-25
-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제적 ..... 1-27
- 군인사법상 제적대상자가 제적되기 전 복권된 경우의 제적 ..... 1-28
- 사건계속중인 자의 제적 ..... 1-32
- 집행유예중 사후조치로 잔여 유예기간의 집행면제 효력 및 제적 ..... 1-53
- 군인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의 병역의무 ..... 5-66
- 제적발령 지연자의 제적일자 ..... 7-27
- 제적명령의 지연과 복무기간 환산 ..... 9-20
- 성직자격 박탈된 군종장교의 인사처리 ..... 8-55
- 대리입대자의 신분 ..... 8-27, 9-18, 11-63
- 제적될 자의 제적전 복무기간의 성격 ..... 8-28
- 제적과 복무월수 계산 ..... 8-56
- 유죄확정된 자의 제적 ..... 8-59
- 외국인이 인지한 자의 제적 ..... 8-149
- 해군 예비원의 제적 ..... 9-36
- 2중 병적자의 제적 ..... 9-44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제적 ..... 10-41, 13-34
- 제적된 장교의 신분처리 ..... 10-42
- 사면과 제적자 인사처리 ..... 10-48

- 법무장교후보생 중 결격사유로 인해 임관이 불가능할 경우 현역병  
입영여부 ..... 12-65
- 제적된 단기하사의 병역에 관한 질의 ..... 14-37
-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장교 등의 전역 일보 일자 ..... 12-29
- 복무 연장한 임용 하사관이 제적된 경우의 인사처리 ..... 15-35
- 포로·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 ..... 15-53
-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에 대한 인사 ..... 16-33
- 형사사건이 군의 후보생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 16-30
- 행방불명된 장교의 제적시기 ..... 20-81
- 무관후보생이 된 현역하사관 등의 신분상실시기 ..... 20-65
- 집중호우로 실종된 장병에 대한 순직처리의 가능시기 및 방법 ..... 22-16
- 사관학교퇴교자의 편입학 가능 여부 ..... 24-38
- 하사관 제적 처리 절차 ..... 24-47
- 육군3사관학교 규정에 의한 퇴교 가부 ..... 28-33
- 재심청구로 무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 대한 제적명령 및 진급 ..... 31-54
- 군종장교의 소속 종단 변경과 장교 신분의 보유 ..... 31-112

#### 타. 복 적

- 재심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자의 복적 여부 ..... 3-37
- 상소권 회복된 자의 인사처리 ..... 2-44, 6-30
- 무죄판결된 직위해제 공무원 복직시기 ..... 8-40
- 복직 발령시기 ..... 8-62
-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복직 ... 9-33
- 재심과 복적시기 ..... 10-45
- 착오에 의한 제적임이 확인된 경우 해군 예비사관의 복적 ..... 10-46
- 재심무죄인 자가 연령정년에 달한 경우 복직 및 전역시기와  
복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범위 ..... 22-17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학적복원 및 추가임관 ..... 23-26
- 선고유예판결 받은 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 25-36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능여부 ..... 26-49
- 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과 복직 가능성 ..... 31-23

## 파. 휴 직

- 휴직으로부터의 복직시기 ..... 1-20, 8-62
- 군법회의에서 무죄로 확정된 자의 복직 ..... 9-46
- 휴직명령 시기 ..... 11-32
- 휴 직 ..... 11-44
- 휴직이 호봉 재획정에 미치는 영향 ..... 15-17
- 소급 휴직명령의 적법 여부 ..... 12-50, 11-17
- “공소권무” 결정을 받은 자의 인사처리 ..... 14-21
- 벌금형 선고사건의 이송가 휴직명령 ..... 19-57
- 휴직기간 계산방법 ..... 19-67
- 3군합동부대 소속장병의 외박규정 ..... 24-36
- 육아휴직자 진급발령 보류 ..... 28-81
-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일부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29-27
- 예비 간호사관생도 가입학 기간 중 퇴교처분 관련 ..... 30-21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30-74
- 가사휴직을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31-151
- 육아휴직한 간호장교에 대한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활용가능성 ..... 31-154

## 하. 휴 가

- 불치의 병(암)으로 진단된 장교의 해외 휴가 ..... 10-55
- 군인의 휴가일수와 공휴일 포함여부 ..... 16-32
- 대간첩작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복무단축 등 ..... 16-44
- 군인의 휴가중 해외여행 ..... 17-37
- 벌금형 확정된 자 대한 소급휴직 명령 가능 여부 ..... 24-41
- 기소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부 ..... 27-85
-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청원휴가 가부 ..... 28-5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지침 하달의 적법성 ..... 31-49

## 거. 위 임

- 의병전역권 위임 ..... 7-15

- 한·미통합 제1군단 부군단장의 권한 부여 ..... 8-31
- 시험실시 권한의 위임 ..... 11-22
- 휴직명령권의 위임 ..... 11-67
- 방위병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의 위임 ..... 16-27

## 너. 잡 칙

- 외국사관생도의 국내유학 ..... 7-18
- 하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규칙 제정 ..... 9-26
- 전사일자 기준 ..... 9-41
- 군무이탈자의 처리 ..... 10-47
- 국방대학원 입학자격 ..... 11-26
- 현역장교의 타군으로의 전군 ..... 12-122
- 국방대학원 교수 등의 신분보장 ..... 13-32
-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등의 시행에 따라 현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14-24
- 포상권자의 범위 ..... 15-42
-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시보의 실무수습 ..... 8-24
- 예비역장교의 현역장교로의 편입 ..... 11-59
- 국방부 직원(군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보직관리 ..... 12-57
- 전사편찬위원 및 촉탁의 임용 ..... 15-40
- 전사편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직급표시 ..... 15-58
- 탈영기록 정정 ..... 5-28
- 기소중지처분된 자의 보직 ..... 7-25
- 사관학교 등의 용어 정의 ..... 15-66
- 하사관 지원 입대자가 중사로 진급 계속 복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서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 15-67
- 예비군 중대장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겸직 ..... 16-36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한 처리 ..... 16-39
- 국군장의 요건 ..... 17-38
- 장기입원환자의 처리 ..... 20-69

○ 생사불명의 포로에 대한 사망구분 .....	20-83
○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자에 대한 군장학금 반납 면제여부 .....	22-18
○ 군 영내에 설치한 게임기의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경우 영업허가의 대상이 아님 .....	22-19
○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만료시 직무대행 가능여부 등 .....	23-12
○ 승진임용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23-27
○ 특수병과 장교의 당직근무에 관한 질의 .....	23-24
○ 군장학생 해임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반납 여부 .....	24-43
○ 부사관의 학군무원후보생 편입 .....	27-89
○ 부사관 근속진급의 시행일 .....	27-90
○ 대학장학생의 3사 입학시 '전학'의 적용 여부 .....	28-36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의 '학기말'의 의미 .....	28-4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 장기지원 가부 .....	28-57
○ 월남전 실종자(하사 안00) 법적 지위 .....	28-76
○ 사관학교 퇴교자 출신 부사관 법적지위 .....	28-94
○ 전역 후 재의무조사 .....	28-127
○ 육군3사관학교 1~3기 졸업생 학점인정 .....	29-19
○ 국방대부총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 .....	29-24
○ 사관학교 가입학자의 신분 .....	29-26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 .....	29-28
○ 군수형자의 일반교도소로 이송 .....	30-43
○ 군교수의 재임용심사 .....	30-85
○ 인사교류 통제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보직 기산점 .....	30-87
○ 영관장교의 임명장에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	30-96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반납처리 .....	31-11
○ '군 내 임신여성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	31-27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인의 범위 .....	31-38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 해촉 .....	31-52
○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자 등이 군인인지 여부 .....	31-74

-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 31-83
- 입대취소 또는 무효인 자의 신분 ..... 31-124
- 부사관 군장학생의 장학금 반납 ..... 31-131
-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 직무대리 가능성 ..... 31-145

## 4. 징 계

### 가. 성 질

-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상호간의 관계 ..... 1-54

### 나. 사 유

- 군인신분 취득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가능 여부 ..... 1-37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 8-45
- 징계사유 소멸시효 ..... 12-56
-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의 시효 ..... 9-23
- 징계시효의 기산점 ..... 21-75
- 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27-92

### 다. 종류·대상

- 카투사병의 징계 ..... 2-39
- 간부후보생의 징계 ..... 3-57
- 하사관후보생의 군인사법에 의한 징계 ..... 5-41
- 군속징계 ..... 7-33
-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한 징계권 행사 ..... 8-46
- 병의 강등 ..... 8-60, 12-133
- 소집중에 있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징계권 행사 ..... 10-110
- 징계유예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41

### 라. 징계권자

- 징계권자의 부인권 행사와 징계처분 ..... 2-51
- 하자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의 취소 등 ..... 3-66

- 징계위원회의 직무 ..... 3-79
- 타군 장병에 대한 징계 ..... 6-42, 7-35
- 위수사령관의 징계권 ..... 6-43
- 감독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범위 ..... 2-31
- 징계권자로서의 함정장의 정의 ..... 15-82
- 징계권자 자격 ..... 11-19
- 군인사법상의 징계권자 ..... 12-45
- 수도통합병원분원장의 징계권 및 표창권 존부 ..... 13-38
- 국방대학원 소속의 본부대장 및 본부중대장의 경징계권 행사 가능 여부 ..... 14-30
- 미8군 한국군 연락장교단장의 징계권 ..... 12-52
- 국방품질관리소장의 현역군인에 대한 징계 ..... 21-52
- 한국국방연구원에 파견근무중인 현역군인에 대한 징계 ..... 21-49
- 국방대학원소속 특정직 교수의 징계관할 ..... 23-8
- 수임군부대장이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25-29

#### 마. 징계위원회

- 군인사법 제51조의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성격 등 ..... 1-61

#### 바. 징계절차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수속 진행 ..... 3-85
-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 기간 중 징계절차 ..... 30-80
-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상태에서 징계혐의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 경우 징계절차 ..... 30-99

#### 사. 징계의 효력

- 직무대리자가 한 징계의 효력 ..... 5-39
- 징계처분의 취소 ..... 2-42
- 징계처분 취소 변경 ..... 3-82
-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질의 ..... 5-27
- 징계처분의 정지 ..... 7-20
- 징계처분을 받은 군속에 대한 면직가능 여부 ..... 11-71
- 전소속부대장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 ..... 5-27

- 징계조치기간의 경과와 징계의결의 효력 ..... 19-59
- 징계특별사면의 효과 및 현역복무부적합조사 ..... 26-71
- 징계유예 취소의 요건(군인징계령 제21조 제2항의 해석) ..... 29-29
-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의 직권취소 가부 ..... 29-31
- 혐의없음의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 29-32
-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가부 ..... 30-65

#### 아. 항 고

- 징계항고 심사결과 결정에 따른 취소 내지 감경에 있어서의 소급  
적용여부 및 경감조치시의 집행방법 ..... 1-38
- 국군징계항고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 2-56
-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임명문제 ..... 3-56
-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3-87
- 징계항고 업무처리 절차 등 ..... 4-39, 10-50
-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여부 미결정자에게 전역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12-36
-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 취소결정만 있고 종국적 판단이 없는 경우의  
재징계 ..... 18-54
-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 30-55

#### 자. 잡 칙

- 징계권자의 경감조치의 한계 등 ..... 3-63
- 징계처분취소와 현역복무 부적격자로서의 전역 ..... 15-47
- 징계위원회의 불문의결 가부 ..... 16-28
-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도 징계등 기록 말소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23-20
- 강등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예비역으로서의 계급이  
원상회복되는지 ..... 23-15
-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 26-59
- 특별사면 명단 누락자의 사면 가부 ..... 27-95
-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취소 권고의 효력 ..... 28-61
-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도 징계사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 29-30

- 군인징계령 제21조(징계유예) 해석 관련 ..... 31-47
-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 31-91

## 5. 군무원 인사

### 가. 임 용

- 전역되는 현역군인을 군속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면제 가능 여부 ..... 10-53
- 군속임용 전에 취득한 자격증 및 면허증을 가진 자를 군속 인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는지 여부 ..... 12-45
- 군속인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전직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의 의의 ..... 13-25
- 군복무당시의 중대장, 대대장의 경력을 군속인사법 시행령 소정의 행정직 군 경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 14-19
- 임용예정 군무원의 해당 직무분야 경력인정 ..... 21-76
- 현역복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의 군속임용 제한 여부 ..... 8-37
- 재임용된 군속을 퇴직전 다른 직군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승진시킬수 있는지 ..... 15-19
- 다른 직열로 변경한 경우의 승진경력 평정 ..... 15-23
- 직열을 무시한 군속 3급 이상의 보직관리 ..... 15-26
- “월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의 의미 ..... 15-89
- 군속채용의 치고 연령 ..... 15-85
- 신규채용과 군속의 강입 ..... 15-37
- 4급갑류 군속의 특별승진 ..... 15-31
- 군속인사법 제9조의 채용연령 및 정년규정 배제 여부 ..... 1-77
- 군속의 복무연한 서약서의 법적 효력 ..... 1-79
- 군속의 채용연령 ..... 2-34
- 정년 연장의 기준시점 ..... 15-84
- 전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 16-42

- 국군정신전력학교의 교수자격 ..... 19-48
- 일반학 담당교관의 개년 ..... 19-66
- 복무기간만료전 군인의 군무원 임용 ..... 20-85
- 군무원 임용결격사유발생시 처리 절차 ..... 24-50
- 별정 군무원의 상위상당계급 임용 ..... 25-30
- 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으로 조종군무원 임용가능 여부 ..... 26-64
- 군무원의 통합보직관리 ..... 27-98
-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27-101
-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 27-103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 ..... 29-6
- 군무원 승진예정자의 근속승진 심사대상 포함 여부 ..... 29-12
- 합동군사대학교 계약군무원의 채용 계약 승계 ..... 30-32
-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재채용시 선발대상 및 공고 ..... 30-77
- 군무원 전직시험 면제 여부 ..... 31-32
- 일반계약군무원 직위지정범위 확대 가능성 ..... 31-110
- 별정군무원의 상위 상당계급 재임용 가능성 ..... 31-149

**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시험**

- 근속특별채용시험 제한문제 ..... 4-52
- 근속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임용자격 ..... 15-55
- 일반사면과 군무원 특별채용 시험자격 ..... 16-41, 17-39
- 1급군무원 특별채용시 환산특례 적용여부 ..... 18-61
- 박사학위 소지 군인의 군무원 채용 ..... 20-87
- 4급 군무원 특별채용시 소령 이상으로 전역한 자로도 가능한지 여부 ..... 22-20
- 별정군무원의 특별채용 ..... 27-10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9-5
- 기능군무원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 시, 특별채용시험 면제  
가부 ..... 30-48
- 일반계약군무원(1급) 직위 지정 가능성 ..... 31-120

- 신원조회 및 보안적부 심의 결과에 따른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의 적법성 ..... 31-134

#### 다. 면 직

- 군속의 면직시기 및 해직된 군속의 계속근무 등 ..... 4-54
- 군속인사법 중 결격사유 ..... 5-38
- 서독에 과견된 간호군속의 현지 해임 가능 여부 등 ..... 14-26
- 군무원의 직권면직 ..... 17-43
- 임시군무원의 직권면직 ..... 17-45
- 해외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의 사직 ..... 17-46
- 군무원 임용시 작성한 의원면직서의 효력 ..... 19-68
- 약식명령이 청구된 군무원의 직위해제 ..... 21-58
- 군무이탈 중인 군무원의 직권면직 가능 여부 ..... 26-37
-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의 육아휴직과 의무복무기간 ..... 31-128

#### 라. 복 무

- 위탁교육중인 군속의 사표 제출 ..... 9-45
- 군속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한 면직 여부 ..... 10-33
- 교육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직급명칭 ..... 20-89
- 군무원에 대한 당직사령·당직사관의 임무부여 ..... 20-91
- 군무원 위탁교육시 의무복무기간 ..... 24-48
- 군무원의 병가시 허가권자 ..... 24-49
- 군무원의 당직편성 ..... 29-2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 30-51
-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 30-90
- 예비군지휘관 전보관련 근속년수 ..... 31-17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군무원의 범위 ..... 31-40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상 전보 및 인사교류 규정 해석 ..... 31-86

#### 마. 신분보장

- 군속의 병가 기한문제 ..... 2-49
- 국군외무사령부의 군무원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 ..... 17-41

- 임시군무원의 법적 자위 ..... 17-48
- 군무원을 강입할 수 있는 때로부터 4년 5개월 경과후 강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9-47
- 군무원 승진평정 대상인 교육훈련 과정 ..... 20-93
- 군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서 직급소지기간 ..... 21-35
- 행정직 군무원의 경력평정 ..... 21-60
-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신분 ..... 30-54
- 승진공석 추가 승인 가능여부 ..... 31-71
-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방부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31-80
- 기존 훈령과 배치되는 군무원 동일부대 지침 발령의 가능성 ..... 31-99

## 바. 징 계

- 군속의 지각 및 조퇴자 ..... 2-33
- 군속징계에 대한 임용권자의 승인 ..... 6-41
- 징계처분의 불이익기간 ..... 15-51
-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위직”의 개념 등 ..... 16-26
-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 18-63
- 군인복무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군무원징계 ..... 20-61
- 군무원의 정직기간 중 교육과견과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 31-89
- 고위공무원도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31-116

## 6. 보 수

### 가. 보수 및 수당

- 진급으로 진급 전보다 보수가 적어진 자의 호봉승급 ..... 11-75
-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임용된 장교의 진급시 호봉부여 ..... 13-36
- 진급시 호봉승급 ..... 12-71
-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호봉부여 및 호봉조정 후의 승급기간 계산 등 ..... 3-92
- 대위 8호봉이 진급한 경우 호봉부여 ..... 15-76
- 상사에서 준위로 진급한 자에 대한 호봉부여 ..... 7-37

- 강등되었다가 원계급으로 환원된 하사관에 대한 호봉부여 ..... 14-95
- 하사관 복무경력 있는 군법무관의 초임호봉 확정 ..... 21-83
- 예비역 지역중대장 상여금 지급 ..... 12-73
- 무죄선고받은 자의 미지급 상여금을 소급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3-98
- 전역일자 이후에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보수지급 ..... 2-60
- 사관학교 교관의 신분과 보수지급 ..... 1-92, 3-98, 4-67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미결중인 준사관 및 하사관 또는 복역중인 병에 대한 봉급지불 ..... 1-87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보수지급 ..... 4-168
-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장교의 봉급지불 ..... 8-63
- 전역 및 제적취소된 자의 봉급지불 ..... 1-81
- 구속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받은 자의 봉급지불 ..... 1-83
- 무죄판결이 확정된 장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봉급지불 ..... 5-49
- 전역 및 제적취소된 자의 봉급지불 ..... 6-37
- 전역취소 판결과 전역기간중의 제수당 ..... 15-198
- 군인의 특수근무수당 및 군속의 특수업무 장려수당 지급시기 ..... 15-200
- 부양가족의 범위 ..... 15-201
- 군수련전공의와 제수당 지급 ..... 15-205
- 학생군사교육요원에 대한 장기복무수당지급 ..... 15-206
- 사면된 징계처분에 의한 상여금 및 정근수당의 감액 ..... 10-208
-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한 자에 대한 제수당 지급 ..... 15-209
- 여군장교의 가족수당 지급 ..... 9-24
- 군인 피복수당 지급 ..... 3-96
- 육군기술군속의 수당지급 ..... 3-97
-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장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급 ..... 7-40
- 군법무관 수당 지급 ..... 8-67
- 법무병과로 전과한 군법무관이 군법무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2-14
- 군법무관의 자격상실 및 수당지급 여부 ..... 3-92
- 공무원의 위원직 수당의 합법여부 ..... 5-53

- 출동 함정에 근무하는 병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 14-98
- 함정근무수당 지급 ..... 1-92
- 휴직된 군속의 조정수당 지급 ..... 11-77
- 교관교재 연구수당 수급권자 ..... 16-50
- 구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4의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법무관”의 의미 ..... 16-51
- 전문·기술분야 종사 경력자의 병과전환과 호봉재획정 ..... 16-52
- 경력을 합산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호봉재획정의 시기 절차 ..... 16-53
- 관사입주 장병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가부 ..... 16-55
- 군인 군무원의 제안제도와 특별승급 ..... 16-56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범위 ..... 16-58
-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시기 ..... 16-59
-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소멸시효 기간 ..... 17-55
- 여자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범위 ..... 17-57
- 전사편찬위원회 위원에 대한 가족수당 등 지급여부 ..... 17-59
- 제적된 군인에 대한 보수지급 기한 ..... 17-60
- 입영교육중의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보수지급 ..... 18-67
- 직계존속과 주거가 다른차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 18-72
- 가족이전비 지급제외 ..... 18-73
- 영국교육기관에 파견된 조종사와 재외근무수당 ..... 19-79
- 육군사관학교 5급 사서직 군무원에 대한 사서수당 ..... 19-83
- 군사법원 서기 및 군검찰 서기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 20-101
- 비행휴관정된 조종사에 대한 항공수당 지급 ..... 20-103
-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18-74
- 원계급복귀하여 전역한 장교의 퇴직급여산정 ..... 20-106
- 임시고용원의 퇴직금지급 여부 ..... 19-73
- 임시군무원 퇴직금 산정기준 ..... 19-77
- 여군병과 폐지로 전역하는 여군병과장과 명예전역수당 ..... 19-75
- 19년 6월 근속후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자와 명예전역수당 ..... 19-81
- 명예전역수당 지급 위한 병과장의 근속기간 ..... 20-105

○ 명예전역수당 지급 여부 .....	21-79
○ 군인에 대한 자문비 지급 .....	20-99
○ 주택수당에 관한 문제 .....	22-21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의 군인 근속가봉과 관련한 문제 .....	22-22
○ 현역 군인 등에 대한 감수비 지급여부 .....	22-23
○ 군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 .....	22-24
○ 장교로 전역한 후 다시 군법무관이 된 자에게 군법무관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전역전 복무기간의 산입여부 .....	22-25
○ 재심무죄인 자가 복직된 경우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73
○ 명예전역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전역 수당 지급관련 질의 .....	23-30
○ 귀환 국군포로의 봉급관련 질의 .....	23-32
○ 임기제진급 장군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23-33
○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번역료 지급 가능여부 .....	23-34
○ 퇴직한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	23-36
○ 기술수당지급대상자 관련 질의 .....	23-38
○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인보수법상 보수지급 대상인지 .....	23-41
○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명예진급만 한 상태에서 명예전역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	23-42
○ 봉급인상률 차등적용 가능 여부 .....	24-73
○ 교관이 다른 부대로 진출한 경우 교관연구 조성비 지급 가능 여부 .....	25-58
○ 헌병수사관의 위장피복비 증액 가부 .....	25-70
○ 병 복무기간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의 차등 지급 가능 여부 .....	26-85
○ 군법무관수당 지급 요건인 “임관 후 3년”의 의미 .....	27-119
○ 특수경력직공무원 근무 중 파면된 자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7-122
○ 학군무원후보생의 보수 .....	27-126
○ 명예전역자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	28-120
○ 준사관의 퇴직금 산정방법(부사관임용 취소시) .....	28-122
○ 선고유예시 잔여퇴직금 지급 .....	28-124

-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공무상 요양비 ..... 28-133
- 해외 파병장병 수당 ..... 28-139
- 피복비 소급 지급 가부 ..... 29-38
- 군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심사 전 사망한 경우 수당지급 가부 ..... 29-40
- 군인군속급식규정상 현물지급의 의미 ..... 29-45
- 항공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9-46
- 보수 분할지급 여부 ..... 29-50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 30-124
- 기소휴직 후 무죄 선고로 복직된 자의 봉급 차액 지급 여부 ..... 30-130
- 휴직(기소)중인 사관생도의 급여 지급 여부 ..... 30-138

## 나. 보 칙

- 집체교육기간중 임금 지불 ..... 7-42
- 파면 등으로 제적된 하사 등에 대한 전역급여금 지급 ..... 2-58
- 장기복무 해임과 동시에 하사로 전역되는 자의 전역급여금 지급 ..... 2-60
- 생존이 확인된 실종자, 행방불명으로 제적된 자의 봉급 및 연금지급 ..... 6-35
- 포로가 된 군인의 대한 봉급지급 ..... 16-49
- 관할관 확인조치에 의한 형집행 면제의 경우 급여액 지급 ..... 9-30
- 군인의 호봉승급 기준일자 ..... 17-61
-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경력환산기준 ..... 17-64
- 임용전 경력의 복무기간환산 ..... 18-68
- 호봉확정시 잔여기간의 차기승급시 반영 ..... 18-70
- 민간인 이발사 근무기간의 기능군무원 호봉합산 ..... 20-95
- 법무장교(장기) 초임호봉 산정 방법 ..... 28-116
- 부사관 임용취소시 준사관 호봉산정 ..... 28-130
- 재임용에 따른 전 신분의 군 교육기간 경력인정 ..... 30-72

## 다. 기 타

-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소관장관의 해석 ..... 1-86
- 국내여비규정상의 이전료 및 가족 이전료의 지급 해당범위 ..... 3-95
- 근무연습 소집에 의한 동원훈련중인 자에 대한 급여금 지급 ..... 10-57

- 전지사변 등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보수의 지급 ..... 10-60
- 퇴교자 변상금 ..... 12-75
- 사관생도 휴가비 지급 ..... 13-97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대상 ..... 14-97
- 과월 선급금 면세 적용 ..... 7-41
- 잡급직원의 퇴직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 15-210
- 잡급직원 재직기간의 기산 근거 ..... 15-211
- 잡급직원의 처우 등 ..... 15-202
- 사관후보생 등의 교육훈련중 퇴학과 상여급 등 지급 ..... 16-47
- 육군복지근무지원단 근무원의 경력인정 여부 ..... 17-53
- 호봉의 소급승급 신청과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 21-112
- 순항훈련중인 사관생도 여비지급 급류 ..... 21-117
- 5.18사건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부터 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지 ..... 23-29
- 퇴직자가 복무중 사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지 ..... 23-35
- 병사를 위한 국가의 보험 가입 가능여부 ..... 23-103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환수와 소멸시효 ..... 26-80
- 군장학금 반납면제신청 기한의 법적성격 ..... 28-105
- 망자를 대리한 연금 소급 청구 가부 ..... 28-108
- 상이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8-109
- 훈련중 보충역 공단부담금 부담 여부 ..... 28-112
- 한남대 위촉강사 강사료 수령 가부 ..... 29-47
- 개인회생절차 관련 전세자금 회수가부 ..... 29-48
- 군 발행 간행물에 투고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부 ... 30-127

## 7. 병역

### 가. 총칙

- 6년 이상의 자유형 선고와 병역의무 ..... 15-136

○ 역종 변경 .....	6-69
○ 예비역 하사관을 제1국민역으로 역종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16-76
○ 제적자의 역종 부여 .....	6-71
○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자격 있는 자의 예비역 장교 편입 및 복무기간 .....	16-79
○ 제대 후에 복무할 역종 .....	1-141
○ 국토건설원의 역종 관리 .....	7-96
○ 역종 구분 .....	10-39
○ 이중병적자 처리 .....	2-40
○ 학도 입영군사훈련필자에 대한 병적사항 등 .....	2-96
○ 이중병적자의 병적정리 .....	4-50, 6-74, 7-87, 14-61, 15-166
○ 사관학교 중퇴자의 병적관리 .....	6-62
○ 병적누락자의 처리방안 .....	6-68
○ 제적자의 병적관리 .....	7-100
○ 병적정정 .....	10-76
○ 역종정정 .....	10-38
○ 입영전 및 입영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예비역 군종장교후보생의 병적관리 .....	10-85
○ 해외이주 허가 취소와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 .....	15-150
○ 여자 현역복무지원자 지원 취소 .....	5-73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의 전역시 역종부여 .....	2-88, 6-79
○ 학도의용군으로 종군한 자의 예비역 편입 .....	6-63
○ 주재국 거주 영주권 소지자의 병역의무 .....	15-145
○ 외국시민권 취득과 병역의무 .....	2-90
○ 외국국적 취득과 병역의무 .....	10-81
○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국적 상실시기 .....	16-75
○ 하사관이 장교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경우 병적처리 .....	1-140
○ 현역병 입영영장이 취소된 제1보충역의 복무연차 .....	7-85
○ 단기하사 복무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	19-101
○ 육군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	20-252
○ 전투경찰대설치법상 현역병으로 징집결정된 자의 범위 .....	20-253

- 의무경찰에 대한 해·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적용 ..... 20-255
- 국정회복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 21-249
- 인턴과정 수료후 군전공의요원시험에 합격한 자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 21-251
- 군의·치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전 신체검사 및 역종분류 ..... 22-37
- 공익근무요원을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활용할 수 없음 ..... 22-38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소년범)에게 병역의무 부과시 적용할 형기 ... 23-43
- 임용취소된 하사관의 보충역 편입 여부 등 ..... 23-47
- 미호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여부 ..... 24-98
- 개정 병역법 제71조의 적용범위 ..... 25-74
- 사법시험합격자를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5-86
- 신학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이 군중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 25-88
-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 인정 기준 ..... 25-89
- 국외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병역법상의 병역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6-117
- 보충역에 해당하는 퇴교자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면제 가능 여부 ..... 29-35

#### 나. 징병검사

- 징집 입영한 자의 체적과 징병검사 ..... 7-90
- 신체검사 체격등위 판정 ..... 11-103
- 현역복무지원과 종전의 징병처분의 효력 ..... 2-95
- 국방부 내규인 신체검사규칙의 성격 및 효력 ..... 16-77
- 개정된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의 적용시점 ..... 21-257
-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될 신체검사규칙 ..... 23-4
- 군병원정밀신검 의뢰시 군병원장의 신체등위판정권한 ..... 24-97
- 장병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재검 ..... 25-84

#### 다. 현역입영

- 군대의 영의 개념 ..... 2-104

- 현역병의 사법연수원 입교 가능 여부 ..... 15-163
- 현역 복무기간 연장 요건으로서의 전시·사변의 개념 ..... 2-81
- 복무기간 기산시기 ..... 1-143
- 입·제대 일자의 군복무기간 산입 ..... 15-132
- 2중병적자의 복무기간 합산 ..... 2-112
- 방위병 복무기간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 ..... 15-133
- 사관학교 2년 중퇴자의 현역 복무기간 계산 ..... 3-122
- 사관학교 후보생 교육기간의 복무기간 환산 여부 ..... 8-103
- 현역병 입영처분의 철회가능여부 ..... 17-69
-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었다가 현역으로 편입된 자의 병적상 입대일자 ..... 19-87
- 금오공고 퇴교자의 미회수 변상장학금의 회수책임 및 소멸시효 ..... 22-39
- 병역법시행령 제28조가 병역법 제1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22-40
- 병무비리로 인한 보충역처분 취소시 복무기간 ..... 24-100
- 보충역 입영대상자가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현역병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82
- 입영신체검사 후 의무사관후보생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27-109

## 라. 소 집

- 보충역과 균형법의 적용 ..... 6-87
- 보충역의 방위소집 활용 ..... 10-86
- 단순 노무제공을 위한 방위소집 ..... 15-64
- 방위병 과건에 관한 질의 ..... 13-60, 14-31, 16-86
- 방위병의 개인화기 ..... 15-144
- 방위병에 대한 신체검사와 소집해제 ..... 14-72
- 해외이주가 허가된 자의 방위소집해제 ..... 14-74
-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전가족 해외이주와 방위소집해제 ..... 16-90
- 방위병의 재영복무 ..... 15-161
- 부상방위병의 가료비 지급 ..... 16-87
- 근무연습 소집자에 대한 조발시행 여부 ..... 10-90
- 근무연습 소집의 근거법규 ..... 15-155
- 근무소집중 구속된 자의 근무소집 해제 ..... 1-135

- 근무소집 기피자의 재소집 ..... 3-119
- 근무소집 연기사유 ..... 5-75
- 근무 또는 연습소집중에 있는 자를 대간첩작전에 종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 ..... 5-90
- 외항선 선원의 근무 및 연습소집 면제 ..... 7-72
- 근무연습 소집과 휴직 등의 관계 ..... 15-152
- 전문분야 예비역 장교의 소집 ..... 11-49
- 전시 등에 있어서 법무장교 소집 ..... 7-83
- 특수직 위관 충원 ..... 5-87
- ROTC 훈련생의 보충소집 ..... 6-65
- 예비역 하사관의 전시 보충소집 ..... 15-134
- 전시 현역복무를 마친 병의 충원소집 ..... 8-102
- 전투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지 못한 귀휴병의 소집 ..... 10-82
- 중복된 신분의 정정방법 및 교육소집을 병역법에 의한 소집으로 볼 것인지 여부 ..... 13-24
- 방위소집 면제자에 대한 전시 방위소집 ..... 15-147
- 예비역 장교후보생 신분으로 군병과학교에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 15-62
- 근무연습 소집에 있어서 “입영기일”의 의미 ..... 16-81
- 교육소집 불참과 보충교육 ..... 16-82
- 긴급사태 발생시 동원령 선포 이전의 소집 및 동원 ..... 16-83
-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방위병의 구속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17-72
- 방위병의 취업가능 여부 ..... 17-75
- 방위소집중인 자의 특수전문요원 교육과정 편입 ..... 18-105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사유 ..... 17-82
- 흠 있는 입양과 보충역 편입처분의 효력 ..... 17-83
- 전시근무소집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처우기준 ..... 17-86
- 국방부 근무 방위병의 보호방위병 소집해제 ..... 21-253
- 면사무소에 파견근무중인 방위병에 대한 지휘·감독권 ..... 21-265
- 방위제도 폐지 후의 장기대기 방위병에 대한 방위소집 면제처분 ..... 21-276
- 보충역이 훈련소집 중 공무상 입원시 소집훈련기간에 포함 여부 ..... 29-34

## 마. 병역의무의 종료

- 35세 초과된 입영기피자의 징병의무 ..... 7-94
- 단기복무하사에서 중사로 특진된 자의 전역후 예비역 복무기간 ..... 8-95
- 병으로 입영하여 하사관으로 특진된 자의 예비역 복무기간 ..... 15-182
- 현역병의 구속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17-73
- 연령정년규정의 개정과 예비역 병역의무 종료시점 ..... 18-100
- 단기사관학교에서 퇴교된 자의 교육기간과 병의 복무기간 ..... 19-89
- 장교, 준사관, 하사관이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는지 여부 ..... 19-94
- 제한연령초과로 인한 의무사관후보생의 제적 ..... 20-243
- 장기근무이탈자의 군인 신분 보유 여부 ..... 22-41
- 전시특례상의 병역의무 종료시점 ..... 24-103
-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투경찰의 제2국민역 편입 가능 여부 ..... 24-104

## 바.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 전투경찰대원의 신분 ..... 10-79
- 전투경찰대원 추천자의 기초군사훈련중의 신분 ..... 15-92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3항 “징집이 결정된 자”의 의의 ..... 13-147
- 해양경찰대원의 의병 전역 ..... 15-158
- 석탄광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보충역 편입 ..... 11-101
- 군수업체 지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병역특례의 효과 ..... 13-61
- 특례보충역의 해외이주 ..... 15-154
- 방위병의 소집기피나 복무중 이탈이 복무기간 단축혜택에 미치는 영향 ..... 15-160
- G.P 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의 절차 ..... 15-165
- 사관학교 중퇴자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의 성격 ..... 19-97
- 장남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분가한 경우의 병역면제 ..... 19-99
- 1년 이상 국내 체재한 국외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등 ..... 22-42
- 가족 이민과 공익 근무 요원 소집해제 ..... 32-45
-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처분병경시 적용 부령 ..... 25-78

## 사.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재학자 징집연기 ..... 6-75
- 휴학자의 복학과 징집연기 ..... 1-137
- 2인 이상 전사로 인한 징집연기 ..... 6-57
- 가사에 의한 징지연기 ..... 7-98
- 가사사정으로 인한 징집연기 및 복무단축 ..... 5-77, 9-83
- 부양능력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 6-67
- 병역미필자로서 자수 신고한 자의 징집연기 ..... 7-97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의 징병검사 연기 현역 입영 ..... 9-95, 8-98
- 예비역 무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장의 징·소집 연기 ..... 9-86
-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입영 연기조치의 위법 여부 ..... 2-111
- 병역법상 독자의 해석 ..... 2-113, 5-63, 5-68, 5-70, 5-86, 6-89, 7-93
- 부재선고와 독자여부 ..... 16-89
- 법의 부자와 현역 복무기간 단축 ..... 3-127
- 무죄판결과 복무기간 단축 혜택 제한 ..... 5-82
- 독자·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인한 현역기간 단축 ..... 7-70, 7-77, 7-78
-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예비역 하사관의 전역 ..... 15-137
- 전투경찰 순경의 복무기간 단축 ..... 12-107
- 방위소집해제 사유로서의 전가족 해외 이주 ..... 15-141
- 방위소집해제 사유로서의 생계유지 곤란 ..... 15-143
- 병역법상 전 가족의 정의 ..... 7-101, 11-99
- 파월사병의 의가사 전역 ..... 3-123
-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면제 ..... 12-120
- 군기술 위탁생 출신 하사관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면제 ..... 14-66
- 2대 이상 독자의 방위소집 면제 여부 ..... 6-59
- 특수전역 ..... 6-60, 6-64, 7-92, 8-99, 9-93
- 현역병의 특수전역시 역정 판정의 증거법 ..... 7-80
- 현역장교 병적 편입자의 가사사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15-148
- 방위병의 소집기피나 복무중 이탈이 복무기간 단축혜택에 미치는 영향 ..... 15-160
- G.P 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의 절차 ..... 15-165

- 사관학교 중퇴자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의 성격 ..... 19-97
- 장남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분가한 경우의 병역 면제 ..... 19-99
-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 ..... 29-33

**아. 특 전**

- 재영기간중 직장 보장 ..... 1-132
- 입영기피후 자수한 자의 고용원 임명 ..... 2-84
- 병역미필자의 해고 ..... 2-91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자의 장교 임용문제 ..... 3-118
- 병역의무자의 공무원 임용 ..... 6-56
- 1928년 출생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취직제한 등 ..... 2-89
- 군기술위탁생의 임용과 휴직기간 ..... 15-156
- 학적보유가 가능한 복무형태 ..... 15-157
- 은행원 승진시험자격과 병역법 제76조(불리한 처우금지)와의 관계 .. 7-30
- 병역기피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처벌 ..... 9-88
- 병역기피로 인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임용제한 ..... 11-108
-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처분 금지 ..... 13-64
- 군복무후 복학보장 ..... 18-109
-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의무종사와 권익보장 ..... 18-110
- 교사경력산정시 병 및 하사의 복무기간 합산 ..... 20-60

**자. 병무행정**

- 병역미필자 해외출국시 신체검사 기준 ..... 7-84
- 행방불명자 처리 ..... 1-133, 10-88, 12-126
- 군번부여 전 사망자의 처리 ..... 2-85
- 병무행정 수행상 필요한 경찰서장의 협조의무 ..... 3-125
- 병적확인서 발급 ..... 6-66
- 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 6-83
- 병역기피사실 확인 ..... 7-66
- 병무심사위원회 성격 ..... 7-88
- 특수현역면제자의 증명서 발급 ..... 8-96

- 무관후보생의 해외여행 ..... 13-59
- 병역확인 ..... 2-86
- 지정의료시설 운영 ..... 5-81
- 징병처분변경원 처리 ..... 7-91
- 장교에 대한 6년 이상 형 선고시 병적 ..... 18-79
- 수개선고형의 형기합계가 6년 이상인 경우의 병적 ..... 18-81
- 집행유예 선고받은 현역병의 보충역 편입 ..... 20-237
- 국외여행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17-90
- 병역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의 효력 ..... 20-248
- 예·체능분야의 특기자의 국외여행 허가 ..... 19-96
- 국외이주로 보충역 편입되었다가 복무중인 자에 대한 보충역 재편입 ..... 20-245
- 국외이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 및 재취소 ..... 21-262
- 출국, 입국행위를 되풀이한 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 20-246
- 국외여행중에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보증인  
(모에 대한 친생자 관계에 대하여 소송중)의 대체가능 여부 ..... 22-43
- 병역법시행령상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의 의미 ..... 22-44
-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개별입영 도중 사망한 사람의 신분 ..... 23-46
- 군종장교 임용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 25-76
-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 26-118
- 보충역 교육소집기간 조정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27-111
- 무관후보생의 전역처분 ..... 28-98
- 공군사관생도 심신장애전역 판단 기준 ..... 28-101
- 신체검사시(-에이즈검사-) 동의 여부 ..... 28-102
- 병무청의 과오로 현역병 입대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 30-111

**차. 별 칙**

- 대리로 입대한 자의 신분 및 처벌 ..... 1-146, 7-65, 9-92
- 병역법상의 과태료 ..... 1-194
- 국외여행 병역의무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87
- 고시합격자의 징·소집 불응에 대한 고발조치 ..... 2-109
- 입영기피죄 성립여부 ..... 4-70

- 병역기피자 공소시효 ..... 5-84
- 수호의 징병검사 불응과 죄수 ..... 5-91
- 병역법위반죄(징병검사기피 및 입영기피)의 성립여부 ..... 6-72
-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 11-113
- 병역법상의 과태료 결손처분 ..... 14-75
-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고발 ..... 6-76
- 재복무지원자의 입영불응 ..... 5-72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중국적자의 미귀국시 처벌 ..... 18-114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후 재복무통지에 불응한 자의 처벌 ..... 21-279
-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지정기일’의 의미 ..... 22-45
-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24-106
- 귀국보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가능한지 여부 ..... 25-73
- 모집에 의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권 행사 여부 ..... 25-80

## 8. 향토예비군

### 가. 임 무

- 예비군 지원자의 복무의무 ..... 6-83, 17-93
- 직장예비군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김포공항 경비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19-110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 가능성 ..... 31-122

### 나. 조직과 편성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연령계산법 ..... 8-93
- 직장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의 범위 ..... 9-91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의 범위 ..... 15-177
- 수형인에 대한 향토예비군 편성과 대원신고의무 ..... 15-189
- 수임군부대장의 예비군지휘관 임명행위의 효력 ..... 16-94
-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 하사관의 직책변동과 신분 ..... 16-96
- 예비군 지휘관 임명행위의 효력 ..... 18-119

- 직장예비군부대장의 보직발령순위 ..... 20-260
-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05
- 직장예비군 부여단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퇴직규정 적용 ..... 20-263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과 직원정년의 관계 ..... 20-265
- 향토예비군설치법상 거주지의 의미 ..... 20-257
- 서울시 지하철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 20-259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9-7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 ..... 29-8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정년 ..... 29-10
- 직장예비군의 통합 편성 ..... 29-18
-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동일계열 진보 ..... 29-20
- 통합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본부직원의 소속 ..... 31-36
- 퇴역여군의 역중변경 가능성 ..... 31-161

#### 다. 동 원

- 향토예비군 동원절차 ..... 5-64
- 향토예비군 동원 ..... 6-85
- 예비군동원 대상자 ..... 6-88
- 관할 육군사단장의 명의를 아닌 예하단위 부대장이 발행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의 효력 ..... 9-78
- 향토예비군 대원의 동원유예사유 발생시 그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9-80
- 군부대의 군속에게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9-82
-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자의 범위 ..... 9-87
- 국외 영주권을 얻은 자(병역면제처분자)의 예비군 편성 ..... 9-87
-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이(경찰서 관할하의) 동원훈련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12-142
- 동원훈련 보류대상자의 범위 ..... 15-179, 15-180

- 형집행정지와 예비군대원의 동원 및 훈련연기 사유 ..... 15-190
-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절차 ..... 15-192
- 향토예비군 동원 요건 ..... 16-93
- 병력동원훈련 소집불참자에 대한 훈련재소집 ..... 20-256
-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 ..... 24-108
- 작전동원업무의 이관 ..... 27-113

## 라. 훈 련

- 직장에 고용된 향토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 시간과 고용기관의 근무시간 ..... 9-73
-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 9-139
- 형집행정지중인 자의 예비군교육훈련부과 ..... 17-94
- 국민투표기간중의 향토예비군훈련 ..... 17-96, 18-122
- 예비군훈련면제기간중의 회사출근의무 ..... 17-97
- 직장예비군에 대한 비근무시간의 교육훈련 ..... 17-98
- 국적회복자에 대한 국적상실전 훈련의무부과 ..... 18-121
- 소집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훈련과 병역법상의 교육소집 ..... 19-112
- 사법연수생이 방침보류대상인지 여부 ..... 31-77

## 마. 소집통지서

- 예비군 대원의 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 발부권자 ..... 8-100
- 예비군훈련 교육소집통지서 발급의 위임 ..... 16-95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제3항의 ‘거주지 이동’의 의미 ..... 19-108
-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앱)을 통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발송 ..... 31-108

## 바. 무 장

- 어선단 예비군의 무장 ..... 7-67
- 예비군이 무기를 휴대하여 국가중요산업시설을 경비할 수 있는지 여부 ..... 12-137

## 사. 원호 및 가료

- 임무수행중인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의료기관 지정 ..... 11-109
- 동원 또는 훈련중이 아닌 예비군의 사고에 대한 보상 ..... 16-100

- 사망한 대리훈련자가 원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16-64
- 예비군대원이 스스로 무단함 가료비에 대한 보상여부 ..... 17-102
-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가료비의 부담 ..... 17-105
- 향토예비군이 임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경우의 비용부담 ..... 19-107
- 예비군중대장이 교육중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7-107
- 전투경찰 순경으로 예비역에 편입된 자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원자격 유무 ..... 17-178
-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 30-117
- 예비군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의 각 지급기관 ..... 31-189

#### 아. 직장보장

- 비번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당일 근무를 계속시키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9-81, 12-139
- 고용주의 동원훈련소집중에 있는 향토예비군 대원에 대한 일당 지급 ..... 10-95
- 동원 또는 훈련의 경우 임금 및 직장 보장 ..... 13-87
- 일용인부도 피고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15-184
- 예비군훈련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불지급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여부 ..... 16-99
- 직장예비군대원의 입원가료기간중 임금지급여부 ..... 17-100
- 예비군훈련 중 부상 후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받은 경우  
휴업보상금 지급 가부 ..... 31-167

#### 자. 실비변상

- 집체교육중인 자의 임금지불 여부 ..... 6-55
- 일일노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 임금지급여부 ..... 13-88
- 비근무시간중의 예비군교육훈련과 임금지급 ..... 18-123

#### 차. 병역법과의 관계

- 방위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한 향토예비군 훈련실시 ..... 9-71, 10-96

#### 카. 권한의 위임

-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 13-91
- 무기, 탄약 등 관리유지권 위임 가능 여부 ..... 14-89

## 다. 벌 칙

- 향토예비군 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 ..... 9-85, 11-117
- 향토예비군의 거주지 이동 불신고에 대한 처벌 ..... 13-89
- 교육시 예비군대원의 복장위반과 형사처벌 ..... 16-97
- 직장예비군대원이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가능 여부 ..... 17-108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거절 행위의 처벌 근거 ..... 17-109
- 훈련을 받지 아니한 향토예비군대원의 처벌 ..... 18-124
- 동원훈련중 군부대를 이탈한 예비군에 대한 처벌 ..... 21-274
-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훈련통지서 전달의 효력 ..... 24-112

## 파. 기 타

- 전사한 향토예비군의 고진급 및 제적 ..... 6-81
- 예비군 대원의 교육소집을 위한 소집통지서 발부권자 ..... 8-100
- 향토예비군 중대자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시 사퇴여부 ..... 9-140
- 향토예비군 중대장의 퇴직금 청구 ..... 15-181
-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성질 ..... 15-186
- 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협의회와의 관계 ..... 24-111
- 향방동원된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25-85
-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 관련 감사의 주체 ..... 31-57
- 직장예비군대대장의 복무종료(근속기간, 정년) 관련 ..... 31-142
- 예비역 간부 진급에 있어 퇴역 연령 기준일 ..... 31-159

## 9. 학생군사교육

- 학적보유자의 인사처리 ..... 10-76
- 학생군사교육 이수자 재영기간 단축 ..... 10-77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임관되는 예비역 장교의 임용시기 연장 ..... 10-78
- 학생군사교육과 방위병 및 전투경찰대원 복무단축 ..... 15-131
- 전투해경요원의 귀휴기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 제3항의  
재영기간단축적용 여부 ..... 12-112

○ 교육법시행령 제150조 제3항의 소급적용 .....	12-114
○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2부에 재학중인 학생의 예비역 장교후보생 지원 및 선발 .....	12-117
○ 일반군사교육 대상자 중 심신장애자의 처리 .....	13-29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동 시행규칙 개정(학적변동학생처리) 이후 문제점 .....	12-128
○ 일반군사교육 학점 취득 .....	12-131, 13-111
○ 일반군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제출처 .....	13-112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9조 복무단축 기간 .....	13-113
○ 학생군사교육의 재수강 .....	13-114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의 의의 .....	14-113
○ 예비 역무관의 보충소집 연령 .....	14-115
○ 군의료시설이 학생군사교육령의 시행규칙 소정의 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	14-115
○ 예비역 무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현역 장교로 임용될 경우 복무기간의 단축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118
○ 사면으로 복학된 자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자로서의 복무기간 단축혜택 .....	15-218
○ 군사원호대상자의 범위 .....	15-220
○ 군사교육 이탈자의 범위 .....	15-222
○ 정학처분과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관계 .....	15-223
○ 학군무관후보생 교육용 무기의 관리·수송책임자 .....	20-145
○ 여학생 ROTC 장교 선발시 의무복무기간 .....	25-75
○ 군장학생 선발취소 .....	25-129
○ 여자 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의무복무하는 기간 동안 교원으로 임용을 유예하거나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30-89
○ 공군장학생 출신 조종장교의 장학금 반납 여부 .....	30-114
○ 군장학생과 군사교육 .....	31-25

## 10. 연 금

### 가. 총 칙

- 전몰군경의 정의 ..... 1-115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범위 등 ..... 1-125
- 순직해당 여부 ..... 2-65
- 군인연금법상 공무원의 개념 ..... 8-73, 9-57, 3-104
- 기여금 반환의 이자계산 ..... 6-49
- 향토예비군의 지역중대장, 임시고용원의 군인연금 수급권 ..... 8-75
- 애국청년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도 전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8-89
-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재정의 성질 ..... 15-124
- 공무원재직기간의 군복무기간 통산여부 ..... 17-113
-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군복무기간 ..... 17-114
-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18-129
- 미군부대 고용원 근무경력과 공무원 경력 ..... 19-46
- 전공사상처리기준 ..... 17-120
- 장관급 장교에 대한 전·공상심사위원회 구성 ..... 20-107
- 파면되어 제적된 자의 공상해당 여부 ..... 18-134
- 불명예 전역자의 전공상 해당여부 ..... 18-136
- 전상해당자의 전역후 사망시 전몰해당여부 ..... 18-138
- 군인연금법의 적용시기 ..... 19-117
- 양 부모도 군인연금법상 직계존속인지 여부 ..... 19-121
- 사우디주재 무관과 전투종사기간 ..... 19-122
- 추서진급자의 보수월액결정 ..... 20-125
- 군인연금법의 개정과 휴직 또는 정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21-91
- 군인연금법상 유족인 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폐질상태의 기준시점 ..... 21-127
- PKO 파견요원의 근무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기간 ..... 21-135
- 하사관의 준사관후보생 교육기간중 기여금을 징수하였는바, 그 기간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22-27

- 퇴역연금 지급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4년이 경과된 자의 상이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 23-40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 24-62
- 국정상실자의 특례급여청구권에 관한 질의 ..... 24-66
- 소급기여금 사후징수에 관한 질의 ..... 24-71
- 임시계급진급자의 퇴직급여 산정기준 ..... 24-77
- 군인연금법상 유족승계 가능 여부 ..... 25-60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 25-61
-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자 ..... 26-87
- 국가패소에 따른 재처분시 소멸시효 주장 가부 ..... 31-169

## 나. 급 여

- 연금소급지급 ..... 11-83
- 연금수급권의 압류 ..... 1-102, 3-106
- 군인연금법상 구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의 시효 ..... 1-99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의 공무상 질병, 부상 및 사망 ..... 1-104
- 연금법 중 재정업무규정 ..... 2-74
- 유족이 없는 군인사망급여금의 사용 ..... 9-38
- 군인연금 환불에 있어서의 이자가산 여부 ..... 13-52
- 강등된 자가 다시 진급된 경우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 1-98
- 상사로부터 준위로 진급과 동시에 전역된 자의 연금지급 ..... 1-100
-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 ..... 10-67, 11-94
- 무죄선고와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계산 ..... 15-110
- 무관후보생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산입 가능 여부 ..... 13-47, 5-59
- 연금의 지급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처리 ..... 18-130
- 6·25 당시 예비역 사관으로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 산정 ..... 21-123
- 공상관련 비보험급여부분 지급방안 ..... 24-64
- 군인 연금 급여종류 변경 신청 ..... 31-192

#### 다. 퇴역연금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2-74
- 재심판결에 의하여 무죄확정된 자의 퇴직연금수령권 여하 ..... 13-51
- 30년 이상 복무자의 퇴역연금 지급률 ..... 15-122
- 연금지급정지기간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급받은 퇴역연금을 지정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19
-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 20-118
- 실종선고취소된 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여부 ..... 22-28
- 퇴역연금의 재정시 처분청의 잘못으로 복무기간을 일부 누락시킨 경우 직권정정할 수 없음 ..... 22-29
- 군인연금수령자의 유죄확정시 기지급연금의 환수가부 ..... 22-30
- 퇴역연금 소급지급시 이자가산여부 ..... 22-31
- 명예전역수당 산정시 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63
- 퇴직 후 소득 발생자의 연금정산 ..... 28-135

#### 라. 퇴직일시금

- 월의 중간에 진급과 동시 전역된 경우 퇴직일시금 지급 ..... 1-113
- 퇴직일시금 지급 해당여부 등 ..... 2-61
-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환경고용원의 퇴직금 산정 ..... 21-98
- 명예전역수당 지급시 현역정년의 개념 ..... 24-68
- 원계급복귀 전역자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질의 ..... 24-75
- 진급일자에 전역한 자의 최종보수월액 결정 ..... 29-42

#### 마. 상이연금

- 전상자가 아닌 공상자의 상이군인연금 해당 여부 ..... 1-122
- 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및 부활 ..... 17-115
- 퇴직일시금 지급받은 자에 대한 상이연금지급 ..... 18-132
- 하사관후보생 교육중 상이를 입고 임용된 자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되는지 여부 ..... 22-32
- 군인연금법상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의 의미 ..... 24-57

- 상이연금지급의 판단 기준시점 ..... 24-58
- 상이연금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폐질 정도가 악화된 경우  
상이등급개정신청을 하여 다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5-49
- 상이등급 개정 신청시 반드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5-66
- 만기전역자의 상이연금청구 ..... 27-128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 ..... 30-120
-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한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 31-184

## 바. 유족급여

- 유족연금의 상계가능성 ..... 13-48
- 순직 후 지급받을 연금·상여금·조의금 등에 대한 모와 처의 상속비율 ..... 12-84
- 유족 우선순위 ..... 12-103
- 친생모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이 되는지 여부 ..... 13-50
- 호적상의 처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간의 유족연금 수급권 경합 ..... 8-80, 13-46
- 자를 출산한 전사자 약혼녀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 9-58
- 유족연금 지급 ..... 2-64
- 군인연금법상의 연금기간 기산일 및 급여제한규정 적용 ..... 2-67
- 중사로 추서된 순직한 단기하사의 유족연금 지급 ..... 9-39
- ROTC 피교육중 순직한 자를 장교로 고진급시킨 경우 유족연금지급  
가능 여부 ..... 13-55
- 유족일시금 지급 ..... 7-57
- 사망원인 정정의 경우 유족연금 지급 여부 ..... 17-116
- 순직자의 모가 친가로 복적한 경우의 유족연금 지급 여부 ..... 17-118
- 입양군인의 생조모 사망과 사망조위금의 지급 ..... 19-123
- 입양된 군인의 생부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 ..... 20-120
- 입양된 군인의 친생모가 군인연금법상 유족인지 여부 ..... 21-108
- 사망군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액수령한 보상금의 환수 ..... 20-121
- 제적된 군인의 가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 20-123
- 친가복적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20-127
- 유족연금수령권자가 유족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1-138

- 군인과 그 배우자 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 지급 ..... 21-132
- 민법개정과 계모의 유족연금청구권 ..... 22-33
- 유족연금청구권의 시효 ..... 24-60
- 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41
- 국적상실자의 유족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 25-68
- 군인연금법상의 유족 ..... 26-90
- 대법원판결과 상이한 유족연금지급결정의 취소여부 ..... 26-106
- 계모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 29-43

#### 사. 재해보상금

- 군인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 15-125
- 교육 및 방위소집자에 대한 재해보상 가능 여부 ..... 15-120
- 군인재해보상금 지급요건 해당여부 ..... 3-110
- 군인재해보상규정 제6조 제2항의 해석 ..... 13-117
- 의병전역절차 진행중 정년전역하는 경우의 장애보상금 지급여부 ... 17-119
- 장기제공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 20-113
- 병역동원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의 지급사무는 국가보훈처에 있음 ..... 22-34
- 명예전역 후 장애보상금 지급청구 ..... 27-131
- 의병전역자 정상전역시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 29-41
- 재심의로 공상판정 받은 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 31-171

#### 아. 급여의 제한

- 전역 후 공무원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 10-66
-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취업된 경우 동연금 지급 ..... 1-107
- 이사 대우 이상의 촉탁 또는 고문으로 임명된 경우 연금 지급 정지분 ..... 15-107
- 잡급직원 채용과 퇴직연금 수급권과의 관계 ..... 15-119
- 전사편찬위원이나 촉탁이 된 경우의 연금지급 제한 여부 ..... 15-99
- 군인연금 지급제한 대상기관 ..... 15-101, 15-111
- 퇴직한 군인이 다시 군인 또는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연금처리 ..... 1-119

- 군인퇴역연금의 지급정지(향토예비군 중대장 임용) ..... 6-50
-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정지된 자의 연금 지급 ..... 1-112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등 ..... 1-116
- 사상피의자로서 기소중 사망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법의 적용 ..... 1-121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연금지급 ..... 2-67
- 제적자의 연금 수급(선고유예판결) ..... 7-56
- 군복무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제한 ..... 21-115
- 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만료 전에  
출감한 자의 연금지급 ..... 9-60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어 복무한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 10-63
- 사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하사로서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한 연금지급 ..... 10-65
- 연금지급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 ..... 15-118
- 형사사건으로 제적된 장교의 연금지급 ..... 11-85
- 연금지급 및 정지 ..... 11-87, 12-97
- 군인연금지급 제한기관 ..... 14-45
- 전쟁기념사업회의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해당 여부 .. 24-8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승계된 자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인지 여부 ..... 24-84
- 연금지급정지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조치 ..... 25-65
- 군인연금법 제19조의3 ..... 26-78
- 연금제한시기의 기준이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 ..... 26-92
- 장애보상금 지연청구 시 지급가부 ..... 27-133
- 전역 후 퇴직급여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 30-136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판단기준 ..... 31-194

#### 자. 기금의 조성

- 군인연금기금으로 매입한 재상의 처분 ..... 14-55
- 공무원 연금법상의 기여금 납부 등 ..... 1-118

## 차. 보 칙

- 퇴역연금지급에 있어서의 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1-95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 26-82

## 카. 기 타

- 퇴역연금수급자가 인사소청으로 전역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의 회수 ..... 1-103
-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재정 ..... 1-109
- 퇴직자에 대한 소급 연금재정변경처분의 가부 ..... 21-129
- 퇴역연금수급권자 사망했을 시 이미 발생된 수급권의 승계 ..... 1-110
- 장기입원사병에 대한 전역특별급여금 지급 ..... 1-114
- 학도의용군과 연금법 적용 ..... 1-123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의 한계 ..... 1-124
- 중사 이상으로서 2년 미만에 전역한 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 ..... 2-72
- 군인연금기금의 예탁 ..... 15-126
- 제적후 복직된 자의 연금지급 ..... 15-69
- 제적된 군인의 공무원 재임용시 반환하여야 할 퇴직급여 ..... 21-93
- 복무연수를 채우지 못한 단기하사의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6-63
-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성 ..... 24-70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재직기간 합산 ..... 24-79
- 군인연금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 ..... 25-47
- 명예전역전 사망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지급여부 ..... 25-51
- 전투근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정 ..... 26-75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관련 ..... 27-136
- 상이연금청구에 대한 잘못된 각하 ..... 27-139
-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학자금 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을 회수 가부 ..... 30-140
-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 포함 여부 ..... 31-204

## 11. 보 훈

### 가. 총 칙

-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 및 군인재해보상과의 관계 ..... 15-104
-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시행에 있어서 국방부장관과 보훈처장간에 생기는 책임한계 및 감독권행사 ..... 3-24
-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사실확인서의 효력 ..... 20-109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 25-55
- 서해교전 중 행방불명된 자의 전사일자 결정 ..... 25-59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보상금 수령권자 ..... 29-36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결정 ..... 29-37
- 사망한 국군포로의 상속인 ..... 29-92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 31-165

### 나. 대상 및 사유

-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된 자”의 의미 ..... 15-95
- ROTC 대학생 야영훈련중 부상자 대우 ..... 5-57
- 만기전역자가 군복무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재발한 경우의 군사원호보상 ..... 7-46, 9-62
- 군인사법상의 전공상(41조) ..... 7-47, 2-94
- 공상의 개념 및 공사상의 구분권자 ..... 15-102
- 동원된 예비군의 가료 ..... 7-49
- 공상범위 ..... 8-22
- 현병의 구타로 사망한 피의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 8-77
- 입영 전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전공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8-41
- 파월재해보상금 수급권 ..... 8-78
- 현역병 징집시 입영부대 도착전 집결지에서 사격중 사망한 자에 대한 군사원호보상법 적용 ..... 8-85
- 군사원호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의 발병원인 ..... 9-55

- 향토예비군 중대장이 귀가 후 신경성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원호대상자 해당 여부 ..... 9-67
-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지급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원인 ..... 9-66
- 보충역으로서 군부대에서 방위소집교육중 사망한 자의 원호 ..... 10-68
- 연습훈련중 부상한 향토예비군이 응급치료후 귀가했으나  
이후 재발한 경우 치료혜택의 가능 여부 ..... 10-97
- 예비역 무관후보생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및 현역병적 편입 ..... 15-97
- 방위소집된 자가 전상 등 사유로 특수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군인재해보상금 지급 ..... 11-91
- 근무연습중(예비역) 이병, 질병, 사망, 재해의 경우  
군인연금법이나 재해보상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 12-81
- 장기적인 질병이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는바 여부의 판단기준 ..... 13-114, 14-50
- 전공상으로 인하여 의병 전역되어야 할 자가 행정착오 등을 이유로  
만기 제대되었을 때 상이군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69
- 대오를 이탈한 향토예비군대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원호가능 여부 ..... 14-91
- 국토건설단 건설원이 상이를 입은 경우 원호가능 여부 ..... 15-115
- 재학생의 입영중 상이에 대한 보상 ..... 16-65
- 공상해당자의 사망시 순직 해당 여부 ..... 18-140
- 공무중 발생한 질환으로 사망시 순직해당 여부 ..... 18-141
- 공무이탈상태에서 입은 상해의 공상해당 여부 ..... 18-142
- 군번 없는 참전용사에 대한 종군기장 수여 ..... 20-128
- 서해 훼리호 사고로 사망한 군인 및 군무원의 순직처리 ..... 21-87
- 동원훈련중 조기 귀가하다가 사망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 21-89
- 파면·수형 등의 사유로 전역한 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 21-141
- 6·25전쟁 중 징용되어 사망한 철도종사원의 전사자 해당 여부 ..... 24-92
- 병 사망위로금 지급 가부 ..... 29-39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29-91

#### 다. 급 여

- 파월전사자의 사망급여금 지급 ..... 6-47, 7-52
- 사망급여금 지급 순위 ..... 7-59
- 사관생도 사망급여금 지급기준 ..... 8-83
- 군인사망급여금 지급대상자 ..... 8-87, 10-71, 31-174
- 주월한국군 재해보상금 차액지급 ..... 10-70
- 장교가 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원호혜택 여부 ..... 12-90
- 재해보상금지급대상 예정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의  
보상금의 지급 ..... 14-48
- 전역 전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 있는 자의  
보상방법 여하 ..... 14-52
-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 31-182

#### 라. 기 타

- 만기전역자로서 입원중인 원호대상자의 처리 ..... 15-113
- 귀순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상의 원호대상자 선정 여부 ..... 11-89
- 독립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4조의 2와 동법 부칙  
제2조와의 관계 ..... 12-88
- 월남귀순자가 5년 이내 원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2-99
- 방위소집 필한 자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13-54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상의 제대군인 ..... 15-109
- 군무이탈자와 군사원호 혜택 및 병적처리 ..... 15-112
- 상이기장 수여사실에 대한 확인서 발급 ..... 16-146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상 귀순용사의 범위 ..... 16-147
- 현역용 의약품을 월남귀순용사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6-153
- 예비역에 대한 군병원 진료 ..... 18-235
-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조세감면 ..... 20-130

- 순직군인의 배우자를 무시험에 의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2-3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23-39
- 상근예비역에 대한 진료 제공 범위 ..... 24-40
- 군인보험 보험료중 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용도 ..... 24-86
- 군부대의 민간에 대한 의료 지원시 법적 문제 ..... 25-43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 가료비를 교육소집훈련을 실시한 군부대장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45
- 행정심판 재결내용 및 효과 ..... 26-110
- 위폐봉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28-115
- 한국전쟁 중 미군 측에 귀순하였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자의  
참전유공자에우법 적용 여부 ..... 31-176
- 징병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 31-197

## 12. 국가배상

### 가. 배상책임

-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이 기지공사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1-198
-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의 적용 타당성  
여부 ..... 3-29
-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액 ..... 3-38
- 배상책임 한계 ..... 4-94, 4-113, 5-147, 5-152
- 배상금 지급 결정 ..... 4-98
- 국가배상책임 유무 ..... 4-99, 4-103, 4-110, 5-120, 5-124, 5-141, 5-150
- 배상문제 ..... 5-119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중에 향토예비군중대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15-227
- 운동선수 재해 ..... 5-126
-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 5-127
- 국가배상책임 유무 및 과실정도 ..... 6-128
- 공무원의 직무 집행 ..... 6-130

- 외국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7-118
- 제3자(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8-160
-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 ..... 10-159
- 정책지정 광산으로 국가안보상 개방중지를 조치한 경우  
등에 있어서 광산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가부 ..... 12-169
- 소집중인 방위병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신청  
가능 여부 ..... 12-175
- 군병원에서 수술한 자가 민간병원에서 동일병인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 청구권의 전부 ..... 14-43
- 민간인이 군용기 탑승시 손해배상책임 ..... 19-205
- 군정비공장의 정비인건비와 손해배상 ..... 19-207
- 열차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 20-114
- 국방부 일반직에 대한 통근버스지원과 사고처리 ..... 20-116
- 국가배상금의 분리 또는 사전지급 가능 여부 ..... 24-189

#### 나. 배상기준

- 월급여액 없을 시 배상액 산정 ..... 4-89
- 입원치료중 사망하였을 경우 요양비 산정 ..... 4-90, 4-92
- 유족배상 및 장애배상액 산정 ..... 4-95, 4-109, 5-133, 5-143, 5-146, 5-156
- 배상신청유무와 배상금 심의결정범위 ..... 5-129
- 배상지급 신청자의 범위 ..... 5-140
- 대체임금 조사방법 ..... 15-234
- 위자료 기준액 ..... 5-148
- 위자료 지급대상 ..... 6-123
- 병원당국의 요양비 청구 ..... 6-126
- 피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가배상금 지급문제 ..... 6-134
- 피해보상금 지급 ..... 7-113
- 배상금(사용료) 지불 ..... 10-135
- 3개 부위 이상 신체장애자의 장애정도 평가방법 ..... 13-119
- 장례비인용 ..... 14-123
- 군차량사고의 피해자가 운전병과 합의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 여부 ..... 14-127

○ 배상결정 후의 장해배상신청 .....	16-141
------------------------	--------

**다. 외국인에 대한 책임**

○ 국가간의 상호보증 .....	2-181
○ 배상금 지급 .....	5-139
○ 외국인 개념 .....	5-155
○ 한·중국간의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 .....	6-119
○ 중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7-114
○ 한·미행협에 따른 주한미군의 피해복구청구 .....	10-139

**라. 절차(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절차 .....	2-187
○ 예산부족에 따른 국가배상사건 처리 요령 .....	4-97
○ 배상심의회 운영 .....	4-106, 4-116
○ 배상액 기준 초과금액 승인요청 절차 .....	4-112, 5-136
○ 국가배상법 적용문제 .....	4-115
○ 배상심의회 관할 .....	4-116, 5-121, 5-137, 5-153
○ 배상심의회 사무처리 .....	5-123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및 재심 .....	5-131, 7-116
○ 특별배상심의회와 지구배상심의회와의 권한관계 .....	7-121
○ 배상금지급결정 전 부동의된 사건처리문제 .....	8-157
○ 국가배상금 지급 후의 사정변경 .....	8-158
○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	13-118
○ 국방부장관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지휘감독권 .....	14-126

**마. 기 타**

○ 징발기간중 미군이 채석한 돌대금 지급 .....	7-119
○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적용 여부 .....	12-173
○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상채무 임의변제 .....	14-124
○ 국가배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15-229
○ 예비군작전동원 및 교육훈련시 민간자동차 사용의 문제점 .....	15-231

- 군수송기의 민간인 탑승 가부 ..... 21-153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신청 가능 여부 ..... 24-185
- 국가배상을 위해 필요한 감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질의 ..... 24-187

### 13. 군용지취득

#### 가. 총 칙

- 징발재산중 소유자 불명시 민법규정의 적용여부와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한 재산의 인계 ..... 9-104
-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의 적용대상 여부 ..... 9-105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이 도시계획법 제82조  
소정의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12-145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치령 해석(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06
-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공특법) ..... 20-162
-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 20-170
- 국방부장관의 민통선 설정·변경권 ..... 20-204
- 사인도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 22-46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 29-75

#### 나. 목적물(제한)

- 징발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취소 ..... 1-176
- 징발토지의 지목변경 ..... 1-177
- 군이 점유사용중인 사유재산의 징발 ..... 1-189
- 군이 무단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 ..... 21-189
- 비상계엄 해제지역의 징발 ..... 1-191
- 선박소유 및 징발보상 ..... 4-83
- 징발재산의 교환 ..... 8-114

- 징발재산중 공유재산의 범위 ..... 10-117
- 징발된 임야상의 입목매수 ..... 10-118
- 민통선 북방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징발 ..... 12-159
-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수용·매수 또는 반환된 토지가 특조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04
- 착오로 매수한 징발매수토지의 처리 ..... 17-154
- 증권매수토지에 대한 이중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징특별) ..... 20-200
- 중복등기된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행사 ..... 20-202
- 일부공유자의 지분과 국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 23-49
- 공유지분과 국유지의 교환가능 여부 ..... 23-51

#### **다. 절차(원상회복)**

- 소유자 미확인 징발물 처리 ..... 1-178
- 재산권의 소유자를 착오하여 행한 징발의 법적 효력 ..... 9-103
- 대통령공고 제29호 제3항 중 “국방부장관의 고시지역의 범위” ..... 9-106
- 징발재산매수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매수행위의 효력 ..... 9-117
- 소송 계류중인 징발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 ..... 12-147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의 법리 ..... 17-151
- 전쟁기념탑 건립과 환매권 발생여부 ..... 19-161
- 해군기지조성사업과 환매권 발생(공특별) ..... 20-164
- 군병원 지휘관관사 신축과 환매권(공특별) ..... 20-166
- 환매기간내 환매대금 미납시 환매권 발생(공특별) ..... 20-168
- 환매권 소멸된 징발재산의 반환 ..... 20-181
- 징특별상의 환매통지의무 이행시기 ..... 20-183
- 판결선고 이후부터 이행시가지의 환매대금 이자가산(징특별) ..... 20-185
- 공공사업실시에 따른 환매권 생사의 제한 ..... 20-187
- 환매권 상실한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19-166
- 특별조치령의 ‘종전의 상황이 종료된 날’의 의미 ..... 19-168
- 착오에 의한 협의매수와 환매권 발생여부 ..... 19-178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21-170

- 징특별상 징발재산을 수의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 가부 ..... 21-181
- 군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특별상의 환매권 행사 여부 ..... 21-199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의 해석 ..... 21-214
- 국보위특조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의거 수용된 토지의 처리문제 ..... 22-47
-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징발재산의 수의매각여부 등 ..... 22-48
- 징특별상의 수의매각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국공유지 처분제한과의 관계 ..... 22-49
- 공특별상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때”의 의미 ..... 22-50
- 양여하기로 합의한 국가재산 중 환매권 발생이 예상되는 토지의 처리 ..... 22-51
- 징특별상 증권매수지를 상속인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제사주재자 1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22-52
- 징특별상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2-53
- 분당, 일산 신도시 관련 양여가용금액과 대체시설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또는 잔여 양여대상재산으로 대체시설과의 정산가능 여부 등 ..... 22-54
- 활용계획 없이 전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방위산업체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환매대상이 되는지 ..... 22-55
-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환매권행사 가부 ..... 23-52

## 라. 해 제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권으로 매수한 재산과 처분시 연고권을 부여하기로 법정화해한 재산의 매각 여부 ..... 12-183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매수통지 등을 누락한 경우 그 매수의 효과 ..... 14-108
- 징발된 토지반환과 매수대금 환수 ..... 20-180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25-93

## 마. 보 상

- 징발보상령에 의거 기보상한 보상액 재조정 ..... 1-180
- 징발보상금 부정지급 ..... 2-172
- 징발보상에 있어서 목적물의 확정 ..... 2-176

○ 징발보상금 지급과 목적물의 변경 .....	2-178
○ 징발보상금의 수령자 확정 .....	5-95
○ 징발목적 없는 징발건물에 대한 피해보상 .....	3-42
○ 징발보상기간 기산 및 법인소유 재산징발후 그 주주교체에 따른 보상문제 .....	3-159
○ 원 조선주택영단의 자산 등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여부 .....	4-84
○ 소송계류중인 징발재산의 보상금 지급 .....	8-109
○ 토지구획정리지역에 편입된 징발재산의 매수 및 보상 .....	8-110
○ 징발공유재산을 병무청 청사부지로 부정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8-112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부칙 제2조(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기준) .....	9-113
○ 공유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9-116
○ 징발 이후 보존등기를 필한 징발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9-188
○ 소송계류중 피징발자의 징발보상금 청구 .....	9-121
○ 불하된 재산의 보상기간 .....	10-121
○ 징발보상금 지급일 .....	10-124
○ 소유권이 인정된 미등기토지 징발보상금 지급 .....	10-125
○ 사기행위로 인하여 징발재산 매수대금을 착오 지급하였을 경우 국가채무의 소멸여부 .....	10-128
○ 징발토지가 후에 군에서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의 보상관계 등 .....	10-129
○ 징발보상금 환수 .....	11-127
○ 징발보상금 과오불 환수에 따른 이자가산 .....	11-135
○ 소송계속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신청 .....	11-196
○ 귀속휴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급 .....	11-140
○ 농지계획법상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과오불 환수 .....	12-149
○ 국방부에 징발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징발법 제23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 여부 .....	12-151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 당시보다 환지후의 지적이 적어진 경우의 환매대금 .....	12-153
○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처리 .....	12-155

-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에 의한 가집행금과 징발보상채권과의 상계 … 12-157
- 징발보상금 지급 …………… 12-166
- 징발재산에 대한 멸실보상 청구권 존부 …………… 13-103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 14-105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간 …… 16-117
- 징발중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징발보상 …………… 3-163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보상책임 …………… 17-169
- 비무장지대내의 사유재산의 보상여부 …………… 17-172
- 민통선 지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 20-205
- 징발보상금 지급대상자 …………… 18-175
- 공공용지 협의취득시 보상금 지급시기 …………… 18-177
- 허가·신고·무허가 관행어업에 대한 손실보상 …………… 19-180
- 토지수용 재결과 대법원 판결의 효력상충관계 …………… 19-183
- 영농보상시 농축산물표준소득 산정방법(공특법) …………… 20-161
- 주한미군시설의 교외이전사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 …………… 20-175
- 아산만 어업보상협약서(안) 검토 …………… 20-178
- 매수협의 성립후 보상금 미지급시의 법률관계 …………… 21-191

**바. 기 타**

- 법령적용 범위와 분배농지 및 귀속재산의 징발보상 취급 …………… 1-182
- 징발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징발보상 …………… 1-186
- 징발지상에 군원공사 실시 …………… 1-188
- 노무자 징용 …………… 1-193
- 통신시설의 기능단위 징발가부 …………… 3-158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매수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 …… 15-215
- 개인이 징발중에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징발사용료 지급 …………… 5-96
-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 18-183
- 어로한계선의 남하 축소 지정·고시 …………… 18-237
- 지방산업개발단지 사업자 지정 관련 질의 …………… 23-53

- 징발재산환매에 있어 피징발자의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  
지분처리 ..... 23-48
- 우선매수 통지 없는 경우 우선매수가 가능한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 ..... 23-55
- 국가가 상대방에게 교환으로 제공한 토지가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국가가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 ..... 23-56
- 징특별상 피징발자에게 징발한 토지를 우선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5-106
-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 ..... 29-69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가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 ..... 29-76
- 부당이득금 반환의 근거 법률 ..... 29-78

## 14. 군 수

- 군수물자 불하 ..... 1-150
- 군수품관리 전환문제 ..... 2-118
- 군수품의 정의 ..... 2-119
- 군화 해체비용 지급의 합법성 여부 ..... 2-120
- 전비품에 대한 검사 및 전비품 손망실로 인한 변상판정 ..... 3-132
- 군수품구매 공급업무의 담당부서 ..... 6-95
- 군수품에 관한 불용결정 ..... 6-97
- 교환에 따른 금전의 보충지급 ..... 6-98
- 사관생도 피복지급 ..... 7-105
- 군수품의 구매공급 주관청 ..... 7-106
- 전비품 손망실 변상판정 ..... 7-108
- 군장품 조변 수의계약 ..... 8-120
-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자로부터 군용 통신전자장비를 납품받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군용 전기통신법, 전자공업진흥법, 전자관리법  
적용 여부 ..... 10-205
- 석유류세 면세조치 ..... 11-145

○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 품목 .....	11-147
○ 조세감면 규제 .....	11-149
○ 주월한국군에서 인수된 방송장비를 한국방송공사에 인계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근거 .....	11-150
○ 군수품 구분 .....	11-154
○ 군용장구의 범위(금속단추) .....	11-156
○ 손망실 처리 .....	12-182
○ 탄약생산군수업체가 원자재 고갈로 군이 비축한 탄약 등의 대여를 요청한 경우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12-205
○ 군공창생산품을 국방부장관이 외국회사에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	13-123
○ 국방부장관의 군수물자 수출추천권 여부 .....	13-124
○ 불용폐품의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이행보증방법에 관한 회계질의 .....	14-143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연구기관의 개념 .....	14-146
○ 기념관전시용 6·25 전사품이 군수품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14-148
○ 장기계약에 있어서 “수년”의 의미 .....	15-239
○ 군수조달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	15-240
○ 군수품의 수출업체 무상대여 .....	15-241
○ 국방과학연구장려금 지급대상자 선발의 취소사유 .....	15-243
○ 군수품의 범위 .....	15-245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계약체결 군수업체 지정을 실무위원회가 위임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5-249
○ 군수사업 목적 .....	15-250
○ 전비품의 검사 .....	15-253
○ 군수품의 손망실처리 .....	15-255
○ 관세법상 군수품의 정의 .....	16-103
○ 군수품 교환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권 위임 .....	16-105
○ 연료바지선의 군수품 해당 여부 .....	16-107
○ 군용 유류를 관리전환할 수 없는 경우 .....	16-108
○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군수품을 불용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109

- 국방품질검사소가 군수물자의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7-129
- 군수품인 유한수명품목의 처리방법 ..... 17-131
- 불요군수품의 교환 ..... 17-132
- 군수품교환시 가격결정 ..... 19-147
- 구형방독면을 무상대여하고 신형방독면으로 상환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19-148
- 관급원단수득률 책정업무의 위임 ..... 17-133
- 군수품의 해외보관 및 포괄적 출납명령 가능 여부 ..... 17-134
- 군수품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양여 ..... 17-136
- 군수품 불용결정시의 장부가액 ..... 18-171
- 군수품의 대여 ..... 18-172
- 국산화 개발물품에 대한 구매의무 ..... 19-150
- 산림청·경찰청 등에 대한 군수품 지원과 상환 ..... 20-139
- 안경사 아닌 안경군납업자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 20-141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등 ..... 21-233
- 복수의 물품관리관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사명령권 ..... 22-63
- 정상적인 사용의 결과로 군수품이 훼손된 경우 손망실처리를 해야 하는지 ..... 23-58
- M1소총 탄약을 방산업체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할 수 있는지 ..... 23-59
- 군피복 현금판매의 적법성 여부 ..... 23-60
- 군 일용품 현금 판매의 적법성 여부 ..... 23-63
- 군수품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 23-64
- 소총을 외국인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23-65
- 대학에 대여된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용 총기관리책임 ..... 25-120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4조 해석 ..... 25-123
- 국방·군사시설사업자 지정 ..... 26-140
- 한국철도공사 전환과 여행장병안내소 시설의 무상사용 중지 여부 ..... 26-145
-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해당 여부 ..... 26-148
- 외출·외박시 관용차 사용 ..... 26-150

○ 일반직공무원의 군용승용차 운전 가능 여부 .....	26-152
○ 위성수신장비 외주정비 .....	26-154
○ 노후 건설공병장비의 불용결정 .....	26-156
○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예비군피복을 소급지급할 의무 .....	26-158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료 징수 유예·감면·면제 여부 .....	26-164
○ 정부부처에서 위탁관리 의뢰한 차량이 군수품인지 여부 .....	26-166
○ 군용항공기 관리·처분에 관한 적용 법률 .....	27-145
○ 불용품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27-147
○ 군함과 민간선박 충돌 시 손해배상 합의의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	27-149
○ 업체연구개발확인서 회수 가부 .....	28-143
○ 불용군수품 교환시 협의 여부 .....	28-148
○ 미군기지 철거 시 발생물건의 군수품해당 여부 .....	28-152
○ 차량운행 및 관리규정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	28-155
○ 물품관리법 제28조 “계약담당공무원” 의미 .....	28-160
○ 군수품관리법상의 교환 상대자 선정방법 .....	28-163
○ 육로 탄약호송 작전간 무기사용 가부 .....	28-167
○ 전투복 해외양도시 비군사화 작업 필요 여부 .....	28-169
○ 고무보트 및 고속단정의 무상양도 가부 .....	28-172
○ 기존 조합원의 미상환채무분담액 승계여부 .....	28-175
○ 불용장비 물물교환시 감정평가 수수료 .....	29-51
○ 육군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방위사업청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9-52
○ 군수품 유상양도 가부 .....	29-53
○ 불용 총기 교환 관련 법적 문제 .....	29-54
○ 의장대 행사복 무상 양도 가부 근거 법령 .....	29-56
○ 의장대 행사복 무상대여 가부 .....	29-57
○ 고단가 수리부속 불용결정 및 처리 절차 .....	29-58
○ 불용물품 압류 가부 등 .....	29-59
○ 군복 및 군용장구를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	29-60

- 군수품 양도시 장관 승인 여부 ..... 29-61
- 부적합 소독약 하자처리 문제 ..... 29-62
- 군 상용차량 획득시 영세율 적용 가부 ..... 29-63
- 불용군수품 대여 가부 ..... 29-64
- 점유개정 방법의 K9자주포 대여 가부 ..... 30-144
- 국내 교육과전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 30-146
- 군수품관리법상 교환 해당여부 ..... 30-149
- 기준미달 전투화의 해외 수출 가부 ..... 30-151
- 군용표지가 없는 반합판매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 31-215

## 15. 방위산업

- 방산특조법 제20조 제1항의 해석 ..... 17-137
- 외국인출자기업의 방산업체지정 ..... 17-138
- 일반업체의 군사용 장비개발 ..... 17-140
- 주요방산물자지정에 대한 방산실무회의 권한 ..... 20-147
- 소프트웨어가 방산물자인지 여부 ..... 20-149
-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수출하는 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 ..... 20-152
- 완성품인 전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의 효력 범위 ..... 21-158
- 군용항공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 21-160
- 방산물자조달계약조정위원회의 지체상금면제 권한 ..... 20-154
- 장래 획득할 함정장착장비 생산에 대한 해군의 계약체결권 ..... 20-155
- 생산실적 없는 방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징의행위제한 ..... 20-157
- 방산물자 조달시 적용될 환율의 결정시점 ..... 21-147
- 방산물자인 공군항공기의 정비시 군과 업체의 물량배분기준 ..... 21-149
-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에 관한 문제 ..... 22-6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당해연도 물량’의  
    범위 ..... 22-65
- 개발확인서의 명의변경 가부 ..... 22-66
- 고무사출성형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시운전에 필요한

고무재료를 개발하였는바, 군용물자의 개발계획 승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22-67
○ 방산물자의 지정범위 .....	22-68
○ 천마체계 지원장비에 대하여 별도의 방산물자 지정이 필요한지 .....	23-61
○ 획득협회의 기종결정의 적법성 질의 .....	23-62
○ 시제함주계약업체 선정 이후 상세설계 및 건조업체를 경쟁입찰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	23-66
○ 방산특조법 제20조의 2 적용범위 .....	23-67
○ 함정의 방산물자 지정 가능 여부 .....	24-151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군용물자 연구개발 범위 .....	24-154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상 방산원가 착오시 부당이득금 환수여부 .....	24-159
○ 수출용 방산물자 대여료 조정방안 .....	24-161
○ 노동조합 전임자/임시 상근자 급료지원 .....	25-113
○ 후속양산 기술도입생산사업 선행업무 .....	25-116
○ 방산보증기금 회수방안 .....	25-117
○ 군용폭발물(탄약)의 폐기에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	25-119
○ 방산수출업 신고 수리여부 .....	25-122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2조 제2항의 ‘업체자체 연구개발 희망업체’의 의미 .....	26-160
○ 방산업체 지정 취소 .....	26-162
○ 운용시험평가계획작성기관인 ‘소요군’에 합참이 포함되는지 여부 .....	27-151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상 총사업비의 개념 .....	27-154
○ 신규업체의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	27-158
○ 과학화경제사업 위탁 집행 가부 .....	29-55
○ K-21 장비 대여기간 재연장 .....	29-65
○ 수출용 품목의 규격화 여부 .....	29-66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판매 허가관련 .....	30-154

-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30-157
- 방위산업 착수금 사용기간 산정 관련 ..... 31-217

## 16. 재 정

- PX의 원천세금징수 의무 ..... 1-159
- 포획선박 처리 ..... 1-160
- 관급원료 취급 ..... 1-161
- 예산부대조건의 해석 ..... 1-163
- 관세법상 고발의 효력 ..... 1-167
- 잉여관급원료의 처리 ..... 2-123
- 국고금 지불 ..... 2-124
- 나포관리 선박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소송비용지출 ..... 2-126
- 국가기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 2-130
- 주월군 귀국시 관세법상 신분 ..... 3-135
- 국군용 석유류의 면세대상 여부 ..... 3-137
- 공급계약위반과 지체상금 ..... 18-151
-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부과 ..... 18-208
- 공사실적의 승계 ..... 18-155
- 국방·군사시설사업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 19-182
- 두채류장비인도후 매각계약체결시까지의 사용료 징수 ..... 20-143
- 성능미달된 침투성 보호의에 관한 계약책임 ..... 20-219
- 업체 자체 개발품의 국방규격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책임 ..... 21-162
- 지체상금 부과 ..... 17-143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7-144
- 단가계약 예정이행량을 초과 납품한 경우 계약 이행 여부 ..... 21-238
- 계룡대 체력단련장이 자체수입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국제법상 계약인지 ..... 22-69
- 무인항공기(UAV)체계 개발계약 지체상금면제 가능 여부 ..... 24-165
- 지체상금적용시 월 누적일수 계산방법 ..... 24-177

-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비용부담주체 ..... 28-180
- 국방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감리비 분담 ..... 29-77
- 국방부가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 29-85
- 변제충당의 순서 ..... 29-89
- 복지기금을 통한 해군마트의 포인트 제도 운영의 타당성 ..... 31-178
-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과의 약정 관련 ..... 31-207
- 기부금품 사용 대상자 ..... 31-239

## 17. 예산회계

- 재향군인회가 예산회계법 규율대상인지 여부 ..... 16-70
- 영치금취급자의 회계직공무원 임명 ..... 1-151
- 심계원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방법 ..... 1-151
- 국채반환 ..... 1-154
- 매매계약이 해체된 경우 계약보증금 반환 ..... 9-112
- 수의매각후 일부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 21-243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가격 제한과 계약해제 ..... 16-69
- 공사청부계약 해지 ..... 1-158
- 부정건설업자 처리 ..... 1-200
- 군납업자 부당행위 제재 ..... 4-75, 10-147
- 시설공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회피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 21-229
-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과 부정당업자 제재 ..... 21-234
- 권리권 없는 행정부서의 국유재산매각과 입찰보증금 처리 ..... 5-105
- 입찰보증금 납부서 기재금액이 예정가격의 10/100 미달인 경우와  
입찰의 효력 ..... 5-106
- 공고내용과 다른 입찰보증금을 받고 실시한 입찰 및 매매계약의 효력 ..... 21-241
-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의 예산회계법상의 법인 해당여부 ..... 9-159
- 물품계약 ..... 10-145
-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사항 보장절차 ..... 10-150
- 유류조변에 있어서 면세구매 ..... 10-158
-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 10-159

- 도심지 주둔 미군시설을 교외로 이전통합함에 있어서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 10-179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소정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4-150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14-169
- 감사원 판정전 변상명령 ..... 14-172
-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 ..... 9-143
- 군납품에 대한 변상책임 ..... 16-71
- 채권관리관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10-136
- 군인공제회 아파트건립사업의 성격 ..... 17-146
- 군인공제회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자격 및 해약 ..... 21-105
- FMS 종결잔액의 국고세입조치 여부 ..... 18-149
- 올림픽기장 제작의 예산회계법상 문제 ..... 18-156
- 전쟁기념사업회의 수의계약과 예산회계법 적용여부 ..... 18-158
- 수의계약가능기간 종료 후의 수의계약체결 ..... 20-221
- 수의계약에 의한 유류구매 ..... 20-228
- 수의계약에 의한 전산장비 임대차계약체결 ..... 20-232
- 정부계약체결시 군인공제회의 지위 ..... 20-223
- 장기계속계약방식에 의한 설계용역계약체결 ..... 20-231
- 국방전산망사업 전담사업자지정의 의미 ..... 20-225
- 국방일보 광고수입과 수입대체경비 ..... 19-127
- 군장품류 구매입찰 참가자격 ..... 19-128
- 예산회계법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뇌물을 준 자’의 범위 ..... 21-231
- 방송공사의 시설을 임차하여 군통신망 운용시 임대 사용료의 납부 ..... 21-227
- 세입징수관이 발송한 재고지서, 재독축장의 시효중단효력 ..... 22-70
- 입찰서의 금액표시에 한글과 숫자가 상이한 경우 당해 입찰의 효력 ..... 22-71
- 군이 공항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 비품 등을 현금으로 대신 지급받아  
  비행장시설의 유지·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22-72
- KTX-2 계약특수조건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검토 ..... 23-68
-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 23-69
-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 23-70

○ 국군수도병원부지 매각계약 해제 가능여부 등 .....	23-71
○ 가압류된 급여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 .....	23-72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른 업체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	23-73
○ 물수된 계약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	23-74
○ 가계약제도의 국내계약 도입이 위법한지 .....	23-75
○ 계약 해제없이 보증인 또는 주계약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	23-76
○ 물가연동금지특약의 적법성 여부 등 .....	23-77
○ 군 복지시설 운용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	23-78
○ 화재보험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	23-79
○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입찰서류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68
○ 입찰업체의 영업직원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정당한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4-170
○ 물품구매 입찰업체의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 .....	24-172
○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에서 개발하였을 경우”의 의미 .....	24-174
○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변경시 국방부의 승인 여부 .....	24-17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해당 여부 .....	24-180
○ 부정당업자 추가제재의 타당성 여부 .....	25-121
○ 허위서류에 의한 입찰 및 계약의 효력 .....	26-170
○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의 이관 여부 .....	27-163
○ BTL사업 조건부 실시협약 체결 가부 .....	27-166
○ 건축공사 설계비 요율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 .....	27-169
○ 관리비 할증료를 군관사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7-172
○ 현장설명서에 추가된 심사기준의 법적 효력 .....	27-176
○ 국가 계약의 대가 지급에 있어 검사 단계의 생략 가부 .....	27-178
○ BTL사업 지역중소업체 자격요건 .....	28-189
○ BTL사업 재고시시 사업규모 축소 가부 .....	28-193
○ BTL사업 시공출자자 부도로 인한 법률관계 .....	28-208

- 해군진해관사 BTL사업 건설주간사 지위 ..... 28-231
- 계약사무 일부 타 기관 분장의 문제 ..... 29-86
-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수의계약 가부 ..... 29-87
- 부정당업자 제재 확정 후 중도금 지급 가부 ..... 29-88
-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7조 제5호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의 의미 ..... 30-177

## 18. 국유재산

- 국가에 대한 사인재산의 기부채납 ..... 16-113
- 포획선박 인정 여부 및 그 처리 ..... 1-164
- 미창 귀속재산 불하 ..... 1-169
- 국유군용지상의 무단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여부 ..... 3-27
- 국유임야 대부 ..... 2-132
- 사찰부지와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 15-169
- 한국근인복지회의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 8-84
- 채석장의 보상액 산정(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 16-120
-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의 의미(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 16-121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15-170
- 사단법인 국방부동우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 21-177
- 개간촉진법과 국유재산법의 관계 ..... 15-171
- 국유재산의 사용료 ..... 15-173
-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료의 징수 여부 ..... 21-185
- 군용시설특별회계법상의 국유림의 처분절차 ..... 8-153
- 용도폐지 건물의 매각처분 ..... 10-126
-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10-115
- 공원부지 활용 ..... 2-121
- 국유재산 처분 ..... 44-76, 13-78
- 관사사용료 징수 ..... 7-54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분임보관청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10-153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 11-131, 11-132, 13-80
- 국유재산을 공매할 경우 대부신청을 거부한 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가의 여부 ..... 11-138
-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기간 도과시의 효과 ..... 13-69
- 국유재산 매수자가 등기완료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변경 신청한 경우의 그 효과 ..... 12-207, 13-70
- 부분배자가 상환완료하기 전에 국가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 13-71
- 국유재산 사용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 13-73
- 국유재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공동명의로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 13-74
- 도시계획 저촉재산 처리 ..... 13-75
- 매각건물철거에 대체이행 가능여부 ..... 13-76
- 무주부동산 국유화 ..... 13-77
- 재향군인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매각처분하였을 경우  
국가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12-209
- 국유재산법상 전물군경유족회의 법적성격 ..... 12-219
- 도시계획구역안의 국유농지의 매각 ..... 9-108
-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의 사요 ..... 9-111
- 개인소유명의로 등기된 하천부지의 매수가부 ..... 9-120, 10-123
- 국제관광공사가 공익법인인가 여부 ..... 10-155
- 기부받은 장교관사 건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10-151
- 분배농지 소유권자 ..... 13-80
- 농지계약법에 의거 분배된 농지가 국유로 확정된 경우에  
이미 납입한 상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3-82
-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문제 ..... 14-79
- 연부상환조건으로 매매한 재산의 소유권 ..... 14-82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의 개념 ..... 14-84
-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국유재산의 양도 ..... 15-292
- 군의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 15-303
- 지방자치단체의 탄약고 이전사업 대행 ..... 16-115
- 토지수용법상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범위 ..... 16-116

○ 대체시설 제공자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	18-161
○ 기관상호협약에 의한 대금정산 .....	18-165
○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국유재산매각 .....	18-167
○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군용지의 무상귀속 .....	21-183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19-159
○ 수색비행장의 항공대학 사용과 사용료 징수 .....	19-133
○ 국유재산 매각과 사용승인 .....	19-135
○ 지정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매각 국유재산의 재취득 .....	20-198
○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	19-136
○ 국유지 매각대금 납부기일연장 .....	20-190
○ 국유재산법상 매각대금 납부기간 연장의 의미 .....	20-193
○ 민간인의 대공화기 구매가능 여부 .....	19-138
○ 국방품질관리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양여 .....	19-141
○ 국유재산의 무상관리환 .....	20-199
○ 전쟁기념사업회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5년 이상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	19-143
○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수의매수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 .....	21-167
○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적용 이자율 .....	21-172
○ 국유재산 매각화해 후 계약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한 중치 .....	21-209
○ 이주대책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분양가격 및 분양자격의 결정시점 .....	21-211
○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국가의 재산양여 .....	21-221
○ 은닉 국유재산 자진반납자의 결정 .....	21-179
○ 은닉재산 자진반납에 대한 특례매각의 법률적 성격 .....	21-206
○ 군체력단련장의 회원권 발급 .....	21-96
○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에 건축된 무허가 하사관 아파트 보상여부 .....	21-187
○ 건설부장관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행위의 노력 .....	21-201
○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군인공제회에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2-56
○ 국유재산 매수자의 특약위반에 따른 해체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	22-57
○ 국가가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을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기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지급의무 .....	22-58
○ 군인공제회에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군관리의 토지를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	22-59
○ 기부채납된 군사용 차폐용 간판의 사용료 면제기간 .....	22-60
○ 임야토석의 매각에 있어 산림법 적용여부 등 .....	22-61
○ 강의실 사용료 징수여부 .....	23-54
○ 군 숙소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적법성 여부 등 .....	23-57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	24-115
○ 수량부족매매시 국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방법 .....	24-118
○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국유재산사용허가의 효력 .....	24-119
○ 국유재산(애기봉 주차장) 사용료 징수 가능 여부 .....	24-120
○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연체료부과대상 .....	24-124
○ 국유재산 매각시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 지급 여부 .....	24-126
○ 매수한 징발재산 등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	24-128
○ 국보위 특별법상 수의매각 가능 여부 .....	24-130
○ 국유지에서 채취한 토석 처분시 적용법률 .....	24-132
○ 매각부지에서 발견된 오염토양 및 폐기물의 처리 책임 .....	24-144
○ 국유재산 특례매각 .....	25-95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25-96
○ 수용 및 징발된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4
○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26-123
○ 행정재산(상가) 사용허가시 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26-133
○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된 국유지의 매각 가부 .....	27-183
○ 군 관사의 관리환 가부 .....	27-185
○ 부동산 계약업무를 공병부서와 경리부서 중 어디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27-187
○ 국유재산 사용료를 산정기준 시점 .....	27-191
○ 사용·수익허가 변경승인 .....	27-193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	29-71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 .....	29-72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가부 .....	29-79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임의 촉탁 가부 .....	29-80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30-161
○ 국방대학교 운동장 이용 .....	31-227
○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한 자산의 “국방·군사시설” 해당여부 .....	31-230

## 19. 군사시설보호

○ 방호구역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초가지붕 개량가부 .....	10-81
○ 관계행정청이 국방부장관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허가처분의 효력 .....	11-129
○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광업권 설정허가 .....	11-142
○ 군사시설보호에 따른 관련기관의 협의 .....	11-166, 12-113, 12-215
○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협의완료시점 .....	21-195
○ 항공탄약고지역의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3-129
○ 민수용 유류저장시설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3-130
○ 부대부변 주택신축 .....	14-155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12-171
○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 대상 .....	15-259
○ 외국법인 토지취득허가와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	15-260
○ 행정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싸리채취 절차 .....	15-264
○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범위 .....	15-265
○ 관할부대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권한 유무 .....	16-143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위법한 건축공사에 대한 조치 .....	17-156
○ 방위산업체 생산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인지 여부 .....	17-158
○ 군용전기통신법의 특별보호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 .....	19-174

- 예비군 교육훈련장이 군사시설인지 여부 ..... 19-176
- 토지수용법상의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의미 ..... 17-159
- 공군기지법상 기지보위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 ..... 18-179
- 국가보안상 현저히 유해한 건축물 철거 ..... 18-181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전에 설정예정통보를 받은 군수가 행한  
건축허가의 적법성 ..... 19-155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전 건축허가의 효력 ..... 19-164
- 공군기지법을 위반한 건조물설치허가의 효력 ..... 20-210
- 공군기지법 규정의 효력 ..... 20-212
-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아파트에 대한 고도제한 ..... 20-208
- 외국정부와의 합의각서에 기한 재산권 제한 ..... 20-214
- 군용항공기지법과 미공군규정의 효력관계 ..... 20-216
-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과 관할부대장과의 사전협의 ..... 21-174
-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 ..... 21-197
- 대지조성을 위한 절토와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축물의 고도제한 ..... 21-203
- 건축물 제5조 소정의 허가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172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설치결정시의 협의 ..... 20-206
-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 관련된 협의 ..... 20-207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허가 취소 ..... 19-157
- 일반적인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의 법적근거 ..... 19-169
-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등의 행위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금지되는지 여부 ..... 19-17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군사시설의 의미 ..... 21-218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범위 ..... 22-62
-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에 저촉되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시설물의 설치에 동의할 수 있는지 ..... 23-50
- 군사시설보호구역상 부동산, 협의, 위타지역조정승인권 ..... 24-135
- 재래식 탄약의 비군사화 처리시설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37
- 군용항공기지구역내 행위제한사항의 발효시점 ..... 24-138
- 군용화약류제조시설의 신축, 변경행위에 관한 질의 ..... 24-139

- 예비군훈련장의 군사시설 해당 여부 ..... 24-141
- 군의 폭발물처리장이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24-143
- 군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25-96
-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2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도로개설 동의시 현물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5-108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 협의)대상에  
건축법제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 포함되는지 ..... 26-126
-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내에 심정 설치 허용 여부 ..... 26-129
-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 ..... 26-131
- 군용항공기지법 적용여부 ..... 26-137
- 부산항건설사무소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7-195
- 군용항공기지법상 연속적인 능선형태의 의미 ..... 27-201
- 영내 설치되는 주유소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20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재협의대상 여부 ..... 28-18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상 “방공기지” ..... 28-197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상 ‘협의’의 범위 ..... 28-200
- 스넥바 입찰공고시 참가자격 제한 가부 ..... 28-205
-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심의절차 ..... 28-213
- 기부대양여사업 대체시설에 비품포함 여부 ..... 28-216
- 한 필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건축된 경우 협의 대상 여부 ..... 28-219
- 군용항공기지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제공주체 ..... 28-223
- 주한미군기지 소요물을 사업자에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여부 ..... 28-227
- 주한미군기지 오염토양 조사 및 정화작업의 범위 및 주체 ..... 28-229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 29-67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	29-6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 .....	29-7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9-73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군사시설의 의미 .....	29-74
○ 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변경 .....	29-81
○ 토양오염정화 관련 비용 부담 문제 .....	29-82
○ 토양오염정화 관련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	29-83
○ 저유소 오염토양정화책임 및 비용 청구 .....	29-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	30-164
○ 민간투자예 의한 군 체력단련장 건설 시 적용법률 .....	30-168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 협의대상인지 여부 .....	30-171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 관련 .....	30-17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해석 관련 .....	31-219
○ 건축법 상 국방·군사시설인 군관사 내 과외교습 등 상행위 가부 ·	31-233

## 20. 상 훈

○ 부대표창의 범위 .....	1-128
○ 상이기장 및 군인유족기장 수여대상자의 범위 .....	1-129
○ 군표창규정 제7조 및 군표창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권자의 해석 .....	2-80
○ 반공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계 .....	3-32
○ 반공법 제10조에 의한 상금 및 보조금 지급 .....	3-35
○ 무공훈장대리 수여권 문제 .....	3-250, 4-135
○ 무공훈장 수상요건 해당여부 .....	3-259
○ 유족순위 .....	3-260
○ 중앙정보부장의 국군장병에 대한 표창 .....	4-133

- 위수사령관의 표창권 ..... 4-138
- 외국대통령 부대표창 수장패용 가능여부 ..... 7-145
- 계엄사령관 표창권 행사 ..... 10-185
- 비군인에 대한 6·25사변 종군기장령 수여 가능 여부 ..... 24-93
- 故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요건 충족 여부 ..... 30-132

## 21. 국립묘지안장

-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 가부 ..... 3-108, 15-45
- 재혼한 군인의 경우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배우자 ..... 21-121
- 예비군의 국립묘지 안장 ..... 7-45, 9-56, 11-24, 13-41, 13-39, 21-119
- 영현기록서류에 “미수집 및 불명”으로 기재된 자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 11- 29
- 소집중인 방위병의 국립묘지 안장 가부 ..... 13-34
- 해양경찰대 대원이 순직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가부 ..... 14-167
-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 ..... 15-60
-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의 안장이 가능한지 여부 ..... 15-64
-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대상 ..... 17-122
- 경비교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17-124, 21-125
- 교정시설 경비교도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18-144
- 국립묘지 안장대상 ..... 17-125
- 무공훈장을 받은 경찰관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인지 여부 ..... 17-126
- 테러 등에 의한 사망한 자의 위패보안 ..... 18-145
- 휴가·외출중 사망한 국민의 국립묘지 안장 ..... 20-133
- 상해임시정부요인의 국립묘지 안장 ..... 20-135
- 비전공사망으로 처리된 군인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 21-85
- 국립묘지 안장시 육군본부소속 군무원의 순직확인권자 ..... 21-103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와 국립묘지 안장대상 ..... 21-110
- 6·25사변시 무공훈장을 받은 군속이 국립묘지령상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인지 ..... 22-36
- 재직당시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도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으로 볼 수 있는지 .....	23-31
○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국립묘지 안장자격 .....	24-88
○ 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	24-90
○ 국립묘지 비문 설치 .....	25-53
○ 국립묘지 합장대상인 배우자의 의미 .....	26-96
○ 전몰의제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	26-98
○ 충무 이하 무공훈장 수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	26-101
○ 국립묘지 합장 대상 여부 .....	26-103

## 22. 형 사

### 가. 군형법

○ 군형법 부칙 제6조에 의병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1-221
○ 군무이탈죄의 성질 및 공소시효 .....	1-25
○ 군무이탈후 사면되었으나 계속 복귀하지 않는 자 등의 처리 .....	1-201
○ 주월 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전시 사변규정의 적용여부 .....	3-212
○ 군무이탈자 비호죄의 적용여부 .....	4-164
○ 노획물에 대한 영득과 횡령 .....	4-173
○ 주월한국군이 월맹으로 탈출한 경우에 있어서의 처벌 .....	5-112
○ 군속의 군무이탈 .....	6-104, 15-274
○ 5·16 이전 군무이탈자의 복무설정행위의 효력 및 군무이탈죄의 성립여부 .....	6-110
○ 5·16 이후 군무이탈자로서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한 처벌 .....	15-273
○ 적전의 개념 .....	7-130, 1-24
○ 방위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의 형사처벌 .....	7-135
○ 하자 있는 입영조치와 군무이탈죄 성립여부 .....	7-140
○ 청원경찰의 군법 피적용 문제 .....	13-133
○ 군무이탈후 일본 밀입국자에 대한 군형법상 처벌가능 여부 .....	13-137
○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 .....	14-159
○ 정부관서에서 방독면을 사용시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저촉여부 .....	16-135
○ 사관학교 가입학자가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87

- 재영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이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88
- 향토예비군대원이 군형법 피적용자인지 여부 ..... 18-190
- 경찰제복인 전투복 등의 착용·제조·판매와 처벌 ..... 18-197
- 연예인들의 군복착용 허용여부 ..... 18-198
- 예비군복이 단속대상품목인 군복인지 여부 ..... 20-267
- 암호자재수발시의 무장경호병을 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9-198
- 뇌사상태인 군인의 장기이식 허용 ..... 20-111
- 해외 장기군무이탈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 22-73
- 입영기피죄 등의 공소시효 기산점 ..... 23-83
-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군형법 제1조 제3항 소장 ‘실역’의 의미 ..... 23-85
- 정문 위병소 배치 헌병이 군형법 상 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245

#### 나. 군사법원법

- 일반사면에 따른 재심청구 ..... 1-124
- 형집행기간 산입 ..... 1-215
- 노무단소속 예비역 장병의 재판관할 ..... 1-216
- 고등군법회의의 분실설치와 관할관의 확인권의 내부적 위임 ..... 1-220
- 추징금 징수 ..... 1-223
- 군법회의의 계속중인 민간인의 수용 및 미결수의 일반병원의 입원 ..... 1-226
- 5·16 이전 군복무 이탈자에 대한 형사관할 ..... 1-227
- 의병집행정지 출소자 잔형집행 ..... 1-228
- 군법회의법상 관할관의 확인조치 ..... 1-229
- 군법회의의 사형판결의 집행방법 ..... 1-231
- 형면제와 형집행면제와의 차이점 ..... 1-231
- 형기 기산일 ..... 1-233, 1-244, 1-246
- 형집행정지된 자에 군법회의의 판결의 효력상실 ..... 1-234
- 몰수물자 처리 ..... 1-239
- 공소심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권 ..... 1-241
-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제34호에 의한 군법회의관할의 성질 ..... 1-242
-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사건처리 ..... 1-247
- 국법회의의 관할권 ..... 1-248

○ 재산형 집행 .....	1-260, 2-212
○ 군수사기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 .....	1-261
○ 형집행중인 국회의원 석방결의 .....	1-262
○ 계엄지역내에서의 군법무관의 영장의 효력 .....	1-264
○ 군정보원에 대한 범죄사건 취급 및 밀수출입 물자취급과 밀항선원 처리권한 .....	1-266
○ 군법회의 판결사건 .....	1-268
○ 미결구금일수 산입 .....	2-193, 6-108
○ 구속기간 갱신 .....	2-194
○ 군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한계 .....	2-196
○ 입영부대 도착자에 대한 재판권 .....	2-198, 6-115
○ 계엄군법회의의 사형선고의 집행방법 .....	15-269
○ 미결구금일수의 집행 .....	15-275
○ 벌금형 언도 .....	2-213
○ 군무이탈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여부 .....	3-206
○ 군법회의 설치 및 설치보류 .....	3-207
○ 형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 형의 면제 .....	3-211
○ 공소시효가 완성된 장물의 압수 .....	3-215
○ 군법회의 재판집행기관 .....	3-217
○ 군법회의 재심 .....	3-226, 3-229
○ 공소제기절차 .....	3-231
○ 비관할자에 대한 영장발부의 정당성 여부 .....	3-232
○ 2개군 이상 관련사건의 재판관할 .....	4-128
○ 5·16 이전 군무이탈자의 잔형집행 .....	7-137
○ 구속당한 응소자의 신분관계 및 영장효과 .....	8-128
○ 보안대 요원의 구속절차 .....	8-130
○ 비상계엄선포시 수사권 .....	8-131
○ 근무연습소집에 의하여 국군부대에 소집된 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속 및 소집해제 .....	9-129
○ 타군소속 장병에 대한 긴급구속 및 그 인치된 기간의 구속기간 통산여부 .....	9-130

-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 관할 ..... 10-106
- 공소시효기간 산정 ..... 10-108
- 전시 근로동원자의 군법회의 적용 ..... 10-109
- 군 사법경찰관리가 군장품 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및  
군장품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 ..... 10-111
- 군용품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 10-163
- 장물인 군용물의 압수 및 그 보좌관의 처벌가능 여부 ..... 13-134
- 군용품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해석에 있어서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13-136
- 군용열차내 수송관이 군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16-137
- 고용군무원의 재판관할권 ..... 17-163
-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받은 파면형의 구제절차 ..... 17-164
- 국군보안부대원의 구속·관할 등에 관한 문제 ..... 18-192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군사재판관할권 ..... 19-196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의 처리 ..... 18-195
- 계엄사령부예의 군사법원 설치가능 여부 ..... 19-189
- 관할관 확인조치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19-193
- 검찰수사관이 입건하여 검찰관에게 송치할 권한이 있음 ..... 22-74

#### 다. 기 타

- 국방경비법상의 형의 면제 ..... 1-224
- 예비검속 ..... 1-232
-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해석적용 ..... 1-254
- 정치범의 개념 ..... 1-259
- 해안경비법상의 금고와 형법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0조의  
금고 또는 구류와의 이동 ..... 2-192
- 군법회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보상요구 ..... 2-209
- 외국환 소지행위의 처벌 가능성 ..... 3-140
- 국방경비법 제96조의 “판결”의 해석 ..... 3-222
- 형의 실효와 파면취소사유 해당여부 ..... 4-127
- 여군 영창설치 및 헌병직무보조병 임명 ..... 4-165

- 반공법에 대한 질의 ..... 5-111
- 군인 등에 대한 전매법 위반사건의 고발 및 통고처분 ..... 5-113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성립여부 ..... 7-133
- 총포화약류단속법 적용 ..... 10-166
- 군의관이 승조하지 않고 있는 해군함정에 위생하사관이 출동중  
불가피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병, 사망한 경우 의무책임 ..... 12-187
-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한 군무이탈자 수배해제 ..... 15-270
- 수형자의 청원에 의한 군교도소에서의 작업과 상여금 ..... 15-271
- 군교도소의 미결수에 대한 작업상여금 지급 ..... 10-186
- 치료감호집행기간의 형기산입 ..... 20-271
- 출·퇴근시 교통통제를 하는 헌병이 도교범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헌병인가 ..... 22-75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군용물 재산범죄 처리 ..... 31-221

### 23. 민사관계

- 강제집행에 관한 질의 ..... 1-195
-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 1-197
- 소송비용 관장 ..... 1-199
- 채납토지개량조합비 승계의무 유무 ..... 1-201
- 소운송업법 조문해석 ..... 1-204
- 소운송업법에 의한 하역작업 ..... 1-206
- 탄약저장 지역내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철거 ..... 1-208
- 고철수집에 대한 법적해석 ..... 1-210
- 국유, 공유, 민유 부동산의 구분 및 징발부동산의 보상금 지급 기산일자 ..... 1-212
- 판권침해에 대한 법규해석 ..... 1-213
- 군량미 수급절차에 있어서 인도청구권 유무 ..... 2-182
-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 2-190
- 비영리법인 설치허가 주무관청의 범위 ..... 3-39
- 미확정 채권양수자의 지위 ..... 15-290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15-294

○ 중첩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15-302
○ 민통선 북방지역의 재산에 대한 매수 .....	14-103
○ 외국정부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 .....	3-176
○ 소유권 양도증 및 공증증서 소지인에 대한 물품인도 문제 .....	3-182
○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	3-183
○ 청구원의 순위보전 .....	3-185
○ 방치 매장광물의 소유권 .....	3-188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있어 공시송달방법 .....	3-195
○ 귀속재산 여부 .....	4-118
○ 미군주둔지역 임야의 처분권 .....	4-121
○ 유언의 효력 .....	5-101
○ 사단법인 설립 .....	5-102
○ 군경선교회의 설립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	16-125
○ 예비군수송협회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감독권 .....	16-126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변경된 법인정관의 효력 .....	16-128
○ 비영리법인의 기부금품모집행위와 그 설립허가 취소 .....	16-129
○ 신원보증서 .....	5-103
○ 일본에 귀화하기 전에 한국에서 입적시킨 양자와의 귀화후 친권관계효력 .....	7-125
○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부가 .....	8-110
○ 군건구입을 위한 복권발행 .....	8-121
○ 매장물자 발급보증금 처리 .....	8-123
○ 전부명령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기존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9-135
○ 채권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효력 .....	10-156
○ 소송계류중인 대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제지방법 여하 .....	14-175
○ 예고등기된 토지를 매수할 경우의 보상 .....	14-177
○ 매매계약 체결 전에 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	14-179
○ 감사원 판정에 의한 변상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	10-138
○ 군수품 손망실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 .....	10-141
○ 매수후 소유권 미이전 재산보호 .....	12-161, 12-221

- 부당이득금의 이자적용 ..... 12-164
- 매매계약후 당사자를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 10-154
- 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 ..... 16-130
-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채무승계 ..... 16-131
- 민간차량에 상이를 입은 군인의 치료비 청구 ..... 17-175
-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18-203
- 지상권 설정 계약후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18-204
- 이행대행자의 사용 ..... 18-206
- 배상결정시 예견 못한 적극적 손해발생과 배상 ..... 18-211
- 가압류된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행하여진 경우의 효력 ..... 18-213
- 전우신문에 일간신문 기사를 전재할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 ..... 19-203
- 계약해제시의 책임 ..... 19-208
- 퇴학당한 국군간호사관후보생도의 경비반환 ..... 20-23
- 해직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퇴직금 산정 ..... 20-24
- 재임용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퇴직금 반환범위 ..... 20-27
- 중재절차에 있어서 국가의 대표자 ..... 22-76
- 수용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 23-87
- 군의관의 민간인 진료시 면책협약의 효력 ..... 24-193
- 존속기간 영구인 지상권설정계약의 유효성 ..... 25-100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급여채권 범위 ..... 26-169
- 행정봉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27-211
- 비영리법인인 국방인재개발원의 수익사업 ..... 31-243

## 24. 기 타

- 표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선박처리 ..... 1-130
- 수로업무법에 관한 질의 ..... 1-156
- 사체부검 ..... 1-272
- 0-2 요원의 노동조합조직의 합법성 ..... 1-274
- 부대우편물 검열에 대한 적법성 여부 ..... 1-276
- 외국인의 한국변호사회 가입 ..... 2-180

○ 제적사유 해당자의 사면처리 .....	2-47
○ 사회단체등록의 업무소관 .....	2-218
○ 군노무자 노동운동 .....	2-216, 2-219
○ 해군함정에 대한 선박법 및 선박안정법의 적용여부 .....	2-220
○ 일반사면으로 인한 원계급복귀 .....	2-269
○ 일반사면에 따른 병역기피자 처리 .....	2-270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면 해당 여부 .....	2-271
○ 사면법에 의한 복권 .....	3-171
○ 노무근무단의 노무자의징계 .....	3-154
○ 직위해제기간의 정의 및 소득세 징수 .....	4-79
○ 임시우편물단속법 제3조 .....	4-143
○ 우편물의 지구검열실시 .....	4-144
○ 군통신시설 이설보상 .....	4-152
○ 현역군인의 가사심판법 적용 .....	4-174
○ 군인보험 계속 신청 .....	5-147
○ 사면의 효력 .....	7-139
○ 사관학교 퇴교자의 교육기간이 사병경력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15-65
○ 관공서의 휴일 .....	15-50
○ 군의관의 대한의학협회 회원 가입 .....	8-141
○ 매장물자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작전지역의 의미 .....	9-151
○ 공문서 작성시 기안책임 .....	10-171
○ 보안업무에 관한 질의 .....	10-179
○ 비밀취급인가 .....	10-180
○ 군인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취소여부 .....	10-191
○ 공인회계사 자격 .....	10-195
○ 군사우체국 설치와 관련하여 체신부와의 군사우편요금 결제 .....	11-164
○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한 신원조사 .....	11-167
○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상 동원업체 의무위반시 처벌 근거 .....	11-170
○ 민원결과통보에 대한 회신 .....	12-191

- 국방부 의무자문관 임명에 있어서 이미 관정된 보안적부심사의 효력 ..... 12-195
- 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문제 ..... 12-225
- 고속도로 연변 토지형질변경 ..... 13-142
- 사단법인 한국군인복지연합회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143
- 공직선거기간 중 병력동원훈련이 가능한지 ..... 23-80
- 방산물자계약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서를  
경영위원회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 23-81
-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존치여부 ..... 23-82
- 반복민원 종결처리 부서 ..... 23-84
- 타 정부기관 생산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안조치를 해야하는지 ..... 23-86
- 기념주화 발행가능 여부 ..... 23-88
- 군복지시설도 영업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23-89
- 군보도요원중 발급가능 여부 ..... 14-168
- 민간업체가 발칸포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 14-181
- 민통선 북방에서의 광석반출 ..... 1-202
- 귀농선 부근의형석을 전리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 1-203
- 사전동원 영장의 법적효력 ..... 15-280
- 양자와군인자녀 교육법상의자녀 ..... 15-28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의 적용대상 ..... 15-283
- 기능사 훈련교사의자격기준 ..... 15-288
- 주재무관 자녀의 군인자녀교육법상의 혜택 ..... 15-286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상의 초대대학의 의미 ..... 15-288
- 국방대학원에 1년의 석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15-289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 ..... 15-296
- 복권의 효력 ..... 15-297
- 한국국방학회(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 유가판매 ..... 15-298
- 일반사면령상의 금품수수비위의 범위 ..... 15-300
- 국군정신전력학교 연구실의 국민윤리학회 회원가입 ..... 15-301

○ 광업권의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 .....	16-114
○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 .....	16-144
○ 입원환자를 위한 군인의 신체 일부제공 .....	16-149
○ 재향군인회의 회비수납방법 .....	16-150
○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연수 .....	16-151
○ 재향군인회의 의문성금 각출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16-152
○ 국방관리연구소 연구원의 승용차 면세혜택 여부 .....	16-154
○ 육사신보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16-156
○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는지 여부 .....	17-174
○ 군함에 의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과 오염방지 .....	18-239
○ 개정 신체검사규칙의 적용대상자 .....	19-233
○ 군병원이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19-238
○ 군병원에서 민간인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가부 .....	19-244
○ 각군 발행의 군 대형운전면허의 효력 .....	21-156
○ 문서 수발 전령병의 가스총 휴대 .....	21-152
○ 국보위특조법의 폐지와 그에 따른 사전동원, 비공개동원, 부분동원 .....	21-259
○ 정훈교육자료로 TV, 프로그램이나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 반포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2-77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추진하면서 군부대 오수를 연계처리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군부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22-78
○ 미 정부 소유 기술품을 생산시에는 국산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 정비시에도 지적 소유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	22-79
○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위산업물자를 구입하여 국가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여부 .....	22-80
○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필요성 .....	22-81
○ 국방대학원 특정직 교수의 재임용 적용기간 .....	22-82
○ 공군기술고등학교학생의 후불승차 가능 여부 .....	24-192
○ 한의사 면허 소지 사병의 진료행위 가능 여부 .....	24-195
○ 훈련비밀기록물의 보존절차 .....	24-198

○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의 저작권 .....	25-127
○ 국군체육부대 선수팀의 프로리그 참가 .....	25-131
○ 군부대 통상명칭을 국정원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3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	25-135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장소에서 부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6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 전체 송부요청에 대하여 국방부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5-138
○ 민간검찰이 현역군인을 내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5-140
○ 보험료 급여공제 수수료 징수 .....	26-173
○ 외국인강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여부 .....	27-214
○ 국고대여학자금대부 대상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 여부 .....	29-44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의해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	29-49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	29-90
○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에 ‘주과수’ 포함 여부 .....	29-93
○ 국방부 감사처분의 거부 가능 여부 .....	29-94
○ 공무원 및 군인의 비영리법인 참여 가부 .....	29-95
○ 군 차량 중과실 교통사고 보호대책 .....	29-96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직무발명 관리 .....	29-97
○ 군 이사화물 업체와의 업무제휴 .....	29-98
○ 중앙복지시설 예약환불금 .....	29-99
○ 군 차량 보험 업무 .....	29-100
○ 국회의원의 군부대 교양강의 가부 .....	29-101
○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	30-180
○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	30-184
○ 전문자격(면허)을 보유한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 가능여부 .....	31-18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유급의 현장연수” 관련 .....	31-200
○ 특정수혈부작용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	31-247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 제31집**  
(2013.11.~2015.10.)

2016년 1월 22일 인쇄  
2016년 1월 29일 발행

편집\_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발행\_국방부

인쇄\_국군인쇄장  A16010010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http://www.dsc.mil.kr))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모바일로도 신고/상담가능】

